# KREI

# 소득 기반 경영안정제도 도입 방안

임소영 · 박미선 · 채홍기



# KREI

# 소득 기반 경영안정제도 도입 방안

임소영·박미선·채홍기



### 연구 담당

**임소영** | 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장, 제4장, 제5장, 제6장 집필

박미선 | 부연구위원 | 제3장, 부록 집필

**채홍기** | 연구원 | 제2장, 부록 집필

#### 정책연구보고 P289

### 소득 기반 경영안정제도 도입 방안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3.3.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에이치에이엔컴퍼니

ISBN | 979-11-6149-634-4 95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머리말

농업경영위험은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 농산물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수요가 달라질 수 있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생산비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도 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 수확량이 예상치 않게 감소하기도 한다. 농업인은 이러한 다양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개인이 사전에 예방을 하더라도 피해를 완전히 막기란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농업경영위험으로 인한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규 농업인력이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면에서 정당성이 있다. 정부는 재해보험, 직불제 등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위험의 범위에 비해 정부가 지원하는 위험범위가 좁고 제도상의 한계로 인해 경영안정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경영안정정책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기존의 품목 단위 경영안정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농가 단위 경영 안정정책의 도입 가능성과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모쪼록 농업인의 경영위험 대응도가 높아지고 안심하고 농사짓는 농업인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이 연구를 위하여 귀중한 자문을 제공한 세무 및 농정 전문가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23.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홍상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요약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경영안정제도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살펴보고 기존 경영안정제도의 확대를 포함한 신규 경영안정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하는 데목적이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농업정책의 상위 목표와 집행가능성, 비용효율성, 국제규범 등을 고려하여 신규 제도 도입 시 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함.
- 신규 경영안정제도 도입은 세제 기반 소득자료의 확보 가능성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우선 검토하고 외국에서 실제로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한 경영안정정책을 운영하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제도 도입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함.

#### 연구 방법

- 국내의 경영안정정책 도입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외 경영안 정제도 사례 및 국내 유사정책과 관련된 문헌을 조사하였음.
- 소득파악방법과 경영안정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세무 관계자 및 농업정책 전문가와의 면접조사를 실시함.
- 국세청 자료 및 농업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기초분석을 함으로써 경영 안정정책의 필요성과 도입 시의 쟁점들을 검토하였음.

### 연구 결과

- 농업재해보험과 같은 수확량 변동 대응을 제외한 기존의 경영안정제도에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쌀 변동직불제, 피해보전직불제가 있음.
- 기존 정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안정적으로 운영될 기반이 부족하고 생산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있으며 무 엇보다도 경영안정효과에 있어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어 신규 경영안정제 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경영안정제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의 수입 또는 소득변동 대응 경영안정제도로서 미국의 수입보전직불 (ARC와 PLC)과 수입보험(RP, MP, WFRP)을 살펴보았으며 일본의 농업수 입보장보험, 캐나다의 소득안정계정과 농업투자계정을 검토하였음.
- 외국에서는 손실규모, 운영방식, 보전 범위 등에 있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여 농업인이 여러 정책의 조합을 통해 경영체의 상황에 맞게 경영안정정책을 선택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정책에 따라 보전대상인 손실의 규모가 다르고 이와 연계하여 운영방식과 정책대상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일본의 경우 보험방식으로 대규모손실에 대응하고 보험과 연계한 적립방식으로 경미한 손실에 대응함. 또한미국과 일본에서는 농업보험을 중손실 대응정책으로 운영하는 반면 경미한손실에 대해서는 보험방식 외에 적립방식이나 직불방식으로 대응함.

- 외국의 사례는 국내에서도 가격위험, 수입 감소 위험 등 다양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과 보험방식과 비보험방식을 적절히 조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함.
- 경영안정정책 설계 시, 가입 절차와 운영방식 등을 단순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함.
- 소득 기반 경영안정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입 및 소득정보는 국 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나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농업인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 비율 은 매우 낮고 신고된 자료의 신뢰성에도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소득신고를 장려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되 신고된 자료의 검증 및 확인절차를 추가하여 기본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함.
- 이 연구는 소득 자료의 확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제하에 신규 경영안정 제도의 설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살펴보았음.
- 각 쟁점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보전대상에 대해서는 가격과 수입,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농업경영체의 소득신고 여부나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신규 제도에 대해서는 보장 대상, 가용 정보의 범위, 정책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안을 도출하여야 함. 어떤 기준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따라 나머지 쟁점들이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임.

### 정책 제언

- 농업인의 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선 가용한 정보의 범위, 소득신고를 하는 농업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적용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적용해 보고 추후 사업 운영방식을 고도화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신규 경영안정제도는 기존의 수량 보험 중심의 경영안정제도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또한 품목 단위 보험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농가 단위의 경영안정제도 도입 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농업인의 소득자료 확보 여건, 소득 수준, 경영규모, 손실 유형 등을 근거로 복수의 경영안정제도를 보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2
제2장 국내 경영안정정책 현황과 한계	
1. 수입보장보험	25
2. 가격위험보상제도 ·····	37
3. 국내 소득안정제도 평가	43
제3장 해외 경영안정정책 사례	
1. 미국 농가경영안정제도	49
2. 일본 농업경영수입보험	83
3. 캐나다	93
4. 시사점	103
제4장 경영안정제도 도입 관련 쟁점	
1. 수입 및 소득정보 파악 가능성	109
2. 운영방식 관련 검토사항	125
3. 소결	143

# 제5장 신규 경영안정제도 도입 방안

. 기존 경영안정정책 제안 평가	149
. 신규 경영안정제도 도입 방안	153
. 향후 검토과제	158
<u>!</u>	
. 미국 경영안정제도의 보전금 지급 예시	161
. 적극적 농업 참여(Actively Engaged in Farming: AEF) 요건	177
!문헌	181
	. 신규 경영안정제도 도입 방안

###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표 차 례

제1	장	
⟨3	표 1-1〉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	. 5
<b>\</b> 3	표 1-2〉 농업경영안정화 관련 정책수단(OECD 국가) ······	. 7
제2	장	
⟨3	표 2-1〉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추진 경과	26
⟨3	표 2-2〉 농업수입보장보험 품목별 최소 가입면적 및 가입금액 변화 추이 … 2	27
⟨3	표 2-3〉 농업수입보장보험 품목별 시범사업 지역 변화 추이	28
⟨3	표 2-4〉 농업수입보장보험 품목별 보험가입기간 변화 추이	29
<b>\</b> 3	표 2-5〉 농업수입보장보험 기준가격 출처	32
⟨3	표 2-6〉 농업수입보장보험 추진 실적	34
⟨3	표 2-7〉 농업수입보장보험 주요 제도 개선 사항	36
⟨3	표 2-8〉 연차별 재정(국고)투입 계획	36
⟨3	표 2-9〉 연도별 농업수입보장보험 운영 현황	37
⟨3	표 2-10> 기본직불 사업 추진 경과	38
⟨3	표 2-11〉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개요 ···································	40
<b>\</b> 3	표 2-12〉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실적 ·······	43
제3	장	
⟨3	표 3-1〉 미국 작물보험 상품별 가입금액 비교(2022년)	52
⟨3	표 3-2〉 PLC/ARC 지급 보상금 ·······(	<b>5</b> (
⟨3	표 3-3〉 보험 단위 및 보장 수준에 따른 보험료 보조율(	<b>5</b> 6
	표 3-4> 수입보장보험(RP) 운영실적 ·······(	

(표 3-5) RP, PLC/ARC 및 SCO/STAX와의 관계	70
〈표 3-6〉 농가수입보장보험 보장수준별 상품 수 및 승인수입	74
〈표 3-7〉 보장수준 및 다각화 수준에 따른 보험료 보조금 비율	76
〈표 3-8〉 미국 WFRP 판매량 ······	77
〈표 3-9〉 마진보호보험(MP) 가입 대상 품목 및 운영 지역 ············	79
〈표 3-10〉 작물별 가격 변동이 인정되는 투입요소	80
〈표 3-11〉 보장 수준에 따른 보험료 보조율 ·····	81
〈표 3-12〉 미국의 경영안정제도 요약 ·····	82
〈표 3-13〉 청색신고 실적 기간별 보험방식의 보상한도액	86
〈표 3-14〉 보전금액 계산 예시(기준수입 1,000만 엔 가정)	88
〈표 3-15〉 농업수입경영보험 보험료율(2023년 1월 적용)	89
〈표 3-16〉 농업경영수입보험 가입 경영체 현황 ·····	
〈표 3-17〉 일본 농업경영수입보험 예산 현황 ·····	91
〈표 3-18〉 농업경영수입보험 유사 사업 ·····	92
〈표 3-19〉 소득안정계정 신청 및 보상 현황 ·····	99
〈표 3-20〉 농업투자계정 신청 및 적립 현황	
제4장	
〈표 4-1〉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111
〈표 4-2〉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 산출 방법	112
〈표 4-3〉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범위 및 증명서류	112
〈표 4-4〉신고유형별 제출서류 ·····	114
〈표 4-5〉 신고유형별 사업자 수입기준 ·····	
〈표 4-6〉 위험요소별 대응 정책 예	126

	〈표 4-7〉 동업종수입 및 동업소늑 변이계수 ······ 127
	〈표 4-8〉보전 대상별 장단점 비교
	〈표 4-9〉 재배 품목수별 농가 분포 ···································
	〈표 4-10〉 타 정책 및 제도의 수입 정의
	〈표 4-11〉 농업총수입금액별 가구 분포
	〈표 4-12〉 <del>농축</del> 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특성 ···································
	〈표 4-13〉해외 경영안정제도 보상범위 예 ···································
저	15장
	〈표 5-1〉소득·경영안정정책 대안 비교 ·······152
	〈표 5-2〉소득신고 기간별 보장수준 예 ·······156
	〈표 5-3〉신규 경영안정제도 도입안 요약157
부	<u>!</u> 록 1
	〈부표 1-1〉RP와 RP-HPE 보험금 지급 예시(옥수수) ···································
	〈부표 1-2〉MP 보험금 산정에 이용되는 가격 산정방식 ····································
	〈부표 1-3〉MP 지급 예시(옥수수) ···································
부	·목 2
	〈부표 2-1〉AEF의 시간적 기준 ···································

###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그림 차례

저	1장
	〈그림 1-1〉 농업소득 하락 규모별 농가 분포(
	〈그림 1-2〉 국세청 등록 농업 사업자 수
저	<b>∥</b> 2장
	(그림 2-2) 농업수입보험 추진 절차 ···································
	(그림 2-3) 쌀 변동직불금 지급 실적 ···································
저	ll3장
	〈그림 3-1〉 수입보험제도의 보전방식87
	〈그림 3-2〉일본 농업경영수입보험제도의 운영체계90
	(그림 3-3) 캐나다 BRM 프로그램의 관계 ·················94
저	∥4장
	〈그림 4-1〉 장부신고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서식117
	〈그림 4-2〉추계신고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식118
	〈그림 4-3〉 사업장 현황 신고 양식
	〈그림 4-4〉 수입 및 소득 하락 규모별 농가 분포128
	〈그림 4-5〉 적립 방식 경영안정정책 적용 예시131
	〈그림 4-6〉 농가 연도별 재배품목 수134
	〈그림 4-7〉 농작물재해보험 추진 체계144

## 부록

〈부도 1-1〉미국 작물 보험 가입 단위 비교 예시 ······ 170

제1장

서론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 농업소득 및 농업총수입 변동 심화

- 농가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요인의 변동으로 인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성은 매년 위협받고 있음.
- 농산물 수입 증가나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는 농산물 수요에 영향을 주어 가격 하락 요인이 되며 재해 발생은 수확량을 크게 변화시켜 농가의 수입에 영향을 미침.
  - WTO 협상과 다수의 FTA, RCEP, CPTPP 등 지속되는 시장개방 협상은 수입 농산물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 건강식, 웰빙에 대한 관심, 서구화되는 식생활, 1인 가구의 증가, 간편식 수요 증가 등 최근의 식품 트렌드 변화는 국내 농산물 소비 패턴을 변화시켜 트렌드에 맞지 않는 일부 품목의 경우 수요 부진을 경험할수 있음.
- 농가경영위험은 가격과 수확량 변동뿐만 아니라 생산비 변동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음.
-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원유 가격 상승, 환율 급등 등으로 농가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함.
  - 2022년 3월 국제곡물 가격 전년 동월 대비 밀 82.0%, 옥수수 36.7%, 콩 18.9% 증가
  - 요소비료(20kg), 9,250원에서 2022년 2분기 28,900원으로 212.4% 상승
  - 2022년 4월 국제유가, 전년 동월 대비 77.3% 상승하여 배럴당 115.1달러 도달
- 이러한 대외 물가 상승요인으로 인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최근 급격하게 상 승함.
  - 2022년 재료비 가격지수는 2021년 대비 32.2% 상승하였으며 그중에서 도 비료비는 132.7% 수준으로 폭등하였음.
  - 비료비 다음으로는 영농광열비가 66.9%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었음.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2022년 농가구입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27.2% 상승하였으며 이는 2020~2021년보다 더 큰 폭 의 상승임.

⟨표 1-1⟩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단위: 2015=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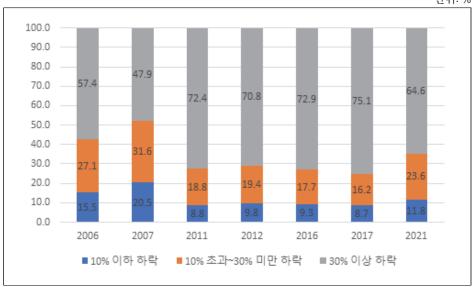
분류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1~2020년 변화율(%)	2021~2022년 변화율(%)
재료비	101.8	110	145.4	8.1	32.2
종자종묘	115.9	116.1	127.0	0.2	9.4
비료비	77.9	83.7	194.8	7.4	132.7
농약비	118.9	120.8	130.4	1.6	7.9
사료비	102.1	113.6	138.1	11.3	21.6
영농자재비	102.6	112.8	145.8	9.9	29.3
노무비	124.2	135.3	152.9	8.9	13.0
경비	103.3	107.5	128.9	4.1	19.9
영농광열비	87.1	108.6	181.3	24.7	66.9
임차료	112.4	114.5	116.7	1.9	1.9
농작업위탁비	108.5	103.4	103.3	-4.7	-0.1
판매자재비	98.0	96.5	119.5	-1.5	23.8
자산구입비	113.2	118.6	109.8	4.8	-7.4
기계구입	104.3	104.5	105.5	0.2	1.0
가축구입비	129.6	144.9	117.8	11.8	-18.7
농업구입가격지수	105.4	114.7	145.9	8.9	27.2

자료: 통계청(https://kosis.kr).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검색일: 2022. 12. 20.

- 연도별 농업소득 및 농업총수입이 감소한 농가의 하락 폭에 따른 분포를 살펴 보면, 농업소득 및 농업총수입의 변동 특히 하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을 알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직전 3개년도에 대비 농업소득이 감소한 농가 중에서 10% 이하의 소규모 감소 농가의 비율은 2007년 20.5%였으나 그 이후는 대체로 두 자릿수 이하였음.
  - 다시 말하면 10%를 초과하여 중·대손실을 경험하는 농가가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30% 이상의 대규모 손실을 경험하는 농가의 비율은 절반 이상으로 2011년 이전에 비해 더 높아졌음.

#### 〈그림 1-1〉 농업소득 하락 규모별 농가 분포





주: 감소폭은 직전 3개년도 평균 대비 해당 연도의 소득 등이 감소한 정도를 의미함. 농가경제조사는 5년 단위로 표본(3,000가구)이 변경되므로(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표본 이용) 동일 표본을 이용해서최대 2개년도 감소폭을 계산할 수 있음. 예를 들어, 2003년 표본의 경우, 2003~2005년 농업소득 등의 평균값에 비하여 2006년의 농업소득 등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를 계산하였음. 동일하게 2004~2006년 자료를 이용하여 2007년의 감소폭을 도출하였음.

자료: 통계청(https://kosis.kr). 농가경제조사. 검색일: 2022. 12. 20.

### □ 기존 농업경영위험 관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할 소득안정제도 도입 필요

- 농업소득의 변동성 확대와 수입 감소의 위험은 농업인의 투자 의욕을 감소시 켜 농업 성장을 저해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계를 위협함으로써 장기적으 로는 농업인력의 확충에도 어려움을 겪게 됨.
- 그러나 농업경영위험의 대부분은 농업인이 사전에 예방하거나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업인이 자구책을 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농업경영안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

- O OECD의 주요 국가들은 농가의 수입 및 소득 안정을 위하여 가격안정정책과 소득안정정책, 가격위험 헷지, 재해보상 지원 등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 각국에서는 재해를 제외한 여타 요인과 연관되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지지 정책과 투입재 보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후적 대응인 소득직접 지불 등을 운영함.
  - 또한 가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거래를 활성화하고 파생상품을 개 발하는 등 금융적 수단을 동원함.
  - 대규모 재해로 인한 손실의 보상정책으로서 재해보험과 재해지원정책을 실시함.

〈표 1-2〉 농업경영안정화 관련 정책수단(OECD 국가)

구 분 정책수단		주 요 내 용	특성 및 문제	
시장 가격 안정화	투입재 보조	<ul><li>관개용수 지원</li><li>비료 및 농약 지원</li><li>저리융자 지원</li></ul>	- 보조 투입재의 과잉사용 - 위험성 높고 부적합한 농산물의 과잉생산 초래	
	시장 가격 지지	- 최소보장가격지지 - 비축 및 공급관리 - 가격안정사업 - 국경조치(관세 및 수입제한)	- 생산량 안정 효과는 있지만, 높은 국내시장 가격으로 농가 위험관리 기피 - 투입재 과잉 사용 - 농가로의 낮은 소득이전효과 등	
사후적	직접지불	- 현행 생산량 혹은 농지 등 생산요소 기준으로 지원(농지규모, 가축 수, 투입재 제한, 농업소득 수준, 영농실적 등)	- 일정부분 생산과 연계되어 있음. - 소득효과를 통해 농가의 위험 관리에 영향을 미침.	
소득안정	부족불 지원	- 사전적 고정수준 가격을 농가에 제시	트저 층은 저게 노사무이 소하다	
	안정화 지불	- 소득손실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위험완화 도모	- 특정 혹은 전체 농산물의 수확량 혹은 수입 기준 보장 목표	
가격위험 헷지	선물거래		- 선물거래 적용 품목의 제한	
	파생상품	- 가격발견과 가격위험 회피	- 높은 거래비용 - 관련정보, 교육, 기반조성 등	
재해 위험	재해보험, 재해지원	- 대규모 자연재해로 민간 보험으로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지원	- 작물 수확량 손실 기준(미국) - 전체 수입 손실 기준(헝가리) - 농가의 복지수준 기준(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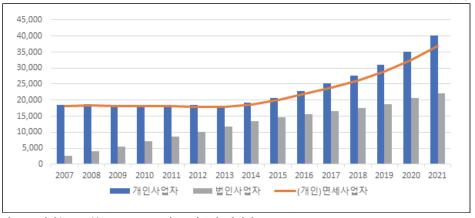
자료: 박준기 외(2014).

- 국내에서는 과거 쌀 변동직불제와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가격 하락에 대응하는 정책수단이었으나 직불제 개편으로 쌀 변동 직불제가 종료되고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이 까다로워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었음.
- 또한 농업경영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다양한 경영위험요소 대응과 다작목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에는 한계가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로서 가격 및 생산비 변동에 따른 경영손실에 대응이 어려움.
  - 농작물재해보험은 품목 단위 가입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작목 소량 재배 농가 지원에 한계.
- 농가 단위의 소득안정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입 및 소득정보의 확보가 불가피한 조건이지만 현재까지는 소득파악 기반 미비로 농가 단위 소득안정 제도가 도입되기 어려운 상황.
  - 정부는 수입보장보험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수입 파악 기반 미비로 사업 확대 하계.
  - 농업소득의 소득세 비과세 및 미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농업 인의 소득신고 의무가 없어 공신력 있는 소득자료의 확보가 어려움.
- 그러나 수량 보험 중심의 재해보험만으로는 광범위한 농가 경영위험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과거에 비해 세제 기반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과 소득 기반 지원제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재난지원금 등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근거로 한 지원제도의 확산으로 농 업계에서도 세제편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 농업 개인 사업자 등록자 수는 2013년까지 2만 명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 었으나 이후 2021년으로 40.090명으로 약 두 배 가량 증가함.
- 농업 법인 사업자 등록자 수는 2007년 2,638명에서 2021년 22,176명으 로 약 10배로 증가함.
-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확대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소득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그림 1-2〉 국세청 등록 농업 사업자 수

단위: 명



자료: 국세청(https://tasis.nts.go.kr/). 국세통계. 검색일: 2022. 12. 21.

○ 기존 소득안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변화하고 있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입 및 소득정보의 파악 가능성을 고려한 경영안정정책의 확충 방안 검토가 필요함.

### 1.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경영안정제도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살펴보고 기존 경영 안정제도의 확대를 포함한 신규 경영안정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 이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농업정책의 상위 목표와 집행가능성, 비용효율성, 국제규범 등을 고려하여 신규 제도 도입 시 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함.
  - 신규 경영안정제도 도입은 세제 기반 소득자료의 확보 가능성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우선 검토하고 외국에서 실제로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한 경영안정정책을 운영하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제도 도입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함.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1. 연구 내용

- 제2장에서는 가격 및 수입 변동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국 내 경영안정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검토함.
  - 수입보장보험과 가격위험보상제도인 쌀 변동직불 및 FTA 피해보전직불제 에 대해 검토함.
  - 구체적으로 각 정책의 배경 및 경과, 운영방식, 지원 조건 및 사업평가를 검 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제3장에서는 해외의 경영안정정책 사례를 검토함.
  - 미국의 경영안정제도 중 수입 또는 마진 보상정책인 PLC, ARC SCO, STAX, RP. WFRP 등에 대해 검토함.
  - 일본의 농업경영수입보험을 검토하고, 캐나다의 소득안정계정과 농업투자 계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 제4장에서는 소득 기반 경영안정정책의 전제조건인 농업소득 파악 방안과 소득 기반 경영안정제도와 관련된 쟁점을 정리함.
  - 소득파악이 이루어지기 위한 세제 개편안과 소득신고자료를 이용한 소득 정보 확인 방법을 검토함.
  - 소득 기반 경영안정제도 도입을 위해, 보장 대상, 보장 방식, 가입 단위, 타제도와의 관계, 지원 대상, 보장 수준, 운영방식 등을 검토함.

### 2.2. 연구 방법

- 국내의 경영안정정책 도입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외 경영안정 제도 사례 및 국내 유사정책과 관련된 문헌을 조사하였음.
- 소득신고자료를 이용한 소득파악방법을 알아보고 연구보고서의 집필 방향에 참고하기 위하여 세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를 실시함.
- 국세청 자료 및 농업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기초분석을 함으로써 경영안 정정책의 필요성과 도입 시의 쟁점들을 검토하였음.

##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3.1. 농업경영위험 관리에 관한 연구

- 강혜정(2008)은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업위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농가가 직면한 농업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을 소개하였음. 또한, 농업위험에 대한 국내외 관리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향후 농업위험 관리정책이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 농업에서의 위험(risk)이란 농업경영 성과 및 생산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하며 불확실한 요인들의 발생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음. 이러한 위험은 발생 원인, 위험에 따른 영향의 정도, 위험 발생의 가능성과 발생 시 나타나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유형화될 수 있음.
  - 농업위험의 노출 정도는 농업소득의 변동성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농업소득 변동소득을 측정할 때 주로 시계열 자료(time-series data)를 사 용하나, 자기상관성(autocorrelation)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보조적으로 직 접 설문한 자료를 이용하기도 함.
  - 이 보고서는 농가가 대처할 수 없는 거대 위험에 대한 정부 대응 전략으로 1) 전업농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수입보험 도입 검토, 2) 공정 계약을 위한 법제도 장치 마련, 3) 조직화를 통한 농가 위험 통합 관리, 4) 농업관측 정보를 활용한 사전적 위험 관리 방안 강화, 5) 위험관리 기능이 강화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도입을 제시하였음.
- 박성재 외(2006)는 농가 단위 소득안정제도의 필요성과 구체적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소득안정정책을 소득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정의

하면서 시장개방 확대, 농업경영체의 규모화와 전문화가 진행되면서 가격, 단수, 투입재 비용 등의 변동에 따른 소득변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어 소득안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구체적으로, 농가 단위 농업소득안정계정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소득이 기준소득으로부터 30% 이상 하락하였을 때 기준소득의 일정 비율까지 보장하는 제도임.
- 박준기 외(2014)는 가격, 생산 및 제도의 측면에서 경영위험 실태를 분석하고 현행 경영안정제도를 평가, 개편방향을 제시하였음.
  - 경영안정지원제도의 개편 방향은 첫째, 정책의 우선순위를 농업경영안정 화로 재설정하고, 둘째, 경영위험의 유형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셋째, 농 업경영안정제도를 체계화하고 재정효율성을 확보하고, 넷째, 국제규범 합 치성을 확보하되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고, 다섯째, 선물거래 등 가격위험 헷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임.
- 박준기 외(2015)는 농가경제 실태를 분석하고 농업경영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개편 및 확충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 연구는 직불금 개편방안과 재해보상 및 재해보험 개선방안, 경영회생지 원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송원규 외(2019)는 국내외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업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의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농민단체의 요구안과 정부의 정책안을 비교·검토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안정 방안을 모색하였음.
  - 국내정책 현황 검토를 통해, 농산물 수급사업의 부적절성, 수입농산물 관리 부재,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참여자들 간의 비대칭적인 가격협상력, 자

조금사업의 자금조달 및 운영방식의 한계, 농업통계 및 농업관측의 부정확성, 경영안정 관련 보험정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함.

- 해외사례로서, 미국의 가격손실보상제도(Price Loss Coverage: PLC)와 수입손실보상(Agriculture Risk Coverage: ARC), EU의 공동농업정책 (CAP), 일본의 채소가격안정제도를 살펴봄.
-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1)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구축 및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정립, 2) 품목별체계 구축과 관련한 생산자조직과 통합마케팅조직의 역할 분담 및 관계 정립, 3) 생산자의 가격교섭력 확보를 위한 채소류 유통구조 개선, 4) 농산물 가격안정대 도입 및 운영, 제도의 안정성을 위한 기금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이정환 외(2020)는 국내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서 가격위험완충제도를 제안하였음.
  - 이 연구는 출하조절, 계약재배, 수매비축 등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정 책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역기능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 였음.
  - 대안으로서 가격위험완충제도가 제시되었는데,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격위험완충제도는 직불성 사업으로서 수입보장보험과는 별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가격위험을 완충하기 위해서 각 제도 설계 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서 네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생산농가의 가격 위험을 실질적으로 축소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과잉생산을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 상대가격을 반영하여 가격의 생산조정 기능이 발휘되어야 하며 셋째, 재정소요와 WTO 보조금 규정에 합치해야 한다는 것임.
  - 이 원칙에 따라 제시된 가격위험완충제도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이며 채소 재배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농작물을 대상 품목으로 정하여 기준가격 이하로 시장 가격 하락 시 하락분의 80~90% 를 보전하도록 함.

- 정원호(2012)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도입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 농가의 수입은 생산과 가격 변동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나, 농작물재해 보험은 재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만을 보장하며, 쌀변동직불과 FTA피해보 전직불은 가격하락만을 보전하므로 가격과 생산을 모두 보장하는 농가경 영안정 수단이 필요함.
  - 수입보험은 1) 품목별 생산량 변동과 가격 변동의 2가지 요인에 의한 가입 농가의 수입 변동을 보장함으로써 농가의 수입을 안정시키고, 2) 수입하락에 대한 리스크 감소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키고 소비자 잉여를 증가시키며, 3) 수입보험을 도입한 품목에 대한 위험 감소를 통해 전업농의 새로운 영농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입보험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보험설계 단계와 보험운영 단계 로 구분하여 제시함.
  - 보험설계 시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1)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품목 선정, 2) 농가에 도움이 되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수입보험 시행이 가능한 품목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 필요(특히, 생산성 또는 품질에 따라 가격편 차가 큰 품목에 대하여 전국평균 가격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그렇지 않을 경우 차별화된 가격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3) 역선택 예방, 4) 도덕적 해이 방지, 5) 적정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효과적인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음.

- 보험운영상 고려할 사항으로는 1)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보험의 운영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정부, 원보험사, 재보험사 및 해외재재보험사 사이의 안정적인 위험분산체계의 확립, 2) 가입 및 탈퇴 규정의 명확화를 제시하였음.
- O Kang(2005)은 농산물의 단기 가격 하락을 완화할 수 있는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 선물계약(Futures contracts), 옵션(Options), 스왑(Swaps), 보험(Insurance)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시장기반 위험관리 수단을 이용하는 농업인 및 농업기업과 정책입안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음.
  - 시장기반의 위험관리 수단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 먼저 농업인들의 파생상품별 구조와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교육을 받을 것을 권장함. 또한, 중개회사를 선택할 때에는 징계기록, 사업기간(5년 이상의 사업기간을 가진 중개회사를 권장), 제공 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질 등을 고려해야 함.
  - 정책입안자는 파생상품 시장 도입(특히, 개발도상국), 시장기반 제도를 이용한 농산물 가격 헷징이 투기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이해관계자 교육 및 역량 강화, 농산물 가격 변동 속에서 농업인이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풋옵션의 유연성 제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 O OECD(2009)는 종합적인 접근방식(holistic approach)을 통해 OECD 국가들의 농업 위험 관리에 대해 유형화하였음.
  - 농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위험 관련 조치는 위험 노출과 전반적인 지원 환경에 따라 성격과 상대적인 중요성이 달라짐.

- 최근 몇 년 동안, OECD 및 신흥경제국 사이에서 PSE(Producer Support Estimate)에 기반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정책과 시장 가격 지원 정책이 큰 부분을 차지했음.
- 지원 수준과 정책 간의 구성을 고려하여 농업에 대한 위험 관리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음.
  - 시장 가격 지원에 주로 의존하고 높은 지원 수준을 가진 경우(예: 일본, 한국).
  - 시장 가격 지원과 고정 요율 지급을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예: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 지원 수준이 OECD 평균과 거의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국가로 시장 가격 지원과 고정 요율 지급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경우(예: EU).
  - 지원 수준이 OECD 평균 미만인 국가로 시장 가격 지원이 지배적이지 않고 안정 지급금과 같은 변동금리 지급금, 보험 보조금(캐나다), 일부 경우 고정금리 지급금(미국)을 제공하는 경우.
  - 일반적 지원과 시장 가격 지원 모두 낮은 수준의 국가로 그러한 지원에서 위험 관련 조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미만을 차지하는 경우(예: 주로 신흥 경제국).
  - 지원 수준이 매우 낮고 위험 관련 조치와 관련된 비율이 높은 경우(예: 뉴질랜드, 호주).
- O Glauber, J. et al. (2021)은 OECD PSE(Producer Support Estimate) database 자료를 이용하여 농업위험관리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재해보상제 도(ex post disaster aid), 농업보험(agricultural insurance), 소득안정화 사업(income stabilisation schemes), 세금 및 저축 관련 정책(tax and savings measures)에 대해 분석하였음.

- 국가별 분석을 통해 위험관리 정책 간의 중복지원, 소득안정화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구성 요소 부재, 피해가 큰 위험 대응 방안으로 세금 및 저축 관련 정책의 부적절성 등을 지적하였음.
- 이 외에, 정부의 위험 관리 정책은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역선택, 도덕적 해이, 시장에서의 민간 영역 구축(crowding out)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추가로 농장, 농작물 및 가축 전반에 걸친 기본 데이터 투명성 확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3.2. 국세청 소득파악 관련 연구

- 근로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나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노동자는 국세청을 통한 소득파악이 잘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 방안 은 많은 연구자의 관심사였음.
- 김문정(2020)과 최인혁, 정훈(2021)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손실보상 및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하여 사전작업으로서 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방안과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음.
  - 김문정(2020)은 특고종사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서 국세청이 활용하고 있는 자료는 1)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보고된 인정용역 소득자료, 2) 사업장 제공자가 협조하여 제출한 특고종사자 과세자료, 3) 사업자 등록을 한 특고 종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라고 설명하였으며 과세자료에서 특고종 사자를 보다 식별하기 쉽도록 국세청 인적용역 코드를 개편하고 특고종사자와 관련된 업종을 세분화하는 것이 소득파악을 용이하게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최인혁, 정혼(2021)은 국세청의 소득파악 정확성과 적시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행정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구체적으로, 임금금로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월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것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정형 취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러나 비정형 취업자의 소득신고가 정착되기까지는 소득추계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김재진(2004), 유한욱(2008), 신영임, 강민지(2014), 정규언, 오윤택(2005) 은 자영업자의 소득신고 현황과 소득파악 방안을 검토한 연구임. 이들은 탈세 이론 및 소득탈루의 관점에서 과세인프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예로 적격영수증 확대, 성실납세 유인제도 적용 등이 있음.
  - 김재진(2004)은 과세 인프라 현황과 자영업자의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세제도와 정책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면세 범위 축소,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 강화, 다양한 현금대체결제수단 도입, 적격영수증 사용범위 확대, 그리고 기장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총 15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음.
  - 유한욱(2008)은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생보하에서 소득조사 현황을 살펴보고 탈세이론에 기반한 최적 소득조사 전략 수립 및 기초생보하에서의 생계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소득조사전략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 신영임, 강민지(2014)는 자영업자 소득 분위별 소득탈루율을 2003~2012
     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그 결과, 추정 소득에 기반한 자영업 가구의 소득탈루율은 2003년 25%에서 2012년 21%로약 4% 감소함. 소득별로는 중산층의 소득탈루율보다 저소득측과 고소득층

- 의 소득탈루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 그러나 2012년에 가까울수록 소득 수 준에 비례하여 소득탈루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됨.
- 정규언, 오윤택(2005)은 자영업자의 과소 사업소득신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영업자 사업소득신고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성실납세 유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리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납세제도 개선을 위해 중간예납 횟수 증가, 세금 선납제도 도입, 성실신고자에 대한 소득세 평준화 제도 도입, 신고성실도를 반영한 세무조사 결과차별적 처리,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 신고 활성화,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시행 등을 제시하였음.

#### 3.3. 농업 분야 세제 연구

- 농업분야 소득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에는 김미복, 김수석(2011), 박상원(2011), 임소영 외(2016)가 있으며 임응순 외(2013)는 농업을 포함한 1차 산업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부과를 검토하였음.
  - 김미복, 김수석(2011)은 농업 관련 조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과제를 검토하며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농가소득에 대한 공인된 정보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박상원(2011)은 작물재배업 비과세의 근거가 부족하며 타 산업과의 형평 성이 침해된다며 작물재배업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 하였음.
  - 임소영 외(2016)는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확대의 영향을 평가하고 과세 전환 여부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 농업 분야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해서는 미가공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필요성을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여타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과 비교할 때 우선순위는 다소 낮다는 의견이 제시됨.
  - 김유찬(1995), 김유찬, 이혜진(2012), 정유석(2012), 임소영, 박지연(2017), 임소영 외(2018) 등은 미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해 저소득층의 세부담 완화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면세로 인한 부작용 즉, 조세감면 제도의 복잡성, 조세제도의 중립성 저해, 과세 차별로 인한 통상 문제의 우려, 농산물 유통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로 인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반면 김승래(2008), 오연천(1987), 박명호, 정재호(2014), 홍성훈, 성명재 (2013)는 미가공 식료품 면세가 소득역진성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식료품의 우선순 위는 낮지만 재정지출로 전환하여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3.4. 본 연구의 차별성

-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크게 농업인의 경영위험 관리와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와 소득파악과 관련된 연구로 구분됨.
  - 기존의 경영위험관리에 대한 연구에서는 수입보장보험 등 경영안정정책의 확대를 위해 소득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소득 파악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를 진전시킨 연구는 없었음.
  - 기존의 세제 관련 연구에서는 소득파악방안 및 세제 개편 과제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을 뿐 축적된 소득정보를 활용한 소득안정정책의 구체적 도입 방 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음.

○ 이 연구는 농업인의 소득정보 획득 방안과 획득된 정보를 활용한 경영안정정 책 도입 방안에 대해서 다룸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통 합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음.

# 제2장

국내 경영안정정책 현황과 한계



# 국내 경영안정정책 현황과 한계

# 1. 수입보장보험<sup>1)</sup>

#### □ 사업 목적

-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시장 가격 하락 혹은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로 인해 발생 가능한 농가의 수입감소 위험을 관리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 산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임.
  - 순보험료의 50%. 운영비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약 30~50% (평균 약 35%)를 지원하여 농가의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은 0~20% 수준임.

## □ 도입 연혁

○ 농업수입보장보험은 2012년부터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대안으로 논의 가 시작되었음. 이후 2014년까지 수입보장보험에 대한 상품설계 연구용역과

<sup>1)</sup> 김태후 외(2022), 서상택 외(2020), 서상택 외(2022), 정원호 외(2018)를 참고하여 작성함.

함께 2회에 걸쳐 도상연습이 실시됨.

- 도상연습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도부터 콩, 양파, 포도를 대상으로 농업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 이후 품목이 추가되면서 2018년도에는 총 7개 품목, 3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표 2-1〉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추진 경과

연도	추진 내용
2012. 6.	농식품부 정책조정심의회 개최
2012. 7.	수입보험 제도 개선 및 도입 방안 검토 T/F 운영
2012~2013	수입보험 상품설계 등에 대한 연구용역
2013. 3.	6품목(포도, 양파, 시설오이, 콩, 배추, 한우) 1차 도상연습 실시
2014. 3.	5품목(벼, 마늘, 고구마, 시설토마토, 감귤) 2차 도상연습 실시
2015	3품목(콩, 양파, 포도) 14개 시·군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2016	추가적으로 마늘을 포함하여 22개 시·군 대상으로 실시
2017	추가적으로 고구마, 가을감자를 포함하여 30개 시·군 대상으로 실시
2018	추가적으로 양배추를 포함하여 35개 시·군 대상으로 실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 농업수입보장보험 사업시행지침; 정원호 외(2018).

### □ 가입방식

- 시범사업에 가입하기 위한 최소 경작면적은 2018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됨.
  - 2018년 이전의 최소 경작면적은 콩 4,500㎡ 이상, 포도 1,000㎡ 이상, 양파, 마늘, 가을감자 1,500㎡ 이상, 고구마 2,000㎡ 이상임.
  - 2018년 이후 최소 가입금액(생산액)에 대한 조건으로 변경되었으며, 최소 가입금액 조건은 콩 100만 원 이상, 기타 품목은 200만 원 이상임.

⟨표 2-2⟩ 농업수입보장보험 품목별 최소 가입면적 및 가입금액 변화 추이

단위: m², 만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TE		경작면적		가입금액				
콩	4,500	4,500	4,500	100	100	100	100	100
포도	1,000	1,000	1,000	200	200	200	200	200
양파	1,500	1,500	1,500	200	200	200	200	200
마늘		1,500	1,500	200	200	200	200	200
고구마			2,000	200	200	200	200	200
 가을감자			1,500	200	200	200	200	200
양배추				200	200	200	200	200

주: 2018년부터 가입기준은 금액으로 정함.

#### □ 사업대상 지역

- O 2018년부터 콩 7개 지역, 포도 6개 지역, 양파 6개 지역, 마늘 7개 지역, 고구 마 6개 지역, 가을감자 1개 지역, 양배추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 시하고 있음.
  - 2018년도 이후 추가된 신규품목이나 사업지역은 없음.
  - 시범사업은 시군 단위로 실시되며, 품목별 경과에 따라 새로운 지역이 포 함되거나 제외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업수입보장보험 사업시행지침.

⟨표 2-3⟩ 농업수입보장보험 품목별 시범사업 지역 변화 추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콩	김제, 문경, 서귀포, 제주 (4)	정선, 김제, 문경, 서귀포 제주(5)	정선, 김제, 문경, 서귀포 제주, 파주(6)	정선, 김제, 무안, 문경, 서귀포, 제주 파주(7)				
포도	상주, 영주, 영천, 화성 영동(5)	가평, 화성, 상주, 영주, 영천(5)	가평, 화성, 상주, 영주, 영천(5)	가평, 화성, 상주, 영주, 영천, 경산(6)				
양파	함평, 무안, 익산, 창녕, 합천(5)	함평, 무안, 익산, 청도, 창녕, 합천(6)	함평, 무안, 익산, 청도, 창녕, 합천(6)	함평, 무안, 익산, 청도, 창녕, 합천(6)	함평, 무안, 익산, 청도, 창녕, 합천(6)	함평, 무안, 익산, 청도, 창녕, 합천(6)	함평, 무안, 익산, 청도, 창녕, 합천(6)	함평, 무안, 익산, 청도, 창녕, 합천(6)
마늘		고흥, 의성, 창녕, 태안, 서귀포, 제주 (6)	고흥, 의성, 창녕, 서산, 태안, 서귀포 제주(7)					
고구마			여주, 이천, 해남, 영암(4)	여주, 이천, 해남, 영암, 당진, 아산(6)				
가을감자			보성(1)	보성(1)	보성(1)	보성(1)	보성(1)	보성(1)
양배추				서귀포, 제주 (2)				
계	3품목 14지역	4품목 22지역	6품목 29지역	7품목 35지역	7품목 35자역	7품목 35지역	7품목 35지역	7품목 35지역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업수입보장보험 사업시행지침.

#### □ 제출서류

- O 가입서류는 청약서, 신분증, 보험목적물 증빙자료(농지원부, 경작확인서 등).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 확인) 등임.
- 보험금 지급 시 필요한 서류는 청구서, 신분증,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한 서류(모종구매내역, 출하 관련 증명서, 영농일지 등)임.

#### □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시기

- O 품목별로 재배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가입기간은 다양하며, 사업연수의 경과에 따라 품목별로 보험가입기간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O 콩, 가을갂자, 양배추, 포도는 거의 변동이 없었던 반면, 양파와 마늘은 2019 년도에 보험가입기간이 1개월 정도 빨라졌으며 가을감자는 2022년도에 보 험가입기간이 1개월 정도 느려짐.
  - 이는 재배면적에 따른 수확기 가격의 예측이 가능하여 역선택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임.
  - 그러나 보험인수를 위해서는 재배작목의 식재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가입기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함.

⟨표 2-4⟩ 농업수입보장보험 품목별 보험가입기간 변화 추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7월	6. 7.~7. 22.	6~7월	6~7월	6~7월	6~7월	6~7월	6~7월
포도	11~12월	11. 7.~12. 2.	11월	11월	11월 (11~12월)	11~12월	11~12월	11~12월
양파	11~12월	11. 1.~ 11. 30.	11월	10~11월	9~10월	10~11월	10~11월	10~11월
마늘		(난지형) 10. 4.~ 10. 28. (한지형) 10. 31.~ 11. 30.	(난지형) 10~11월 (한지형) 11월	10~11월	9~10월	10~11월	10~11월	10~11월
고구마			5. 1.~ 5. 31.	4~6월	4~6월 (4월)	4~6월	4~6월	4~6월
가을감자			7~9월	7~9월	7~9월	7~8월	7~8월	8~9월
양배추				7~8월	7~8월	7~8월	8~9월	8~9월

주: 월 단위로 기재된 가입기간의 구체적인 일정은 ①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보험판매 전 지자체에 별도 통보하 며, ②보험사업자는 보험판매 전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일선 농협) 등을 통해 대농업인 홍보를 실시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업수입보장보험 사업시행지침.

#### □ 보상방식 및 수입파악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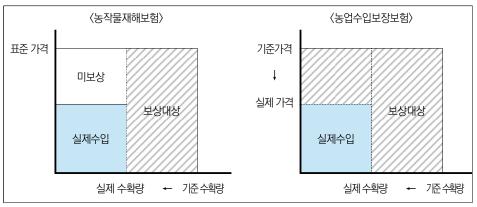
- (품목) 콩, 양파, 포도, 마늘, 가을감자, 고구마, 양배추.
- 지급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자기부담비율)
  - 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x 가입가격
  - 피해율 = (기준수입 실제수입) : 기준수입
  -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 농지별기준가격
  - (자기부담비율)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로 20%, 30%, 40%에서 선택.
- (평년수확량) 농지의 기후가 평년 수준인 조건에서 영농활동을 평년 수준으로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수확량으로, 농가별 과거수확량과 표준수확량을 기 초로 산출.
  - (신규 보험가입 또는 과거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 산출된 표준수확량의 100%를 평년수확량으로 결정.
  - (최근 5년 이내 보험 가입 경험 있거나 과거수확량 자료가 있는 경우)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frac{Y}{5}) \right\} \times \frac{C}{B}$   $\left\{ A + (B - A) \times (1 -$ 

O (기준가격) 품목별 과거 5년간 주 출하기 월평균 도매가격에 실제 농가의 수 입을 결정하는 농가수취율 적용.

- 기준가격 = 과거 5년 주 출하기 월평균 도매가격 중 최저와 최고가격을 제 외한 3개년 평균 가격 × 농가수취율\*
- \* 도매시장 가격에서 유통비용을 제외한 농가수취가격(농가판매가격)의 비율.
- O (실제수입) 가입 농가의 당년 실제수확량과 실제시장 가격(주 출하기 월평균 도매가격)을 곱하여 산출.
  - (실제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MIN(수확기 가격, 농지별 기준가격)
- O (실제수확량) 재해 등 수확량 감소를 반영한 당년 농가 수확량 측정.
  - 수량감소에 따른 손해평가는 기존 농작물재해보험 인프라 활용.
- O (실제가격) 품목별 주 출하기 도매시장 월평균 가격 적용.

#### ⟨그림 2-1⟩ 농업수입보장보험 작동원리



자료: 서상택 외(2020).

O 농업수입보장보험의 기준가격은 과거 5개년 수확기 가격의 올림픽 평균을 적 용하여 산출함.

- 수확기 가격은 전국단위 가격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에 따라 대표 성이 있는 지역 공판장이나 지역농협의 가격자료를 이용함.
- 콩(나물용 제외), 포도, 양파,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는 가락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수확기 가격으로 사용하며, 나물용 콩, 마늘은 지역 공판장이나지역농협의 가격자료를 이용하고 있음.
- 수확기 가격 산출의 출처가 되는 시장은 시범사업이 도입된 이래 변화가 없음.

⟨표 2-5⟩ 농업수입보장보험 기준가격 출처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백태									
콩	흑태			,	서울 양곡도	매시장 가격	‡			
0	서리태									
	나물용		 지역농협 수매가격							
	포도		가락도매시장 경락가격							
	양파	가락도매시장 경락가격								
	한지형			Д	역농협(의상	g, 새의성, <del>i</del>	금성, 의성경	등부) 수매가	격	
마늘	난지형 (대서종)			ō	방녕군 <mark>농</mark> 협공	판장(창녕능	5협, 이방농	·협) 경락가	격	
	난지형 (남도종)				취농협(신안,  역농협(대정		_,		, — -, .	
	고구마	가락도매시장 경락가격								
	가을감자	가락도매시장 경락가격								
	양배추		가락도매시장 경락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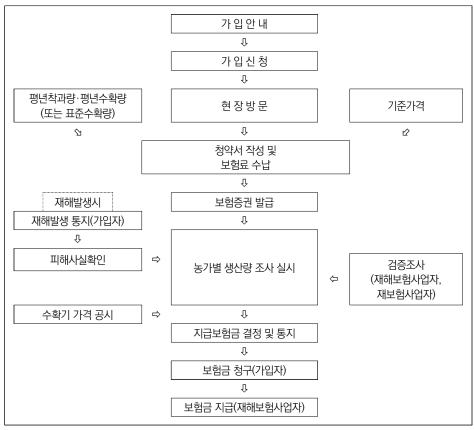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업수입보장보험 사업시행지침.

○ 기준가격 및 수확기 가격의 산출을 위한 기초기간은 품목별 대표시장에서 출하물량이 많은 시기를 기준으로 선정함.

#### □ 운영체계

- 보험 가입안내,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농가별 생산량 조사, 보험금 지 급 등 일반적인 절차를 가짐.
  - 다만, 수확량의 변동과 가격의 변동이 동시에 피해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피해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생산량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 고, 수확기 가격과 기준가격이 공시됨.

#### ⟨그림 2-2⟩ 농업수입보험 추진 절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업수입보장보험 사업시행지침.

### □ 운영실적

- 수입보장보험에는 2021년 1,457개 농가가 가입하여 2015~2021년까지 총 14,620개 농가가 가입하였으며 평균 보험 가입률 7.3%임.
-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207개 농가를 대상으로 약 793억 원의 보험 금이 지급되었으며 평균 139.8%의 손해율을 기록함.

⟨표 2-6⟩ 농업수입보장보험 추진 실적

단위: ha, 호, 백만 원, %

								114,,	1 12 12, 70	
연도	품목	대상 면적	가입 면적	가입 농가수	가입 금액	위험 보험료	가입률	지급 농가수	지급 보험금	손해율
	양파	5,497	191	298	6,299	577	3.5	143	420	72.8
'15	吶	2,942	1,166	687	10,528	1,455	39.6	513	1,605	110.4
15	포도	4,851	286	523	15,357	3,248	5.9	356	2,799	86.2
	소계	13,290	1,643	1,508	32,184	5,280	12.4	1,012	4,825	91.4
	마늘	5,467	58	97	3,810	354	1.1	80	513	144.8
	양파	5,558	105	157	4,433	659	1.9	122	581	88.2
'16	콩	3,363	1,078	684	9,497	1,435	32.1	492	1,863	129.8
	포도	3,742	246	491	11,841	2,356	6.6	387	3,386	143.7
	소계	18,130	1,487	1,429	29,581	4,803	8.2	1,081	6,342	132.0
	가을감자	85	31	48	738	128	36.5	37	123	96.1
	고구마	3,503	229	83	5,962	443	6.5	79	1,409	318.3
	마늘	5,486	1,243	1,533	89,317	10,100	22.7	1,388	17,831	176.5
'17	양파	4,760	1,039	1,407	49,751	8,903	21.8	1,391	17,988	202.0
	짜	3,978	1,654	958	13,389	2,067	41.6	467	1,382	66.8
	포도	4,311	301	569	14,295	2,646	7.0	549	9,128	344.9
	소계	22,123	4,496	4,598	173,453	24,288	20.3	3,911	47,862	197.1
	가을감자	68	24	22	676	105	35.5	16	66	62.7
	고구마	4,277	586	155	14,253	1,340	13.7	135	2,237	167.0
	쁘	7,236	164	382	12,140	1,385	2.3	361	4,889	353.0
'18	양배추	2,287	81	52	1,159	136	3.6	56	475	348.3
10	양파	4,842	212	368	9,541	1,351	4.4	354	2,193	162.3
	짜	5,703	967	823	9,390	1,241	17.0	706	1,866	150.4
	포도	4,650	86	177	4,232	1,010	1.9	137	1,444	142.9
	소계	29,063	2,121	1,979	51,391	6,568	7.3	1,765	13,169	200.5

연도	품목	대상 면적	가입 면적	가입 농가수	가입 금액	위험 보험료	가입률	지급 농가수	지급 보험금	손해율
	가을감자	259	12	21	349	50	4.7	20	161	321.9
	고구마	4,115	82	42	1,763	198	2.0	18	70	35.4
	마늘	7,801	225	520	17,407	2,173	2.9	109	261	12.0
'19	양배추	3,101	40	44	559	82	1.3	43	165	202.6
19	양파	5,916	166	333	6,921	1,221	2.8	55	103	8.5
	콩	6,575	585	426	5,897	951	8.9	317	1,122	118.0
	포도	4,497	97	257	4,295	1,196	2.2	150	844	70.5
	소계	32,263	1,207	1,643	37,191	5,871	3.7	712	2,727	46.4
	가을감자	353	25	34	670	96	7.0	28	39	40.9
	고구마	4,279	183	62	3,848	358	4.3	52	287	80.2
	마늘	10,565	231	633	17,867	2,052	2.2	244	696	33.9
'20	양배추	2,003	64	58	1,016	186	3.2	67	240	129.2
20	양파	7,148	236	420	9,823	1,257	3.3	212	502	40.0
	콩	8,996	753	629	7,175	1,050	8.4	551	1,587	151.1
	포도	4,218	69	170	3,928	1,172	1.6	165	517	44.1
	소계	37,562	1,561	2,006	44,327	6,171	4.2	1,319	3,869	62.7
	가을감자	155	11	20	295	32	7.0	2	3	8.7
	고구마	4,255	136	40	3,252	287	3.2	11	59	20.5
	마늘	9,558	210	535	16,130	1,397	2.2		_	
'21	양배추	2,200	32	40	473	96	1.4	18	29	29.7
۷1	양파	4,696	166	279	6,643	637	3.5		_	_
	콩	8,728	399	419	4,250	552	4.6	376	346	62.7
	포도	3,969	53	124	2,572	694	1.3		_	
	소계	33,561	1,007	1,457	33,615	3,694	3.0	407	436	11.8
	총계	185,992	13,521	14,620	401,741	56,676	7.3	10,207	79,229	139.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2022).

# □ 그 외 운영 현황

-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표 2-7〉.
  -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 가입방식 변경, 2019년 미사고 농가 수확량조사 미실시, 자부담비율 10%, 15% 상품 판매 중지, 2020년 수확량 전수조사 재실시 등이 있음.

#### ⟨표 2-7⟩ 농업수입보장보험 주요 제도 개선 사항

2018년	품목별 예산 배분 및 예산 범위 내 선착순 가입 방식으로 변경
2019년	사고 미발생 농가는 수확량 조사 미실시(평년 수확량 적용) 농작물재해보험보다 1개월 일찍 판매 자기부담비율 10%·15%형 상품 판매 중지 2년 이상 농작물·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농가로 가입대상 한정
2020년	수확량 전수조사 실시(가입한 모든 농지 수확량 조사) 농작물재해보험과 판매시기 동일하게 운영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2022).

- 연도별 재정(국고) 지원은 2015년도 31.6억 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0년 에는 52.5억 원을 달성하였으나, 2021년부터 25억 원으로 감축됨.
  - 2018년 이후 시범사업 품목 및 지역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과 2020년에는 재정(국고) 지원의 변화가 없음.

#### 〈표 2-8〉 연차별 재정(국고)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5,589	8,224	8,224	9,109	9,023	9,301	4,484	4,484
국고 (재정)	3,159	4,649	4,649	5,149	5,100	5,257	2,500	2,500
자부담	2,430	3,575	3,575	3,960	3,923	4,044	1,984	1,984

주: 자부담은 지자체 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업수입보장보험 사업시행지침.

-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보장수준은 2022년도 기준 가입금액의 60%, 70%, 80%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포도의 경우에는 2018년까지 85%, 95% 보장수준이 제공된 바 있으며, 2019년 이후에는 모든 품목에 걸쳐 60%, 70%, 80% 보장수준으로 변경됨.

⟨표 2-9⟩ 연도별 농업수입보장보험 운영 현황

단위: 건, %, 백만 원

ā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보험	품목수 (누계)	3	4	6	7	7	7	7
품목	신규품목	포도, 양파, 콩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좌동	좌동	좌동
대상재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가격하락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보장	당수준	60, 70, 80 (포도 85, 90)	60, 70, 80 (포도 85, 90)	60, 70, 80 (포도 85, 90)	60, 70, 80, 85, 90			
국고	보험료	50	50	50	50	50	50	50
지원율	운영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LL DI	예산현액	3,159	3,950	4,696	5,149	17,721	5,365	2,500
예산 및 집행	집행액	4,133	3,950	4,696	5,149	17,721	5,365	2,500
НО	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김태후 외(2022).

# 2. 가격위험보상제도2)

# 2.1. 쌀 변동직불

#### □ 사업 목적

○ 쌀 변동직불제는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하나로 쌀의 공급과잉 및 시장개방의 여파로 인한 쌀 가격하락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쌀 생산 농 가의 소득보전 및 식량자급률 제고 목적으로 시행됨.

<sup>2)</sup> 김경필 외(2021); 문한필 외(2020); 유찬희 외(2016)를 참고하여 작성함.

#### □ 도입배경 및 경과

- 쌀 변동직불제는 WTO 농업협정에서 수매 등 가격지지 제도의 축소 요구에 따른 쌀 농가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시행된 논농업직불제(2001)를 근간으로 함.
  - 논농업직불제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논단위 면적당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임.
- 그러나 논농업직불제가 쌀 가격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소득안정 측면에서 한계를 보임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논농업직불제 는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로 이루어진 쌀소득보전직불제(2005)로 개편됨.

#### ⟨표 2-10⟩ 기본직불 사업 추진 경과

연도	내용
2001	논농업직불제 도입
2003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2005	고정직불 및 변동직불로 개편
2015	쌀직불금과 밭고정직불금 통합 규정
2020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규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 검색일: 2022. 11. 17.

#### □ 운영방식

- 사업 대상은 쌀 고정직불금 대상자 중 대상농지에 물을 채워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임.
- 직불금 지급요건은 해당 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이 발동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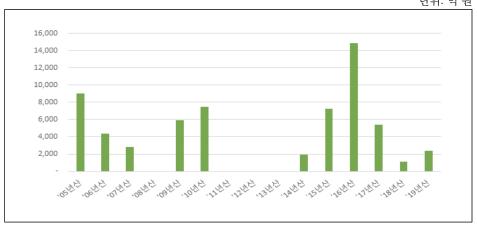
- O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 지급단가(원/80kg) × 평균 생산량(가마/ha) × 재배면적(ha)
  - (지급단가) [(목표가격 해당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0.85] 고정직불 금 단가
- 직불금 지원한도는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임.

#### □ 지원 규모

○ 쌀 변동직불금은 가격 상황에 따라서 지급되지 않은 해도 있었으나 대부분 지 급되었으며 2016년 산에 대해서는 1조 4.900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함.

#### 〈그림 2-3〉 쌀 변동직불금 지급 실적

단위: 억 원



주: 2013년산까지의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으며, 그 외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 료를 참조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 2. 18.). "농식품부, 설 명절 전 쌀 변동직불금 조기 지급 완료."; 농림 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2.2. FTA 피해보전직불

#### □ 사업 목적

○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인한 수입량 증가로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함.

#### □ 도입배경 및 경과

- 피해보전직불제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각국과의 FTA 체결에 대응하여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생산자의 피해보전, 농업 체질 개선,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피해보전직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2025년까지 유영 예정임.

〈표 2-11〉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개요

구분	내용		
발동기준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이 평년 대비 90% 이하로 하락		
	총수입량과 FTA 체결국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		
보전비율	차액의 95%		
보전기준	가격		
지급한도	법인: 5,000만 원, 개인: 3,500만 원		
대상품목	사후지정(모든 품목 대상)		
시행기간	2004~2025년		

자료: 문한필 외(2020).

#### □ 사업 대상

- O FTA 이행으로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어 가격하락 피해를 받은 품목 생산자
- O FTA 협정에 따라 관세 감축, 철폐 또는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농산물을 지

원 가능 품목으로 하며, 지원 가능 품목 중 'FTA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품목을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함.

-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 요건은 총 세 가지로 국내 가격요건, 총수입량 요건, FTA 체결국 수입량 요건이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함.
  - 국내 가격 요건은 지원 대상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3)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임.
  - 총수입량 요건은 지원 대상 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sup>4)</sup> 을 초과한 경우임.
  - FTA 체결국 수입량 요건은 FTA 체결국으로부터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5)을 초과한 경우임.
- 위의 발동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품목은 당해 연도 평균 가격과 기준가격 간 차액의 95%를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급함.
- 지급 대상자는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 등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임.
- O 신청 자격은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어짐.

<sup>3)</sup> 기준가격: 직전 5개년 평균 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의 90%

<sup>4)</sup> 기준총수입량: 직전 5개년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의 평균총수입량.

<sup>5)</sup> 기준수입량: 직전 5개년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의 평균수 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양.

-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 지급 방식

O 지원 기준은 산출 기준, 지급단가, 조정계수의 곱으로 도출됨.

#### O 산출기준

- (경종작물) 생산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 평균생산량
- (축산업) 출하 마릿수
- (낙농) 납유량(ℓ)
- (산란계) 사육 마릿수 × 평균 산란율(%) × 365
- (양봉) 사육 봉군수 × 봉군당 연평균 부산물 생산량(kg)

#### O 지급단가

- (기준가격 - 당해 연도 평균 가격) × 95%

#### O 조정계수

- (지급가능 보조액 / 지급신청 총액) × 수입기여도

#### O 지원한도액

- 농업인 개인당 3,500만 원, 법인 업체당 5,000만 원

#### □ 운영실적

- O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최근 8년간 총 30개 품목에 2.271억 원이 지급되었 으며 이는 연평균 3.8개 품목, 277억 원에 해당됨.
  -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은 각 연도의 수입 및 국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크게 변동하여 2019년에는 지급액이 10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630억 원으로 급증함.

#### 〈표 2-12〉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실적

단위: 개, 억 원

연도	품목 수	지급액
2013	2	194
2014	4	403
2015	9	495
2016	4	401
2017	1	33
2018	5	51
2019	2	10
2020	3	630
소계	30	2,217
평균	3.8	277.1

자료: 김경필 외(2021).

# 3. 국내 소득안정제도 평가

- 경영안정제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
  - (제도 취지와의 합치성) 제도 운영방식은 정책 목표인 농가의 소득 안정에 가장 잘 부합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소득 안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함.

- (집행의 용이성) 운영방식을 최대한 단순하게 설계하여 수혜자와 제도운영 주체 양쪽에서 운영하는 데 따르는 부담이 적도록 해야 함.
- (국제 규범과의 합치성) WTO 규정상 감축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감축보조의 한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 향후 국제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재정 효율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는데 이는 민간 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부 재정 투입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위험관리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함.
- (시장 왜곡 최소화) 해당 제도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가격이 지지되어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지양해야 함.
- 그러나 기존의 가격·수입변동 대응 정책은 위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여러 측 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수입보장보험은 사업 효과의 한계, 효율성, 비용 부담 면에서 개선되어야 한 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소득이 아닌 수입을 보장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득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콩, 포도, 양파 등 7개 품목,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어 다품목 재배 농가 가 많은 국내 여건상 일부 농가에 수입안정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남.
  - 현재의 수입보장보험은 농가의 소득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어 실제로는 피해규모를 확정하기 위하여 손해평가가 별도로 이루어져 야 하는 행정부담을 안고 있음(정원호 외, 2018; 서상택 외, 2020; 서상택 외, 2022).

- 유사한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과 비교할 때 재정 효율성이 낮음(서상 택 외. 2022).
- 특정 품목의 수입을 지지함으로써 해당 품목의 시장 왜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현행 평년수확량, 기준가격 및 수확기 가격 산출 등 세부 산정 과정에서 역 선택의 가능성이 있음(서상택 외, 2020).
- 쌀 변동직불은 가격 위험 대응 정책으로서 현재는 중단되었거나 생산중립적 이지 않다는 면에서 비판받음.
  - 이용기(2006)는 변동직불은 상당한 생산유발 효과가 있으며, 이에 따라 쌀 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평가함.
  - 박동규 외(2010)는 농가가 변동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쌀 생산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쌀 직불제가 공급과잉 현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함.
  - 김관수 외(2014)는 직불금의 수령 규모는 경작 규모와 비례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그 효과가 오히려 감소하며, 변동직불금은 소득 안정화 효과가 상 대적으로 크고, 고정직불금은 소득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평가함.
  - 안병일 외(2015)는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목표 가격의 97% 이상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여 농가수취가격을 안정화한 것으로 평가함. 하지만 생산과 연계된 변동직불금은 과잉생산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격하락 및 재정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함. 이러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목표가격 설정, 생산중립적 직불제 개편, 농업경영안정 대책 품목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유찬희 외(2016)는 쌀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변동직불제의 개편이 필요하며, 쌀 변동직불제 규모를 축소함

- 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쌀 고정직불금 단가 조정과 수입보장보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함.
- 이문호, 김관수(2020)는 변동직불제는 쌀 가격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로 인해 쌀 재배면적이 증가한다고 주장함. 또한 변동직불제는 일정 수준의 생산 왜곡 효과가 있으므로 목표가격을 다루는 변동직불금의 제도 개편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O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해당 품목의 농가의 피해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임정빈 외(2011)는 FTA 피해보전직불에 의해 보전되는 손실분은 전체의 20~40%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피해보전 효과는 낮다고 평가함.
  - 안병일 외(2015)는 FTA 피해보전직불의 발동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작으며, 발동되더라도 농가 수취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함.
     또한, 당해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가격이 크게 하락할경우 감축대상보조금 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며,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함.
- 종합하면, 기존 정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안정적으로 운영될 기반이 부족하고 생산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경영안정효과에 있어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어 신규 경영안정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경영안정제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종료가 예정되어 있고 수입보장보험이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농업경영체의 수입 또는 소득 변동에 직접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제3장

# 해외 경영안정정책 사례



# 해외 경영안정정책 사례

# 1. 미국 농가경영안정제도6

#### 1.1. 개관

O 미국은 크게 농가지원청(Farm Service Agency: FSA)이 운영하는 수입보장 제도(보상정책)와 위험관리청(Risk Management Agency: RMA)이 담당하 는 작물보험제도를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화시키고자 함.

# □ 수입보장제도(보상정책)

O 2014년 농업법(Agricultural Act of 2014)에서는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

<sup>6)</sup> 특정한 인용 표시가 없는 부분은 미국 농림부(USDA) 농가지원청(Farm Service Agency: FSA) 홈페이지(https://www.fsa.usda.gov/Assets/USDA-FSA-Public/usdafiles/FactSheets /2019/arc-plc\_overview\_fact\_sheet-aug\_2019.pdf). 검색일: 2022. 11. 14., 2014년 미국 농업법(Agricultural Act of 2014), 2018년 미국 농업법(Agricultural Improvement Act of 2018) 및 임정빈(2014a)을 참고하여 작성함.

한 제도로 가격손실보상(Price Loss Coverage: PLC)과 농업위험보상 (Agriculture Risk Coverage: ARC)을 신설하였음.7)

- 직불형태의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형태의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2007~2008년 금융위기와 그로 인해 계속된 경기 침체-재정 적자로 이어 지는 흐름 속에서 농업 부문에서도 재정 적자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했기 때문임.
- 특히, 2008년 미국 농업법(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 이후, 6년 동안 농산물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sup>8)</sup> 농가의 순소득이 증가<sup>9)</sup>하면서 직불 형태의 농업 보조금은 더 이상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하였음.
- 또한, 기존 제도하에서 보조금에 대한 작물별 형평성 논란 및 2010년 세계 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서 고정직불제 불허 판결 등의 배경 속에 서 PLC와 ARC가 도입됨.<sup>10)</sup>
- 그럼에도 불구하고 PLC와 ARC는 기존의 직불제도인 가격보전직불제도 (Counter-Cyclical Payments: CCP)와 수입보전직불제도(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ACRE)와 매우 유사함.

<sup>7)</sup>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면서 그간 시행해 오던 직접직불제도(Direct Payments: DP), 가격보전직불제도(Counter-Cyclical Payments: CCP)와 수입보전직불제도(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ACRE)는 폐지하였음.

<sup>8)</sup> 미국의 4대 작물의 경우, 옥수수와 면화 가격은 2011~2013년 동안 평균 40% 이상 상승하였으며, 대두와 및 가격은 각각 평균 27%와 14% 상승하였음(Zulauf & Orden, 2014).

<sup>9)</sup> 농가 순소득은 평균적으로 2008~2010년 동안 740억 달러, 2011~2013년 동안 1,21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Zulauf & Orden, 2014).

<sup>10) 1995~2019</sup>년 동안 미국의 품목별 무역왜곡보조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대두와 옥수수의 경우에는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적으로 드러남. 특정 품목에 대한 수요~공급의 미스매치를 유발하는 무역왜곡보조의 증가가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과 연관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그 이유로, 옥수수와 대두의 경우 lowa 주에서 미국 전체의 약 19% 및 15%(2019년 기준)를 생산하고 있는데, lowa 주 고용 측면에서 농업생산 및 관련 전후방 산업이 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를 차지하기 때문임. 이러한 예시에 착안하여 농업에 대한 보조를 농촌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하여 WTO 농업협상에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음(서진교 외, 2021).

O PLC와 ARC는 2018년 농업법(Agricultural Improvement Act of 2018) 에서 보조금 지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재승인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경우 농가의 경영안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김상현, 임정빈, 2018).

#### □ 작물보험

- O 위험관리청(Risk Management Agency: RMA)은 연방작물보험공사(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FCIC)를 통해 작물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 작물보험은 연방작물보험법(Federal Crop Insurance Act)에 의해 항구적으로 보전된 프로그램으로 2022년 현재 총 17개의 보험(특약상품이 연계되지 않은 보험 상품)이 있음.
  - 작물보험은 크게 수량보전형 보험(Yield Protection, Actual Production History 등), 수입보전형 보험(Revenue Protection, RP with Harvest Price Exclusion 등), 기타 보험(Dollar Plan, Whole Farm Revenue Protection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O 미국에서 운영 중인 작물보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보전 대상의 다양화: 수량 vs. 수입 vs. 마진(영업이익) vs. 달러 가치
  - 가입 단위의 다양화: 품목 vs. 농지 vs. 농가
  - 보험 가입 대상 품목에 대한 보험 종류의 다양화: 예를 들어, 옥수수의 경우수량보험, 수입보험, 마진보험 등 보험의 종류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함.
  - 보전성 강화: 1) 보전수준을 확대할 수 있는 특약을 개발하고, 2) 특수작물 (피칸, 딸기 등)에 대한 보험을 신설하였으며, 3)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수확기 가격제외 혹은 수확기 가격옵션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의 보

장성을 계속해서 강화함.

- 보험설계에 있어서 선물시장 정보 이용: 수량보전보험(Yeild Protection: YP), 수입보전보험(Revenue Protection: RP), 마진보호보험(Margin Protection: MP) 등 보험설계에 선물시장 가격 정보를 이용하는 보험이 증가하였음.

**〈표 3−1〉** 미국 작물보험 상품별 가입금액 비교(2022년)

단위: 백만 달러, %

	한用: 백단	근 기, 70
상품명	가입금액	비율
수량보장보험		
과거수량보장보험(APH)	17,386.9	10.1
수량보장보험(YP)	9,319.2	5.4
수량보험연계 추가보장옵션(SCO-YP)	243.4	0.1
수량보험연계 강화보장옵션(ECO-YP)	46.5	0.0
지역수량보장보험(AYP)	300.1	0.2
딸기수량보장보험(PRH-Y)	39.0	0.0
수입보장보험		
과거수입보장보험(ARH)	594.4	0.3
수입보장보험(RP)	122,457.7	70.8
수입보험연계 추가보장옵션(SCO-RP)	1,041.6	0.6
수입보험연계 누적소득보호 프로그램(STAX-RP)	1,010.1	0.6
수입보험연계 강화보장옵션(ECO-RP)	495.4	0.3
수입보험연계 사후적용보장옵션(PACE-RP)	1.2	0.0
수확기 가격제외 수입보장보험(RPHPE)	863.4	0.5
수확기 가격제외 수입보험연계 추가보장옵션(SCO-RPHPE)	4.1	0.0
수확기 가격제외 수입보험연계 누적소득보호 프로그램 (STAX-RPHPE)	6.8	0.0
수확기 가격제외 수입보험연계 강화보장옵션(ECO-RPHPE)	2.8	0.0
수확기 가격제외 수입보험연계 사후적용보장옵션(PACE-RPHPE)	0.0	0.0
지역수입보장보험(ARP)	575.5	0.3
수확기 가격제외 지역수입보장보험(ARP-HPE)	5.9	0.0
피칸수입보장보험(PRV)	370.7	0.2
딸기수입보장보험(플러스)(PRH-P)	36.3	0.0
딸기수입보장보험(일반)(PRH-R)	3.8	0.0
	수량보장보험 과거수량보장보험(APH) 수량보정보험(YP) 수량보험연계 추가보장읍션(SCO-YP) 수량보험연계 강화보장읍션(ECO-YP) 지역수량보장보험(AYP) 딸기수량보장보험(PRH-Y) 수입보장보험 과거수입보장보험(ARH) 수입보장보험(ARH) 수입보장보험(RP) 수입보험연계 추가보장읍션(SCO-RP) 수입보험연계 누적소득보호 프로그램(STAX-RP) 수입보험연계 강화보장읍션(ECO-RP) 수입보험연계 사후적용보장읍션(PACE-RP) 수입보험연계 사후적용보장읍션(PACE-RP) 수확기 가격제외 수입보험연계 추가보장옵션(SCO-RPHPE) 수확기 가격제외 수입보험연계 부적소득보호 프로그램 (STAX-RPHPE) 수확기 가격제외 수입보험연계 강화보장읍션(ECO-RPHPE) 수확기 가격제외 수입보험연계 강화보장읍션(ECO-RPHPE) 수확기 가격제외 수입보험연계 강화보장읍션(ECO-RPHPE) 수확기 가격제외 수입보험연계 강화보장읍션(ECO-RPHPE) 수확기 가격제외 수입보험연계 강화보장읍션(PACE-RPHPE) 기격제외 수입보험연계 사후적용보장읍션(PACE-RPHPE) 지역수입보장보험(ARP) 수확기 가격제외 지역수입보장보험(ARP-HPE) 피칸수입보장보험(PRV)	상품명

종류	상품명	가입금액	비율
	기타보험		
달러플랜	달러보험(DO)	2,527.1	1.5
	고정달러보험(FD)	0.1	0.0
	수목기반달러보험(TDO)	2,615.2	1.5
	수량기반달러보험(YDO)	553.3	0.3
	수산양식달러보험(AQDOL)	22.3	0.0
마진보험	마진보호(MP)	338.0	0.2
	수확기 가격옵션 마진보호(MP-HPO)	2,809.0	1.6
 허리케인지수보험(HIP-WI)		1,380.2	0.8
		5,828.8	3.4
농가수입보장보험(WFRP)		2,090.7	1.2
	전체	172,968.5	100

자료: 미국 농림부 위험관리청(https://www3.rma.usda.gov/apps/sob/current\_week/insplan2022. pdf). Summary of Business 2022. 검색일: 2022. 12. 1.

O 이하에서는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보상정책인 PLC/ARC, 2022년 가입금액 기준 작물보험 중 70%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보장보험(RP), 농가 단위의 수입을 보장하는 농가수입보장보험(Whole Farm Revenue Protection: WFRP). 경영비 변동까지 고려하여 마진을 보장하는 마진보호보험(MP)에 대 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봄.

## 1.2. 가격손실보상(PLC) 및 농업위험보상(ARC)

#### □ 보장 대상

O PLC 프로그램은 해당 작물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 농가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기본적으로 해당 품목의 거래연도 시장 평균 가격(national market year average price: MYA)과 해당 품목에 대한 융자 단가(national average loan rate)<sup>11)</sup> 중 더 높은 가격이 농가지원청이 지정한 유효 참조 가격보다 낮은 경우, 해당 작물의 과거 수확량에 기반한 수확량만큼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상금을 지급함〈부록 1 참고〉.
- O ARC 프로그램은 실제 작물 수입이 ARC가 보장하는 일정 수준의 수입보다 작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농가경영안정 제도임.
  - ARC는 다시 지역단위 수입을 기반(payment based county revenue)으로 한 ARC-CO와 개별농장단위 수입을 기반(payment based on individual farm revenue)으로 한 ARC-IC로 구분됨.
  - ARC-CO는 해당 작물에 대한 실제 지역 수입이 ARC-CO가 보장하는 일 정 수준의 수입보다 작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함(부록 1).
  - ARC-IC는 개별 농장 수입이 ARC-IC가 보장하는 일정 수준의 수입보다 작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함(부록 1).
- O ARC는 경미한 수입 손실(shallow loss)12) 을 보전하는 정책으로서 최대 보

<sup>11)</sup> 해당 품목에 대한 융자단가(national average loan rate)는 작물 단위당 가격(\$)으로 표시됨. 이 융자단가는 유통융자지원제도(Marketing Assistance Loans: MAL)에서 사용하는 개념임. 유통융자지원제도는 수확된 작물의 출하 시기를 늦추는 대신 수확기와 출하기 사이에 농가가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임.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보통 수확기 근처의 작물 가격이 가장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작물 출하를 가능한 늦춰 가격 하락의 위험도 일정 부분 분산시키며 연중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기 위함임. 이 제도에서의 융자금은 담보로 잡힌 작물의 수확량에 융자단가를 곱함으로써 구해짐. 그런데 융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데도 여전히 수확기 가격에 비해 시장 가격이 낮은 경우 농가는 융자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대신에 담보로 잡힌 수확량(즉, 현물)으로 상환할수 있음. 따라서 사실상 특정 작물에 대한 융자단가는 정부가 보장하는 최저가격인 셈임(임정빈, 2014a; 미국 농림부 농가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fsa.usda.gov/Assets/USDA-FSA-Public/usdafiles/FactSheets/mal\_ldp\_090420\_fact\_sheet.pdf). 검색일: 2023. 1. 5.).

상 지급단가가 벤치마크 수입의 10%로 정해져 있음.

- ARC에서 보장하는 최대 지급단가는 벤치마크 수입의 10%로, 실제 수입이 ARC의 발동기준(벤치마크 수입의 86%)으로부터 10%를 초과하여 감소했 다 할지라도 그 초과분에 대한 손실(즉, 중대한 손실)은 ARC를 통해서 보 상받지 못함.
- 따라서 농가는 작물보험 등에 가입하여 중대 손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전 받고, 추가로 ARC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음.

#### □ 가입 단위

- O PLC와 ARC는 상호배타적인 제도로, 우선은 가입 단위를 어떻게 설정한 것 인지 따라서, 그다음은 어떤 위험(가격 변동 혹은 수입 변동)에 대응할 것인지 에 따라 선택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음.
  - 농가가 품목13) 단위로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PLC와 ARC-CO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됨.
  - 농장 단위로, 해당 농장 수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ARC-IC를 선택하면 됨.
  - 한 주에 다수의 농장을 가진 생산자는 하나의 농장에 대해서는 ARC-IC에 등록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PLC/ARC-CO를 등록할 수 있음.

<sup>12)</sup> 농가가 작물보험 등의 위험관리수단을 이용해도 농가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에 대한 자기부담 금(deductible)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자기부담금 내의 손실을 경미한 손실(즉. 경손)이라 함. 예를 들어, 농가가 작물보험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보통 보장 수준을 기준 생산량 혹은 기준수입의 70% 정 도로 설정하는데.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보험에 따른 손실 보험금을 받아도 손실의 30%는 농가 스스 로가 부담해야 하며, 이 30%가 농가의 자기부담금이 됨.

<sup>13)</sup> PLC나 ARC에서 보상해 주는 대상 품목은 밀. 귀리. 보리. 옥수수. 수수. 쌀(장립종). 쌀(중단립종). 쌀(단립종), 실면(seed cotton), 건조 완두, 렌틸콩, 이집트콩, 대두, 땅콩, 해바라기씨, 카놀라, 아 마씨, 겨자씨, 유채씨, 잇꽃, 야채겨자, 참깨로 총 22개임.

## □ 참여요건

- O PLC/ARC는 농가의 자부담(보험료)이 존재하는 작물보험과는 달리 농가경 영안정을 위한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한 참여요 건이 작물보험보다 엄격함.
- O PLC/ARC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다는(actively engaged in farming: AEF)" 인증을 받아야 함〈부록 2〉.
  - 농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위는 크게 1) 단독 소유주(sole proprietorship) 혹은 가족 농장(family farm), 2) 파트너십에 근거한 공동운영체(joint operation), 그리고 3) 농장 법인(corporation)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리한 3가지 단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98%에 이름(2017년 기준).
  - 이러한 AEF 인증은 미국 시민, 거주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게 모두 동일하 게 적용됨.
- 둘째, 프로그램 등록 직전 3개 과세 연도 평균 조정 총소득(average adjusted gross income: AGI)이 9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08년 농업법은 PLC/ARC 도입 이전에 시행되던 품목별 지원제도에 대해 농업소득이 75만 달러 이상이거나 혹은 농업외소득이 50만 달러 이상 인 농업인에 대해서는 수혜 자격을 제한하였음.
  - 2014년 농업법에서 새로운 품목별 지원제도인 PLC/ARC를 신규로 도입하면서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의 구분을 없애고,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AGI를 수혜 자격 기준 금액으로 보았음.
  - 2018년 농업법에서도 AGI에 대한 수혜 자격 기준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나, 다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장관의 결정에 따라 이 조건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음.

- O PLC/ARC 참여요건에 사용되는 AGI는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에 보고된 AGI를 말하며, 이 농장소득은 수입에서 경영비를 제한 순소득을 의미함.
  - 미국 농림부에 따르면, 농가의 98%는 단독 소유주, 파트너십, Subchapter S 법인<sup>14)</sup>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을 그대로 전달받기 때문에, 농업 관련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과세된다고 봐야 함.
  - PLC/ARC에 등록하고자 하는 농가는 IRS가 해당 농가의 세금 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AGI 한도 조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매년 'CCC-941'이라는 양식을 통해 일종의 정보 확인 동의서를 농가지원청 (FSA)에 제출해야 함.
  - 이러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AGI 최대한도 조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PLC/ARC 수혜 자격이 상실되고, 해당 연도에 이미 받은 지불금은 모두 환불해야 함.
  -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미국 농림부가 결정한 개별 농장 AGI 측정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소득을 측정함.
- 셋째, 농가의 기본 면적(base acres)<sup>15)</sup> 합계가 10에이커 이상이어야 함.
  - 이러한 기본 면적에 대한 요건은 사회적 약자16로 인정되거나 제한된 자원

<sup>14)</sup> Subchapter S 법인은 'flow-through'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법인을 말하며, 이는 소득에 따른 납세의무가 개별적인 법인 주주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형태의 법인은 기업의 이익이 기업 수준에서 과세된 후, 주주들에게 분배될 때 다시 과세되는 일반 법인과 구별됨(코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s://www.law.cornell.edu/wex/subchapter\_s\_corporation). 검색일: 2023. 1. 30.).

<sup>15)</sup> 기본 면적(base acres)은 PLC/ARC를 포함한 정부의 각종 지불금(payments)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면적으로, 보통 과거 자료의 평균값으로 설정됨.

<sup>16)</sup> 사회적 약자(socially disadvantaged)는 인종(race), 민족(ethnicity) 및 성별(gender)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는 농업 종사자를 말하며, 여기에는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아시아인 또는 아시

- 을 가진 농가, 신규농 및 퇴역군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제한된 자원(limited resource)을 가진 농가는 PLC/ARC 프로그램 해당 연도의 직전 3년도와 직전 2년도<sup>17)</sup>의 1) 농장 총수입이 17만 6000달러<sup>18)</sup>를 초과하지 않고, 2) 4인 가족 기준으로, 총 가구 소득이 국가 빈곤 수준 (national poverty level)<sup>19)</sup> 이하인 경우를 말함.
- O 넷째, 농업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함.
  - 농가는 토지 및 습지 보전 조항을 준수해야 함.
  - 농업부 장관이 정한 건전한 농업 관행을 따라야 함.
  - 농업용으로 등록한 기본 면적을 농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2014년 농업법에서는 2014~2018년 프로그램 기간 동안에 목초지나 휴경지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2018년 농업법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체가 목초지이거나 휴경지로만 사용되었던 토지도 기본 면적으로 유지는 되나 그러한 토지에 대한 PLC/ARC 보상금 지급은 받을 수 없게 하였음.

## □ 운영방식

O PLC/ARC는 농가지원청(FSA)과 농가<sup>20)</sup> 간의 계약에 기반하여 운영됨.<sup>21)</sup>

아계 미국인,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또는 기타 태평양 섬 거주자, 히스패닉 및 여성을 포함함.

<sup>17)</sup> 프로그램 연도란 농가지원청이 지정한 PLC/ARC가 운영되는 기간을 말하며, 프로그램 연도 직전 3 년과 직전 2년에서의 기간은 일반적인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을 말함. 예를 들어, 2014년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2011년과 2012년의 총수입을 고려해야 함.

<sup>18)</sup> 이 기준은 2014년 기준이며, 해당 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됨.

<sup>19)</sup> 농가의 총 가구 소득이 빈곤선 이하 판단은 National Resource and Conservation Service의 Limited Resource Farmer and Rancher Online Self Determination Tool을 통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짐.

- 농가는 연방 규칙 7 CFR<sup>22)</sup> part 1412(Agriculture Risk Coverage, Price Loss Coverage and Cotton Transition Assistance Programs)에서 정 한 양식에 서명을 하고, 농가지원청(FSA)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O 또한 계약 체결과는 별도로, 계약 연도에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것인지를 선택하고 FSA가 지정한 등록 시기에 등록해야 함.23)
  - PLC/ARC 등록 내역은 2019~2023년 동안 유지되지만 농가가 원할 경우 매년 PLC와 ARC 등록을 변경할 수 있음.
  - PLC/ARC 등록 시. 보장되는 작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지분을 제출해야 함.

# □ PLC/ARC 보상금 상한<sup>24)</sup>

- O 작물 연도 당 PLC, ARC-CO 및 ARC-IC에 의한 보상금은 1인당 최대 12만 5.000달러(대상 품목 중 땅콩은 제외)로 제한되어 있음.
  - 12만 5.000달러는 PLC/ARC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유통융자지원제도 (Marketing Assistance Loans: MAL)를 통한 보상금까지 합산한 금액임.
  - 땅콩은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땅콩에 대한 1인당 최대 지급 상한 기준도 12만 5,000달러임.

<sup>20)</sup> 여기서 농가란 개인과 법인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1) 농작물 생산에 대한 위험을 공유하고, 2) 농장에서 판매하는 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농장 소유주, 운영자, 지주, 소작인 등의 이해 관계자를 말함.

<sup>21)</sup> 미국 농림부 농가지원청(https://www.fsa.usda.gov/Assets/USDA-FSA-Public/usdafiles/ arc-plc/2019/pdf/appendix-to-arc\_plc-contracts.pdf). 검색일: 2022. 11. 17. 참조.

<sup>&</sup>lt;sup>22)</sup>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약어.

<sup>&</sup>lt;sup>23)</sup> 미국 농림부 농가지원청(https://www.fsa.usda.gov/Assets/USDA-FSA-Public/usdafiles/ arc-plc/2019/pdf/appendix-to-arc\_plc-contracts.pdf). 검색일: 2022. 11. 17. 참조.

<sup>&</sup>lt;sup>24)</sup>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U.S. Farm Programs: Eligibility and Payment Limits.

### □ 제출서류 및 페널티

- O PLC/ARC를 선택한 농가는 소유권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경작지에 대한 면적 보고서(acreage reports)를 제출해야 함.
  - 면적 보고서에는 재배 작물, 작물 재배가 불가한 면적, 식재 면적, 작물에 대한 생산자의 지분, 작물 식재일 등을 포함해야 함.
  - 작물별로 생산 주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작물별로 면적 보고서 제출 일자 가 다름.
- O ARC-IC를 등록한 농가는 농업수입과 관련 있는 모든 농장에서 생산된 ARC 프로그램 대상 품목에 대한 생산 보고서(production reports)를 제출해야 함.
  - 단, 생산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농장은 같은 주에 위치해 있어야 함.
- 농가가 면적 보고서와 생산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되면 보상금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지급실적

O PLC와 ARC의 보상건수와 보상규모는 매년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변하나, 대체로 ARC의 보상규모가 PLC에 비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표 3-2〉** PLC/ARC 지급 보상금

단위: 건, 백만 달러

회계연도	Pl	_C	ARC		
외계한포	지급건수	지급 보상금	지급건수	지급 보상금	
2016	141,259	781	1,358,003	4,532	
2017	681,453	1,953	1,796,317	5,992	
2018	687,464	3,282	1,596,818	3,830	
2019	715,679	2,051	991,554	1	

취계여드	Pl	_C	AF	RC
회계연도	지급건수	지급 보상금	지급건수	지급 보상금
2020	886,113	1,928	704,745	690

주: PLC/ARC 지급액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집계되어 프로그램 연도와는 시차가 있음. 자료: 미국 농림부(각 연도). USDA Budget Explanatory Notes-Farm Service Agency.

# 1.3. 수입보장보험(Revenue Protection: RP)<sup>25)</sup>

### □ 보장 대상<sup>26</sup>)

- O RP는 가입 대상 품목27)에 대한 실제 수입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임.
  - 수입 보장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가뭄. 높은 습도. 우박. 태풍. 서리 및 병 충해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손실과 예상 가격에서 벗어난 수확기 가 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 모두를 보전함.
  - 이 보험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분을 보전할 수 없는 기존의 수량 보장보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됨.28)
  - 위험관리청은 RP를 다양한 보장 수준과 선택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수확량 과 가격 변동의 복합적인 위험으로부터 수입을 보장하여 연도별 소득 변동 성을 줄이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소개하고 있음.

<sup>&</sup>lt;sup>25)</sup> 특별한 인용 표시가 없는 부분은 Plastina et al.(2021); 김미복 외(2022)를 참고하여 작성함.

<sup>&</sup>lt;sup>26)</sup> 미국 농림부 위험관리청 홈페이지(https://rma.usda.gov/en/Policy-and-Procedure /Insurance -Plans/Revenue-Protection). 검색일: 2022. 11. 17.; Plastina et al.(2021) 참조.

<sup>27)</sup> RP가 보장하고 있는 품목은 옥수수, 대두, 밀, 수수, 보리, 목화, 해바라기, 땅콩, 건완두콩, 쌀, 카놀라, 건콩, 팝콘 총 13개로, 기존의 수량보장보험(Yield Protection: YP)이 보장하고 있는 품목과 동일함. <sup>28)</sup> Plastina et al.(2021) 참조.

- 보험금(payments) 지급은 농가의 실제 수입이 보험에서 보장하는 수입보다 낮을 때 이뤄지며, 보험금의 크기는 그 차이(즉, 보장 수입 실제 수입)임〈부록 1〉.
  - 실제 수입(actual revenue)은 보험 적용 연도 실제 수확량과 수확기 시장 가격(harvest price)을 이용하여 도출함.
  - 보장 수입(revenue guarantee)은 농가의 실제 수확량의 과거 평균값과 보장 가격을 통해 계산함.
  - 수확기 시장 가격과 보장 가격 모두 선물거래 가격 정보를 이용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RP는 기본적으로 선물시장이 존재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제공됨.

## □ 가입 단위<sup>29</sup>)

- O RP 등의 작물보험은 기본 단위(basic unit), 선택 단위(optional unit), 작목 단위(enterprise unit) 및 전체 농장 단위(whole farm unit)로 가입할 수 있음.30)
  - 기본 단위나 선택 단위는 일정 기준에 따라 구분된 농지가 보험가입 단위 가 됨.
- 기본 단위는 카운티<sup>31)</sup> 내의 1) 소유지나 현금 임차지 혹은 2) 작물지분 공유지(작물 지분이 다른 경우 별도의 단위로 간주)로 토지를 구분하여 부여하는 보험 단위로, 각 작물은 별도의 보험 단위가 부여됨.

<sup>&</sup>lt;sup>29)</sup> King Crop Insurance 홈페이지(http://www.kingcrop.com/crop-insurance/selecting-crop - insurance-unit.htm). 검색일: 2022. 11. 28.; Plastina, A. & W. Edwards. (2017). Proven Yields and Insurance Units for Crop Insurance. 참조.

<sup>30)</sup> 보험 단위(insurance unit)는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토지의 각 구획을 의미함.

<sup>31)</sup> 하나의 카운티는 여러 개의 타운십(township)으로 이루어져 있고, 타운십은 구획(section)으로 구성되어짐.

- O 선택 단위는 기본 단위를 조금 더 세분화한 단위를 말하는데, 1) 농장이 서로 다른 타운십에 있거나 2) 같은 타운십이라 하더라도 유기농 방식 적용 여부 혹은 재배지의 관개 시설 유무 등 농업 방식이 특정 지어질 수 있는 구획이 있 는 경우에 사용함.
  - 보통은 같은 면적을 기본 단위 하나로 가입하는 것이 선택 단위로 나누어서 여러 개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저렴함.
- 작목 단위는 하나의 카운티에서 단일 작목이 재배되는 모든 구획을 말함.
  - 작목 단위로서 보험 단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1) 동일 작물에 대해서 최소 한 두 개 이상의 선택 단위가 있어야 하고, 2) 그중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선 택 단위는 20에이커보다 작거나 혹은 작목 단위로 설정하고자 하는 총면적 의 20%보다 작아야 함.
- 전체 농장 단위는, 하나의 지역에서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작물이 재배되는 모든 농지를 하나의 보험 가입 단위로 보는 것임.
- 농지를 기준으로 보험 단위가 설정되는 기본 단위나 선택 단위에 비해서 작목 단위나 전체 농장 단위의 보험료가 더 저렴함.
  - 작목 단위는 재배 품목 기준으로. 전체 농장 단위는 농장 단위로 보험 단위 를 설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본이나 선택 단위보다 보험 단위는 크나 가입하는 보험의 수가 적음.
  - 선택 단위는 기본 단위보다 보험 단위를 특정 농업 방식 등에 따라 더 세분 화한 것이므로, 동일 면적을 선택 단위로 보장할 경우 기본 단위로 보장하 는 것에 비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더 높음.

- 농지를 보험 가입 단위로 하는 RP 보험의 경우 이모작에 대한 보상기준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두 작물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짐.32)
  - 동일한 작물 연도에 첫 번째 보험 작물을 수확한 후, 또 다른 보험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해당 지역의 농업 전문가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농업 관행이어야 함.
  - 해당 카운티에서 이모작에 대한 보험을 제공해야 함.
  - 또한, 생산자는 최소 과거 2년간 이모작을 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을 제공해야 함.
  - 기존의 이모작에 대한 보험 적용에 더하여, 위험관리청은 double cropping initiative라는 새로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이모작으로 생산하는 콩과 곡물 수수에 대한 보험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 □ 참여요건

- O RP와 같은 보험방식을 통한 위험관리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PLC/ARC에 참가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토지 및 습지 보전 조항을 준수해 야 함.33)
  - 다만, 개별 보험 증권에 대한 보험료 보조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PLC/ARC 등의 보상 프로그램과는 달리 농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AEF 인증이나 AGI 최대한도 기준 등이 적용되지 않음.
  - 또한, 개별 보험 증권에서 정한 보상금 한도액 이외의 전체 보험금에 대한 지급 한도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sup>32)</sup> 미국 농림부 위험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rma.usda.gov/News-Room/Frequently -Asked-Questions/Double-Cropping-Initiative). 검색일: 2022. 11. 28. 참조.

<sup>&</sup>lt;sup>33)</sup>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U.S. Farm Programs: Eligibility and Payment Limits.

#### □ 운영방식

- 작물보험은 미국 농림부 산하의 위험관리청이 설립한 연방작물보험공사 (FCIC)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음.
  - 연방작물보험공사는 보험 상품 개발, 보험료율 및 작물 가격 설정, 보조금 지급. 재정 관리 등 보험사업 운영을 총괄하며, 시장 동향 분석 등의 업무도 수행함.
- 보험에 대한 상담 및 판매, 손해평가 등은 연방작물보험공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민영보험사(Approved Insurance Providers: AIPs)34)가 담당함.
  - 손해평가는 연방작물보험공사가 발간하는 손해평가지침(Loss Adjustment Manual Standard Handbook: LAM)을 따름.
  - 손해평가는 보통 현장조사를 통해 보험 가입 품목과 미가입 품목의 손실 정도 를 확인하고, 감정평가에서 비가입품목에 대한 생산량 또는 금액을 제함으로 써 이루어짐. 또한, 면적보고서 등의 정보 검토 및 확인 작업도 함께 이루어짐.
  - 정확한 손해평가를 위해서 APIs는 주기적으로 손해평가인(Loss Adjuster)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손해평가사는 손해평가인 숙련 프로그램(Crop Adjuster Proficiency Program: CAPP)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CAPP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 □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

O 농가는 연방작물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를 보조받아 민영보험사로부터 보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음.

<sup>34) 2022</sup>년 현재 총 13개의 민영보험사가 연방작물보험공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작물보험을 판 매하고 있음. 이러한 민영보험사는 연방작물보험공사와의 계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연방작물보험공사는 농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보장 수준에 따라 50~90% 범위에서 보조하고 있으며, 보장 수준이 높을수록 보험료 보조율이 감소하 는 구조임.
- 보험료 보조율은 가입한 보험 단위와 보장 수준에 따라 달라짐.35)

⟨표 3-3⟩ 보험 단위 및 보장 수준에 따른 보험료 보조율

H자 스즈	보험 단위			
보장 수준	기본 단위 및 선택 단위	작물 단위		
50%	67%	80%		
55%	64%	80%		
60%	64%	80%		
65%	59%	80%		
70%	59%	80%		
75%	55%	77%		
80%	48%	68%		
85%	38%	53%		

자료: Shields, D.(2015).

### □ 제출서류

- O RP 가입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생산량 정보, 가격 정보 및 농가의 재무 자료가 필요함.36)
  - APH37)는 지역위험보상보험(Area Risk Protection Insurance: ARPI) 을 제외한 연방작물보험공사가 지원하는 모든 보험에 사용되는 생산량 정보임.

<sup>35)</sup> Plastina, A. & W. Edwards. (2017). Proven Yields and Insurance Units for Crop Insurance. 참조.

<sup>36)</sup> Plastina, A. & W. Edwards. (2017). Proven Yields and Insurance Units for Crop Insurance. 참조.

<sup>&</sup>lt;sup>37)</sup> APH(Actual Production History)는 농가가 실제 생산한 양의 과거 평균값임.

- APH 수확량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 단위에 대해서 최소 4년에서 최대 10년까지의 연속된 증빙 자료(판매 영수증, 보관 기록, 사료 소비 기록 등)가 필요함.
- 4년 연속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이 없는 연도에 T-Yield<sup>38)</sup>의 자료를 입력할 수 있으나, 기록이 없는 연도의 햇수에 따라 입력할 수 있는 T-Yield의 양이 달라짐.

### □ 운영실적

- O RP는 판매를 시작한 2011년에 가입건수가 약 75만 1,000건, 가입금액이 약 783억 달러였는데, 이는 2011년 작물보험 총 가입건수와 가입금액의 각 65%와 69%에 해당하는 수치임.
- 그 후 가입건수와 가입금액 모두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작물보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로, 수량보장형 보험이나 달러보험 등 다른 형태의 보험에 비해서 압도적인 운영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 2022년 기준으로 운영 중인 32개 보험(기본 보험과 연계된 특약 상품 모두 포함) 중 가장 많은 가입금액(약 1,225억 달러, 비율은 70.8%)을 보이고 있음〈표 3-4〉.
  - 수확기 가격 제외 상품인 RP-HPE와 RP, RP-HPE와 연계된 각종 특약 상품 가입까지 고려하면 가입금액은 1,259억 달러에 달하며, 이 금액은 작물보험 총가입금액인 1.730억 달러의 72.8%에 해당함.

<sup>38)</sup> T-Yield(Transitional Yield)는 미국 농림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설정한 수확 량으로 한국의 표준수확량 개념과 유사한 개념임.

### 〈표 3-4〉 수입보장보험(RP) 운영실적

단위: 천 건, 백만 달러, %

	한 1· 전 전, 백년 달니, 70					
연도	가입건수	가입금액	보험료	국가보조금	지급보험금	손해율
2011	751	78,271	9,287	5,806	8,303	0.89
	(65)	(69)	(78)	(78)	(76)	(0.91)
2012	793	82,278	8,615	5,419	14,421	1.67
	(68)	(70)	(77)	(78)	(83)	(1.57)
2013	888	90,672	9,450	5,840	10,210	1.08
	(73)	(73)	(80)	(80)	(84)	(1.02)
2014	902	78,946	7,875	4,858	7,372	0.94
	(75)	(72)	(78)	(78)	(81)	(0.91)
2015	904	71,646	7,629	4,770	4,360	0.57
	(75)	(70)	(78)	(78)	(69)	(0.65)
2016	884	67,825	7,077	4,481	2,245	0.32
	(76)	(67)	(76)	(76)	(57)	(0.42)
2017	859	73,614	7,654	4,867	3,448	0.45
	(76)	(69)	(76)	(77)	(63)	(0.54)
2018	850	76,493	7,335	4,694	4,660	0.64
	(77)	(69)	(74)	(75)	(64)	(0.74)
2019	845	75,902	7,564	4,826	8,044	1.06
	(76)	(69)	(75)	(76)	(76)	(1.05)
2020	838	76,349	7,219	4,620	5,512	0.76
	(75)	(67)	(72)	(73)	(63)	(0.86)
2021	849	94,676	9,940	6,385	5,955	0.60
	(73)	(69)	(72)	(74)	(63)	(0.69)
2022	848	122,458	13,198	8,541	7,865	0.60
	(71)	(71)	(72)	(73)	(69)	(0.62)
7 1) -10	N] ラ] よ/ 1	. \	el 011 - 21 - 21 - 21 - 21 - 21 - 21 - 21	키는 이이 사리	1 4-11-11	ə) ə ə) o) ə) A

주 1) 가입건수(policies earn premium)단위는 천 건이며, 괄호 안의 수치는 연도별 작물보험 총 가입건수 중 RP의 가입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임.

# □ RP와 PLC/ARC 간의 관계

○ 위험관리청에서 운영하는 RP 등의 작물보험과 농가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보 상정책인 PLC/ARC의 가입 및 등록 여부는 서로 독립적임.

<sup>2)</sup> 가입금액(liabilities), 보험료(premium), 국가보조금(subsidy)과 지급보험금(indemnity)의 단위는 모두 백만 달러이며, 괄호 안의 수치는 연도별 작물보험 총 가입금액, 보험료, 국가보조금, 지급보험금 에서 RP가 차지하는 비율임.

<sup>3)</sup> 손해율은 지급보험금을 보험료로 나눈 값이며, 괄호 안의 수치는 작물보험 전체에 대한 손해율임.

자료: 미국 농림부 위험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rma.usda.gov/SummaryOfBusiness). Summary of Business. 검색일: 2022. 12. 1.

- O 다만 농가의 경미한 수입 손실(shallow loss)을 보전하는 ARC의 경우, 보험 상품으로서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추가보상옵션(Supplemental Coverage Option: SCO)이나 면화소득보호계획(Stacked Income Protection Plan: STAX)과의 중복구매는 제한될 수 있음.
  - 2014년 농업법을 통해 PLC/ARC와 함께 작물보험인 SCO와 STAX가 신 설되었음.
  - SCO는 작물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특약의 일종임.
  - STAX는 면화에 국한된 수입보장보험으로 PLC/ARC의 손실 보상 대상 품 목에서 면화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신설되었음.39)
  - STAX는 SCO와 연계하여 보상받을 수 없음.
- 따라서 농가는 RP 등의 작물보험에 가입하여 중대한 손실(손실의 50~75%. 일부 지역에 한해서 손실의 50~85%)을 보상받고. 추가적으로 보상정책인 ARC에 등록하거나 보험에 대한 특약 상품인 SCO나 STAX에 가입40)함으로 써 자기부담금 내에서 발생한 경미한 손실분을 보상받을 수 있음.
  - 다만, PLC/ARC를 등록한 농가의 기본 면적에 면화가 없어야 STAX를 구 매할 수 있음.

<sup>39) 2010</sup>년 WTO 분쟁해결기구가 미국 정부가 면화 생산 농가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WTO 농업보조. 금 규정상 허용되는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함에 따라 2014년 농업법에서 신설된 PLC/ARC 프로 그램의 대상 품목에서 면화가 제외되었음.

<sup>40) 2022</sup>년 기준으로 SCO는 수입보장형 상품인 RP, RP-HPE와 수량보장형 상품인 YP와 연계하여 운영 중이며, STAX는 RP와 RP-HPE와만 연계하여 판매 중임.

〈표 3-5〉 RP, PLC/ARC 및 SCO/STAX와의 관계

RP 가입			보상정책		SCO 구매	STAX 구매
가입		드리 기느	PLC	<b>→</b>	구매 가능	구매 가능
711	_	→ 등록 가능	ARC	<b>→</b>	구매 불가능	구매 가능
ПППП	_	드리 기느	PLC	<b>→</b>	구매 불가능	구매 가능
미기업	미가입	등록 가능	ARC	<b>→</b>	구매 불가능	구매 가능

주: 기본 면적에 면화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STAX를 구매할 수 있음.

## 1.4. 농가수입보장보험(Whole Farm Revenue Protection: WFRP)41)

### □ 보장 대상

- O WFRP는 농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농산물과 관련된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기간 동안 생산된 상품과 재판매를 위해 구매한 상품으로부터 농가가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입의 손실에 대해 보장함.
  - 2014년 농업법(Farm Bill)에서 Adjusted Gross Revenue(AGR)와 AGR-Lite의 후속 프로그램으로서 WFRP 도입을 인가함에 따라 WFRP는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음.
  - WFRP는 다작목 재배 농가의 수입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면에서 타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음.

### □ 참여요건

O WFRP의 보험가입 단위는 농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당 보험

자료: 미국 농림부 농가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fsa.usda.gov/). 검색일: 2022. 11. 21.; 미국 농림부 위험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rma.usda.gov/). 검색일: 2022. 11. 21.; 임정빈(2014a); 임 정빈(2014b).

<sup>41)</sup> 김미복 외(2022)와 미국 농림부 위험관리청(2022)을 참고하여 작성함.

- 에 가입할 수 있음.
- 정부 지원의 결격 사유가 없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특용작물 또는 유기농 상품 생산 농가, 지역 시장 등에 납품하거나 직거래 하는 농가
- 보장 대상인 수입금액과 보장범위의 곱으로 결정되는 보장수입(insured revenue)이 1,700만 달러 이하인 농가
- 5년 연속으로 세금을 납부하여 Schedule F 또는 기타 납세 기록이 있어야 함.
- 신규농의 경우, 3년 연속 세금 신고 기록이 있어야 하며 직전 연도에 신규 농의 자격을 얻은 경우 4년 연속 세금 신고 기록이 있어야 함.
- 전체 수입 중 재판매로 얻는 수익의 비율이 50% 이하여야 함.
- 물리적으로 규모를 확장하는 경우(신규 품종 도입, 신규 재배 방식 도입, 면적 증가, 추가 설비 도입 등), 이에 따른 수입증가를 보험에 반영하려면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O 다각화 요건

- 경영보고서를 바탕으로 계산된 인정 품목수(commodity count)가 1개인 농장은 WFRP에 가입할 수 없음.
- 실제 생산된 품목수가 아닌 인정 품목수를 계산하는 것은 농장 경영에서 주 요 품목을 기준으로 다각화되었는지를 판단하고자 함임.
- 인정 품목수는 각 품목별 기대 수입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됨.
- 품목별 수입 기준 =  $(1 \div 실제 품목수) \times 0.333 \times 총$  기대수입
- 기대수입이 품목별 수입 기준 이상인 품목은 인정 품목수에 포함됨.

- 기대수입이 수입 기준 미만인 품목은 기대수입을 합산하여 인정 수입기준 으로 나는 값을 인정 품목수로 산출함.
- 감자를 재배하거나 과거 수입보장보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품목을 재배하여 다각화 요건을 만족시켜야 함.
- 인정 품목수는 경영체의 보장수준과 보험료 보조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근 거로 사용됨.

### 〈인정 품목수 계산 예시〉

### □ 가정

- ▶ 품목을 총 5개 생산하는 농업인
- ▶ 해당 경영체의 품목별 기대수입

품목	품목 1	품목 2	품목 3	품목 4	품목 5	합계
기대수입	\$30,000	\$2,000	\$37,000	\$4,300	\$7,000	\$80,300

## □ 인정 품목수 계산

- ▶ 인정 수입기준: (1÷5)×0.333×80.300=5.348
- ▶ 해당 경영체 생산 품목 중 품목 1. 품목 3. 품목 5는 인정 수입기준 초과
- ⇒ 인정 품목수 3
- ▶ 인정 수입기준을 초과하지 못한 품목 2와 품목 4의 기대수입 합계는 \$6,300이며 이를 \$5,348로 나누면 1.18
- ⇒ 인정 품목수 1 추가
- ▶ 최종 인정 품목수는 4이므로 해당 경영체는 75% 이상의 보장수준에도 WFRP 가입 가능

### □ 보장범위<sup>42</sup>)

- O WFRP는 보험 가입 농가가 재배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수입<sup>43)</sup> 손실이 보장 대상임.
  - WFRP의 보장 대상이 되는 수입은 가축 및 작물의 구입 후 재판매 수익, 가 입자가 생산한 가축, 곡물 등 작물 판매 수입, 협동 판매 수입, 기타 수입을 포괄함.
  - 해당 수입은 소득신고자료에 명시되어야 함.
- 그러나 생산 후에 발생한 수입, 헷징이나 투기로 얻은 수익, 계열화된 가축 생 산 체계하에서 사육계약을 맺고 가축을 생산했을 때의 수입, 근로소득, 정부 지원금, 보장 대상이 아닌 품목과 관계된 수입, 여타 작물재해 보험금 등은 보 장 대상이 되는 수입에서 제외됨.
  - 목재, 산림, 임산물, 동물상품(쇼·스포츠 등) 관련 수입도 제외함(판매 여부 불문).
- O 농작물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전체 손실 농작물의 20% 또는 20에이커의 농지에 재식재하는 경우, 손실된 예상수입액과 보장수준을 곱한 값의 20%까 지 재식재 비용을 지급함.

<sup>42)</sup> 연방작물보험공사. (2022). Whole-Farm Revenue Protection Pilot Policy.

<sup>43)</sup> 해당 경영체의 수입은 발생주의 회계 원리에 따라 계상됨.

### □ 보장규모와 계산 방법44)

- O 보험금은 보장 수입(insured revenue)과 보험연도 수입(revenue to count: RTC)의 차이임.
  - 보장 수입(insured revenue)은 보장수준과 농가승인수입(Farm's approved revenue)의 곱으로 결정됨.
  - 보험금 = [승인수입 × 보장수준] 보험연도 수입
  - 보험금은 1.7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 O 보장수준은 승인수입의 50~85% 범위 내에서 5% 단위로 선택할 수 있음.
  - 보장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농가의 최소 상품 수는 달라지는데 보장수준이 높을수록 보장 대상이 되는 최소 상품 수는 증가함.

⟨표 3-6⟩ 농가수입보장보험 보장수준별 상품 수 및 승인수입

보장수준(%)	최소 상품 수(개)	최대 승인수입(달러)
50	1	34,000,000
55	1	30,909,091
60	1	28,333,333
65	1	26,153,846
70	1	24,285,714
75	1	22,666,667
80	3	21,250,000
85	3	20,000,000

주: 최대 농가승인수입은 최대 보장수입인 1,700만 달러를 각각의 보장수준으로 나눈 값임. 자료: 연방작물보험공사(2022).

<sup>&</sup>lt;sup>44)</sup> 연방작물보험공사. (2022). Whole-Farm Revenue Protection Pilot Policy.

- O 승인수입은 농장의 과거 평균 수입 또는 총 기대수입 중 작은 것으로 결정됨.
  - 과거 평균 수입 계산은 크게 과거 수입의 단순 평균, 지수화된 수입 평균, 전년도 승인 수입의 90%, 확대 경영 평균 수입의 네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 지며 그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 과거 평균 수입으로 채택됨.
  - 총 기대수입은 농장운영계획서에 명시된 농작물과 WFRP 보험약관에 따라 결정되며, 보험료 및 인정수입을 결정하는 데 사용됨.
  - 농가승인수입은 보험계약자의 운영보고서, 전체 농장 이력보고서, 농장의 성장과 관련한 정보를 기준으로 민영보험사에서 결정함.
  - 농가승인수입은 1,700만 달러를 각 보장수준으로 나눈 금액을 넘지 못함.
- 보험연도 수입(RTC)은 보험연도 판매수입에서 재고증감액과 미수금, 선수금 등을 반영하여 조정된 금액임.
  - 보험연도 수입 = 당해 판매수입 + 당해 미수확 또는 미판매 상품 가치 이 전 연도 재고 판매금액

### □ 제출서류

- O WFRP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5개년 납세자료, 연도별 기대 수입 및 비용 계산서
  - 기대 가치 및 수량의 인증 기록
  - 당해 연도의 농장운영보고서: 계획작목, 생산량, 기대수입
  - 수용 가능한 직판 기록
  - 구입한 개별 보험계약의 보장 요약서와 평균 수량
  - 농작물재해보험이 없을 경우 작목의 기대수량을 결정하는 데 이용되는 입 증 가능한 가장 최근의 4개년 면적 및 생산량 보고서

- 기초 재고자산, 매출채권(외상매출금계정), 매입채무(외상매입금계정), 선급비용 보고서
- 판매용 가축 및 종묘의 재고자산/회계 기록(해당되는 경우)

### □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

- 농가는 지정된 민영보험사로부터 보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연방작물보 험공사로부터 보험료 보조를 받을 수 있음.
  - 2개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는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 농가 수입의 리스크 관리에 더 유리하므로, 다음의 최소 다각화 요건을 만족한다는 전 제하에 보험료 보조를 받음〈표 3-7〉.
  - 한 작목만 재배하는 농가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보험료 지원금을 받게 됨.

#### ⟨표 3-7⟩ 보장수준 및 다각화 수준에 따른 보험료 보조금 비율

단위: %

다각화 수준					보장수	준(%)			
나각의	4 <del>TT</del>	50	55	60	65	70	75	80	85
기본 단위	1개 품목	67	64	64	59	59	55	N/A	N/A
<u></u>	2개	80	80	80	80	80	80	N/A	N/A
농가 단위	3개 이상	80	80	80	80	80	80	71	56

자료: 서상택 외(2022).

# □ 운영실적45)

O WFRP는 2015년에 도입된 이후 가입이 부진함.

<sup>45)</sup> 전국 지속가능농업연합(National Sustainable Agriculture Coalition) 홈페이지(https://sustainableagriculture.net/blog/whole-farm-revenue-protection-analysis-a-few-bad-apples/). 검색일: 2022. 11. 17. 참조.

- 2017년 2,833건으로 최고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2022년에는 1,810건으로 하락한 수준임.
- O WFRP의 가입이 부진한 이유는 복잡한 서류 작성 절차, 보험판매자의 무관 심, 보험료 지원 폭의 한계, 까다로운 보험금 수령 조건 등으로 파악됨.

**〈표 3-8〉**미국 WFRP 판매량

연도	총 보험증권 판매량(개)
2015	1,128
2016	2,268
2017	2,833
2018	2,526
2019	2,218
2020	2,066
2021	1,938
2022	1,810

자료: 서상택 외(2022).

# □ 타 보험과의 관계

- O WFRP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개별 작목에 대해 연방작물보험에 가입 가능함.
  - 이때, 주보험은 개별 작물보험이며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작물보험의 보험금은 WFRP에서 수입으로 간주됨.
  - 작물보험의 보장수준은 WFRP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함.
- O CAT<sup>46)</sup>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WFRP에 가입 불가
- 시장촉진보상금, 주정부의 재해보상금 등 기타 정부 프로그램 보상금은 WFRP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음.

<sup>46)</sup> CAT(Catastrophic Risk Protection)는 미국의 기초농업재해보험임.

O WFRP 가입자는 비보험작물피해보전제도(Non-insured Crop Disaster Assistance: NAP)<sup>47)</sup>에 가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생산자는 NAP 보상금과 WFRP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음.

# 1.5. 마진보호보험(Margin Protection: MP)48)

### □ 보장 대상

- 마진보호보험(이하 MP)은 옥수수, 대두, 쌀, 밀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마진 (즉, 영업이익 = 수입 - 투입비용) 감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 MP는 경영비 증가로 인한 마진을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확 량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분을 보장하는 YP나 수확량 감소 혹은 가격 하락 으로 인한 수입 감소분을 보장하는 RP에 비해서 위험 보장 범위가 넓음.
  - 다만, MP는 카운티의 평균 수확량과 평균 투입 비용을 기반으로 보험이 운영되기 때문에 개별 농가 차원에서는 마진 감소가 발생했어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 반대 상황도 일어날 수 있음.
- O MP는 옥수수, 대두, 쌀, 밀 4가지 작물에 대해서 일부 지역(MP를 도입하고 있는 일부 주 중에서도 제한된 카운티)에서만 운영되고 있음.

<sup>47)</sup> 자연재해로 인해 작물보험의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피해 를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 정책임. 1996년 농업법(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of 1996)에 의해 항구적인 제도로 승인되었음(임정빈, 2014b).

<sup>48)</sup> Plastina, A. & S. D. Johnson(2022); 미국 농림부 위험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rma.us da.gov/en/Fact-Sheets/National-Fact-Sheets/Margin-Protection-for-Federal-Crop-Insurance). 검색일: 2023. 1. 6. 참조.

〈표 3-9〉 마진보호보험(MP) 가입 대상 품목 및 운영 지역

옥수수 및 대두(12개 지역)	쌀(6개 지역)	밀(4개 지역)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Michigan, Minnesota, Missouri, Nebraska, North Dakota, Ohio, South Dakota, Wisconsin	Arkansas, California, Louisiana, Mississippi, Missouri, Texas	Minnesota, Montana, North Dakota, South Dakota

자료: 미국 농림부 위험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rma.usda.gov/en/Fact-Sheets/National-Fact -Sheets/Margin-Protection-for-Federal-Crop-Insurance). Risk Management Agency Fact Sheet. 검색일: 2023. 1. 6.

## □ 보상기준

- O 수확기 실제 마진보다 보상 발동 기준 마진(trigger margin)이 작으면 MP 보험금이 지급됨〈부록 1〉.
  - 보상 발동 기준 마진은 예상 마진에서 자기부담금(보상수준에 따라 달라 짐)을 제한 금액임.
  - 예상 마진은 예상 수입(예상 지역 수확량 × 예상 가격)에서 예상 투입 비용 을 제한 금액임.
  - 수확기 실제 마진은 실제 지역 수확량에 해당 작물의 수확기 가격을 곱한 수확기 실제 수입에서 수확기에 확정된 투입비용을 제함으로써 구해짐.
- 수확기 가격옵션 마진보호보험(Margin Protection with the Harvest Price Option: MP-HPO)의 경우, 보상기준은 동일하나 기본 MP보다 보상 발동 기준 마진이 높아져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음.
  - 수확기 가격옵션 마진보호보험(이하 MP-HPO)은 수확기 가격이 예상 가 격을 상회할 경우, 예상 수입을 도출할 때 수확기 가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는 보험임.
  - 기본 MP보다 보험가입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옵션을 설계했기 때문에

2022년 기준, MP의 가입금액은 3억 3,800만 달러에 그쳤으나 MP-HPO는 그보다 약 8배가량이 많은 28억 9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마진(영업 이익) 도출 시, 예상 지역 수확량 및 수확기 실제 수확량은 위험관 리청에 의해 확정된 수확량을 사용함.
  - 각 카운티는 지역에 특정화된, 예상할 수 있는 지역 수확량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지역 수확량은 해당 지역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최종적으로 수확 된 수확량의 평균으로, 위험관리청에 의해 계산된 값임.
- 예상 가격 및 수확기 가격 모두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특정 선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됨.
- 투입 비용 산정 시, 파종에서 수확까지 가격 변동이 있는 투입물과 가격 변동 이 없는 투입물로 구분함.
  - 가격 변동이 없는 투입요소는 종자, 기계, 연료를 제외한 운영에 필요한 투입요소 등을 포함함.
  - 가격 변동이 있는 투입물은 작물에 따라 〈표 3-10〉과 같음.

#### ⟨표 3-10⟩ 작물별 가격 변동이 인정되는 투입요소

작물	가격 변동이 인정되는 투입요소
옥수수·쌀	경유, 요소, 인산이암모늄, 칼륨, 이자
대두	경유, 인산이암모늄, 칼륨, 이자
밀	경우, 요소, 인산이수소암모늄, 칼륨, 이자

주: 요소, 인산이암모늄, 인산이수소암모늄, 칼륨은 모두 비료의 일종임.

자료: 미국 농림부 위험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rma.usda.gov/en/Fact-Sheets/National-Fact-Sheets/Margin-Protection-for-Federal-Crop-Insurance). Risk Management Agency Fact Sheet. 검색일: 2023. 1. 6.

### □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

- O RP 등의 다른 작물보험과 동일하게 민영보험사로부터 보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연방작물보험공사는 여타의 지역 기반 보험과 동일하게 MP 보험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보조함.49)
  - 보험료 보조는 보장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다만, 신규진입농의 경우 보장 수준에 관계없이 추가로 10%의 보조를 더받을 수 있음.

⟨표 3-11⟩ 보장 수준에 따른 보험료 보조율

보장 수준	보험료 보조율
70%	59%
75~80%	55%
85%	49%
90~95%	44%

자료: Plastina, A. & S. D. Johnson(2022).

# □ 타 보험과의 관계

- O MP는 MP 자체만 가입하거나 YP 혹은 RP와 같은 기본 보험증권(base policy) 과 함께 구입할 수도 있음.
- O 다만, MP와 YP 혹은 RP를 함께 구입할 때는 반드시 같은 AIP(Approved Insurance Provider)를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MP에 대한 보험료 할인(MP premium credit)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기본 보험과 MP를 함께 구입하면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sup>49)</sup> 연방작물보험공사는 법에 의해 보험료 보조금, 재보험비용 등 보험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영구적으로 배정받고, 회계연도 말에는 사용하지 않은 잔액을 재무부(Treasury)에 반환함(미국 농림부, 2022, p.57).

감소 시 기본 보험 보험금이 MP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일정 부분 상쇄하기 때문에 MP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음.50)

## 1.6. 미국의 경영안정제도 요약

○ 상기에서 살펴본 미국의 경영안정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3-12⟩ 미국의 경영안정제도 요약

	보상정책			작물보험		
	PLC	ARC-CO	ARC-IC	RP	WFRP	MP
보장 대상	가격	지역수입	개별 농장 수입	수입	개별 농가 수입	마진 (영업이익)
가입 단위	품목	품목	농장	농지/품목/ 농장	농가	농지/품목/ 농장 <sup>1)</sup>
AEF 요건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U.S. 시민권자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AGI 한도	90만 달러 / 납세 단위	90만 달러 / 납세 단위	90만 달러 / 납세 단위	미적용	미적용 <sup>2)</sup>	미적용
- 농지 등 보전의무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지급한도				한 지급한도는 ( 라 최대 보장 금		

주 1) MP는 RP나 YP와 함께 구입할 수 있으므로, 가입 단위는 RP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

<sup>2)</sup> AGI 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보장수입(insured revenue) 1,700만 달러 이하여야 함.

자료: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0).

<sup>50)</sup> YP 혹은 RP와 함께 MP를 가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보장옵션(Supplemental Coverage Option: SCO)이나 강화보장옵션(Enhanced Coverage Option: ECO)의 구입이 제한됨. YP 혹은 RP와 함께 MP를 가입하면 중대 손실에 대해서는 YP나 RP에 의해서 보장되며, 그 이외의 미세손실분에 대해서는 MP가 추가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Plastina, A. & S. D. Johnson, 2022).

# 2. 일본 농업경영수입보험51)

## □ 도입배경 및 경과

- 일본 정부는 농업경영안전망으로서 다음과 같은 농업공제의 한계를 인식하 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52)
  - 농업공제는 자연재해로 인한 수량 감소에는 대응할 수 있으나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감소에는 대응할 수 없음.
  - 농업공제의 대상 품목은 수량 확인이 가능한 품목으로 한정되고 공제조합 의 취급 품목 범위에 따라 보장 대상에 한계가 있음.
  - 농업공제의 가입 단위는 품목이므로 농가 단위의 경영안정에는 한계가 있음.
  - 농업공제는 필지별로 손해평가를 실시하는데 평가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기존의 평가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움.
- O 일본 정부는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농업경영자를 위한 소득안전망으로서 농 가 단위의 수입안정정책을 추진함.
  - 농림수산성은 2014년에 5,000개 농업경영체의 7년간 수입자료를 수집하 였으며 2015년의 농업경영실적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1.000 개(개인 750개, 법인 250개)의 경영체를 대상으로 도상연습을 실시함.
  - 2015년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 수입보험제도를 검토할 것임을 명시 하였으며 2016년 '농업경쟁력 강화프로그램'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 시함.

<sup>51)</sup> 최경환(2019); 김미복 외(2019)를 참고하여 작성함.

<sup>52)</sup> 農林水産省. (2018. 6.). 收入保險制度の導入と農業共濟制度の見直し.

- 농업재해보상법을 농업보험법으로 2016년에 개정하여 수입보험을 2019 년 1월부터 시작한.
- 사업대상은 청색신고<sup>53)</sup>를 5년간 계속하고 있는 농업자(개인·법인)이며 수입 보험 신규 가입자는 청색신고(간이방식을 포함) 자료가 1년분만 있더라도 가 입가능함.

### □ 보장 대상

- 농업경영수입보험은 자연재해에 의한 수량 감소뿐만 아니라 수급변동에 의한 가격 하락 등 농업인의 자구적 노력으로는 피할 수 없는 수입 감소를 보상 대상으로 함.54)
- 이 외에도 기계의 고장이나 질병, 부상에 의한 수입 감소, 농산물 수확 후 보관 중에 발생한 요인(침수, 곰팡이 발생 등)에 의한 수입 감소, 가격 하락으로 출하 시 적자가 예상되어 수확을 중지함으로써 수입이 감소한 경우, 수출 시환율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 및 거래처가 도산하고 타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감소55)도 보상 대상이 됨.

# □ 가입방법 및 제출서류

O 가입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이루어짐.

<sup>53)</sup> 일본의 소득세 신고방법은 청색신고와 백색신고로 나뉨. 청색신고는 원칙상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장부를 기입해야 함(재무성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간이방식도 인정되고 있음). 백색신고는 흰색신고 서를 이용하여 국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말하며, 청색신고보다 간단하게 장부를 작성함. 청색신고자와 백색신고자 모두 소득세 신고 관련 문서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함(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2020).

<sup>&</sup>lt;sup>54)</sup> 農林水産省. (2018. 10.). 收入保險に關するQ&A.

<sup>55)</sup> 農林水産省. (2018. 8.). 收入保險がはじまります!

- 보험가입은 보험기간 시작 직전 달까지 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개인 1~12 월, 법인 사업연도, 보험금 지급은 차년도 확정신고(3~6월) 후에 이루어짐.
- O 제출서류는 가입신청서, 과거의 수입금액신고서, 당해 연도 경영계획서, 보 험계약에 관한 서약서 등임.

### □ 대상수입 및 수입 파악 방법

- O 대상수입은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수입 전체이며 사업소비금액, 재고 증감액을 합하여 계산함.56
  -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한 간단한 가공품 평가액과 보조금, 잡수입, 자가소 비분은 농산물 판매금액에서 제외함.
- O 수입 파악은 농업인이 농산물의 판매금액 등을 기재한 가입신청서, 보조 서류 (농산물의 종류별로 청색신고서의 판매금액을 구분하기 위한 서류), 청색신 고서 등의 세무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업자(전국연합회)가 제출서류의 내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 보상방식

- 보험방식과 적립방식을 조합하여 보장하며 적립방식의 가입은 가입자의 자 율적인 선택에 따라 이루어짐.
- O 보험기간의 수입이 기준수입의 90%(보험방식과 적립방식을 조합한 보상한 도액)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지급률과 보상한도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

<sup>56)</sup> 농업생산 비용의 개인차를 고려하고 고정자산의 가치 반영 등의 측면에서 비용 계산이 어려우므로. 소득이 아닌 수입을 대상으로 함.

### 급함.

- (기준수입) 과거 5년간의 평균 수입을 기본으로 하되 보험기간의 영농계획을 고려하여 경영면적을 확대하거나 과거 수입 상승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 경우 기준수입을 상향 조정할 수 있음.
- (보상한도액) 기준수입의 50~80% 범위(상한 90%)에서 가입자가 선택 가능하며 청색신고 실적 기간에 따라 보상한도액에 차등을 두고 있음.57)
- (적립방식의 보상 폭) 기준수입의 5% 또는 10%
- (지급률) 보험방식과 적립방식에 대해 각각 별도로 지급률을 정하며, 보험과 적립을 통해 50%, 60%, 70%, 80%, 90% 중 택일(적립방식의 지급률은 10%, 20%, 30%, 40% 중에서도 선택 가능).58)
- (보상 하한 설정) 2018년부터 보상 하한을 70~50% 중에서 설정하여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보상의 하한을 선택하면 실제 수입이 하한 미만으로 내려가 경우 그 하락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표 3-13⟩ 청색신고 실적 기간별 보험방식의 보상한도액

가입신청 시의 청색신고 실적	보험방식의 보상한도액 상한
5년	기준수입의 80%, 70%, 60%, 50%
4년	기준수입의 78%, 70%, 60%, 50%
- 3년	기준수입의 75%, 70%, 60%, 50%
2년	기준수입의 70%, 6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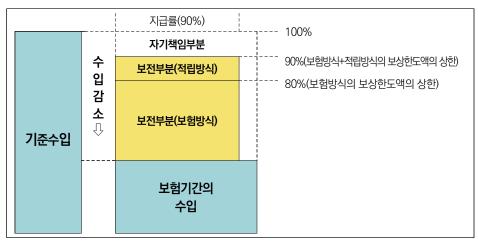
주: 가입신청연도의 청색신고 실적을 포함하여 연수를 계산함.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s://www.maff.go.jp/j/keiei/nogyohoken/syunyuhoken/syousai. html). 검색일: 2022. 11. 15.

<sup>57)</sup> 보상한도액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보상이 지나치게 자주 이루어지게 되어 행정비용과 보험료 인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보상한도액을 설정함.

<sup>58)</sup> 농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함.

#### ⟨그림 3-1⟩ 수입보험제도의 보전방식



주: 5년 이상의 청색신고실적이 있고 보험방식의 보상한도액 80%, 적립방식 보상한도액 10%(총 보상한도 90%) 선택 가정 시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s://www.maff.go.jp/j/keiei/nogyohoken/syunyuhoken/syousai. html). 검색일: 2022. 11. 15.

### □ 보전금액 계산

- O 기주수입이 1.000만 엔인 가입자가 지급률 90%, 보험방식의 보상한도액을 80%, 적립방식의 보상한도액을 10%로 정한 경우, 가입자가 적립방식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특약보전금은 90만 엔(=1.000만 엔×90%×10%)으로 고정됨.
- O 그러나 보험금은 수입 감소 폭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짐.
- O 당해 연도 수입이 기준수입의 80%로 하락하였다면 보험방식에 의한 보장은 발동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이 0원임.
  - 보상은 적립방식부터 발동되므로 보험 기준수입 대비 당해 연도 소득이 20% 감소한 경우, 보험가입자는 특약보전금만 수령함.

- 당해 연도 수입이 기준수입의 70%로 하락하였다면 보험금은 90만 엔 (=1,000만 엔×90%×(80%-70%))이 됨.
- 만약 농업인이 보상 하한을 기준수입의 50%로 정하였다면 당해 연도 수입이 기준수입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하한과 당해 연도 수입 간의 차액에 대해서는 보전하지 않음.

**〈표 3-14〉** 보전금액 계산 예시(기준수입 1,000만 엔 가정)

보상 하한	수입감소폭 (당해 연도 수입)	보전금 합계	보험방식 (보험금)	적립방식 (특약보전금)	보전금 포함 총수입 및 기준수입 대비 보전 비율
없음	20%(800만 엔)	90만 엔	0만 엔	90만 엔	890만 엔(89%)
	30%(700만 엔)	180만 엔	90만 엔	90만 엔	880만 엔(88%)
	50%(500만 엔)	360만 엔	270만 엔	90만 엔	860만 엔(86%)
	100%(0만 엔)	810만 엔	720만 엔	90만 엔	810만 엔(81%)
50% -	20%(800만 엔)	90만 엔	0만 엔	90만 엔	890만 엔(89%)
	30%(700만 엔)	180만 엔	90만 엔	90만 엔	880만 엔(88%)
	50%(500만 엔)	360만 엔	270만 엔	90만 엔	860만 엔(86%)
	100%(0만 엔)	360만 엔	270만 엔	90만 엔	360만 엔(36%)

주: 지급률은 90%, 보험방식의 보상한도는 80%, 적립방식의 보상한도는 10%로 설정하였음.

# □ 납입금액(농업인 기준)

- 보험료 = 기준수입 × 보전한도 × 지급률 × 국고보조 후 보험료율
- O 적립금 = 기준수입 × 적립폭 × 지급률 × 1/4
- 사무비(부가보험료) = 가입자 정액부담분(1년 차 4,500엔, 2년 차 이후 3,200엔) + 비례부담분(보험 및 적립액 1만엔 당 22엔)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s://www.maff.go.jp/j/keiei/nogyohoken/syunyuhoken/syousai. html). 검색일: 2022. 11. 15.

# □ 보험료율 및 보험료 지원

- O 보험료율은 위험 단계별로 차등화되며 모든 경영체에 공통으로 적용됨.
- O 보험료 표준율을 중심으로 상하 10단계로 설정되며 가입 1차 연도에는 표준 율이 적용되지만 보험금 수령 여부에 따라서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함 (자동차 보험과 유사).

**〈표 3-15〉** 농업수입경영보험 보험료율(2023년 1월 적용)

이를드레	기본 보험료율	하한 설정				
위험단계		기준수입의 70%	기준수입의 60%	기준수입의 50%		
10	2.514	1.391	1.984	2.266		
9	1.699	0.940	0.341	1.531		
8	1.641	0.908	1.295	1.479		
7	1.583	0.876	1.250	1.427		
6	1.526	0.844	1.204	1.375		
5	1.468	0.812	1.158	1.323		
4	1.410	0.780	1.113	1.271		
3	1.352	0.748	1.067	1.219		
2	1.294	0.716	1.021	1.166		
1	1.237	0.684	0.976	1.114		
0	1.179	0.652	0.930	1.062		
-1	1.121	0.620	0.885	1.010		
-2	1.063	0.588	0.839	0.958		
-3	1.005	0.556	0.793	0.906		
-4	0.947	0.524	0.748	0.854		
-5	0.890	0.492	0.702	0.802		
-6	0.832	0.460	0.657	0.750		
-7	0.774	0.428	0.611	0.698		
-8	0.716	0.396	0.565	0.645		
-9	0.658	0.364	0.520	0.593		
-10	0.590	0.326	0.465	0.531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s://www.maff.go.jp/j/keiei/nogyohoken/syunyuhoken/syousai. html). 검색일: 2022. 1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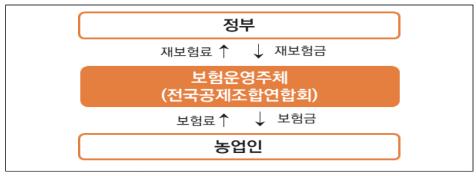
#### O 보험료 지원

- 보험료 50%에 대해 국고보조
- 적립금의 75%에 대해 국고보조
- 부가보험료의 50%에 대해 국고보조

### □ 운영방식

- 농업공제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가 보험을 운영하며 전국연합회는 농업공제조합, 시정촌 등에게 가입신청 접수,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 정부는 불가항력적인 대손실이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보험을 실시함.

### 〈그림 3-2〉 일본 농업경영수입보험제도의 운영체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s://www.maff.go.jp/j/keiei/nogyohoken/syunyuhoken/syousai.html). 검색일: 2022. 11. 15.

# □ 가입현황

O 수입보험 가입 농가는 2022년 기준 78,420개 경영체로 청색신고자 수의 22.2%임.

#### ⟨표 3-16⟩ 농업경영수입보험 가입 경영체 현황

단위: 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9월 말)
전체	22,812	36,142	59,084	78,420
	(6.5%)	(10.2%)	(16.7%)	(22.2%)
개인	20,302	31,770	52,549	70,519
	(6.2%)	(9.7%)	(16.0%)	(21.5%)
법인	2,510	4,372	6,535	7,901
	(9.8%)	(17.1%)	(25.5%)	(30.9%)

주: 청색신고 농업경영체는 전체 35.3만 개, 개인 32.8만 개, 단체 2.6만 개이며(2020년 농림업 센서스(정규 부기와 간이 기장의 합계) 괄호 안은 청색신고자 수 대비 농업경영수입보험 가입자 비율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경영국 보험과(2022). 収入保険データ集(令和4年6月末時点)

## □ 예산 투입 현황

O 농업경영수입보험에 투입된 예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소폭 감소하여 2022년에 약 184억 엔이 투입되었으나 2023년에는 예산을 대폭 인상하였음.

### ⟨표 3-17⟩ 일본 농업경영수입보험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에

				611. 16 6
연도	보험료	운영비	기타	총계
2019	18,986	1,623		20,609
2020	19,268	1,246	590	21,105
2021	15,830	1,472	393	17,695
2022	15,887	1,855	676	18,418
2023	27,838	2,805	_	30,643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s://www.maff.go.jp/j/keiei/nogyohoken/yosan.html). 농업보험 관계 예산. 검색일: 2023. 2. 14.

# □ 유사제도와의 관계

- 일본에서는 수입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제도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
- 농업공제를 비롯해 야채가격안정제도.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 및 육용우비육 경영안정특별대책사업 등이 이에 해당함.

- O 농업인은 농업경영수입보험과 유사사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단, 한시적으로 2년간 야채가격 안정제도 가입자가 수입 보험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야채가격 안정제도의 보급금을 수령한 경우, 수입보험의 보험금은 해당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됨.

⟨표 3-18⟩ 농업경영수입보험 유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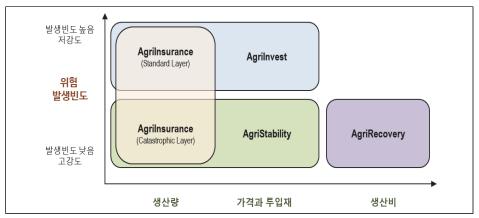
	제도명	대상 품목	대상자	보전내용
	농작물공제	논벼, 맥, 밭벼		
농 업	밭작물공제	고구마, 콩, 팥 등 13종류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자	수량(收量) 감소 보전
공 제	과수공제	감귤, 사과, 포도 등 16종류		
	가축공제	소, 말, 돼지	대상 가축의 생산·판매자	수량 감소 보전
	입감소영향완화  책(나라시대책)	쌀, 麥, 콩, 사탕수수, 전분원료용 고구마	인정농업자, 집락영농, 인정신규취농자	수입 감소 보전
0	채가격안정제도	야채	야채의 계획적인 생산·출하 종사자 (지정산지 등)	가격 하락 보전
_	글풀·다다미농가 경소득안정화대책	다다미거죽(疊表)	골풀·다다미거죽의 생산·판 매자	가격 하락 보전
	용우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사업	비육우	비육우의 생산·판매자	마진 보전
	양돈경영안정 대책사업	양돈	육돈의 생산·판매자	마진 보전
	우생산자보급금제도, 우번식경영지원사업	육용자우	육용자우의 생산·판매자	마진 보전
계란성	생산자 경영안정대책	계란	계란의 생산·판매자	가격 하락과 비용 증가 등을 보전
•	공원료유생산자 경영안정대책	가공원료유	가공원료유 생산·판매자	가격 하락 보전

자료: 최경환(2019).

# 3. 캐나다

- 캐나다 정부는 농가경영위험관리를 위하여 마진 하락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CAIS 프로그램을 실시하다가 2009년 이후 CAIS를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시 행하였으며 그 외 재난지원 프로그램과 보험 상품을 묶어 경영위험관리 (Business Risk Management: BRM)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음.
  - 캐나다 경영위험관리(BRM) 프로그램의 목적은 농가에 경영위험이 발생했을 때 예측 가능하도록(predictable), 적시에(timely), 포괄적으로(comprehensively) 보상하는 것임.
- 캐나다의 프로그램은 총 5개이며 그 중 핵심 정책은 4개로 분류됨.
  - BRM 프로그램은 소득안정계정(AgriStability), 농업투자계정(AgriInvest), 농업생산보험(AgriInsurance), 농업회생제도(AgriRecovery), 선지급 제도 (Advance Payments Program)로 구성되며 그 중 선지급 제도를 제외한 네 개 프로그램이 핵심 정책에 해당됨.
- O 각 제도들은 농가의 경영위험 완화를 위한 보완재로 활용될 수 있음.
  - 소득안정계정은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규모가 큰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임
  - 농업투자계정은 발생빈도가 높은 소규모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임.
  - 농업생산보험은 자연재해에 대응한 농업보험의 비용 보조임.
  - 농업회생제도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용 을 지워하는 제도임.

#### 〈그림 3-3〉 캐나다 BRM 프로그램의 관계



자료: Antón et al.(2011):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2012);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https://agriculture.canada.ca/en/department/transparency/audits-evaluations/evaluation-agrist ability). 검색일: 2023. 1. 30.

- 농업인은 자율적으로 1개 이상에 가입할 수 있으며 대부분 복수의 제도에 가입하고 있음.
  - 소득안정계정에만 가입한 농가는 참여 농가 중 1.6%에 불과하며 소득안정 계정을 포함하여 2개의 BRM 프로그램 참여 농가는 전체의 14.9%, 3개의 프로그램 참여 농가는 44.0%, 4개 모두 참여한 농가는 39.5%에 이름 (2019 Farm Financial Survey).59)
- O 이 연구에서는 BRM 프로그램 중 수입 안정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봄.

<sup>&</sup>lt;sup>59)</sup>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https://agriculture.canada.ca/en/department/transparency/audits -evaluations/evaluation-agristability). Evaluation of AgriStability. 검색일: 2023. 1. 27.

# 3.1. 캐나다의 소득안정계정(AgriStability)

# □ 사업 목적

- 불안정한 시장 상황, 생산감소, 생산비 증가와 같은 요인으로 농업 마진(농업 수입-생산비)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 직불금을 통해 농가소득을 보장함.
- O 품목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임.

#### □ 사업대상

○ 농업인 개인, 합자회사,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

# □ 참여 조건

- 농업경영체는 캐나다에 거주하며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에 농업 소득 신고를 완료해야 함.
- 6개월 이상의 생산이력과 농업경영활동이 있어야 함.
- O 한 번의 생산주기를 완료하여야 함.
- 경영상태 또는 생산설비 변동과 같이 농업경영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마진 손실은 보호 대상이 아님(예: 농업경영체의 분리 및 축소).
- 농지 임대인(합작이 아닌 경우)과 캐나다 정부로부터 지워받는 농업연구기관 등은 프로그램에 참여가 불가능함.

#### □ 보장 대상 및 수입 파악 방법

- 소득안정계정은 농업수입과 비용의 차이인 마진을 보장 대상으로 함.
  - 인정 농업수입(allowable income): 농산물 판매금액, 농업생산보험 보험 금 등 농산물의 판매와 관련된 수입을 포함함.
  - 인정 비용(allowable expenses): 농산물 구입비, 보험료, 전기요금, 비료비, 운송료, 연료비, 살충제, 판매 수수료 등 농산물 생산 및 판매 관련 제반비용을 포함함.
- 농업 마진의 계산은 곡물, 유지류, 특용작물, 사료, 원예작물, 축산물 등 1차 생산물과 딸기잼, 육포, 밀랍으로 만든 초, 곡물 가루 등 일부 가공품을 대상 으로 함.
- 수입과 비용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파악됨.
  - 수입과 비용 계산에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방식 모두 적용할 수 있으나 현금주의 방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투입재 재고, 미수금, 농축산물 재고 등의 평가액을 반영하여 마진을 조정함.
  - 또한, 해당 경영체의 과거 영농 실적을 고려하여 마진을 조정함(예: 성장하는 추세인 경영체는 마진을 상향 조정).

#### □ 제출서류

○ 농업소득신고 자료, 소득안정계정 및 농업투자계정 정보, 영농활동 기록

#### □ 보상방식

○ 기준 마진(reference margin)에 비해 당해 연도 농업 마진의 손실이 30% 이상 감소할 경우, 손실의 7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함.

- 기준 마진은 과거 5년간 마진의 올림픽 평균임.
-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서는 기준 마진 대비 15% 이상 하락 시 손실액의 80%까지 보상함.
-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적자액의 70% 까지 보상금이 지급됨.60)
- 보험금의 최대 수령액은 300만 달러이며 최소 수령액은 250 달러임.

#### □ 중간인출제도

- 일반적으로 보상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으나 손실 발생 시점과 보상금 수령 시점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중간 인출도 허용됨.
  - 중간 인출은 총보상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이루어짐.
- 중간 인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의 추정 마진이 기준 마진의 70% 미만으로 하락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소득안정계정 가입 요건을 만족해야 함 (보험료 납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영농활동, 생산주기 완료, 소득신고).

# □ 수수료

- 농업인은 매년 기여 기준 마진의 0.315%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55달러의 관리 비용을 납부해야 함.
  - 수수료의 하한은 45달러임.

<sup>60)</sup> 단, 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함. 1) 기준 마진이 양(+)일 것, 2) 기준 마진이 음(-)인 경우 기준 마진 계산에 사용된 3개년도 마진 중 두 해의 마진이 양의 값일 것, 3) 성실하게 경영할 것, 4) 적자 발생이 가입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발생할 것.

#### □ 운영 주체

- O 매니토바, 뉴브런즈윅, 노바 스코티아, 뉴파운드랜드, 래브라도, 유칸 주에서 는 중앙정부가 소득안정계정을 운영하며 BRM 프로그램 부서와 농가소득 프로그램 부서가 업무를 분담함.
- 브리티시 콜럼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온타리오, 퀘벡, 프린스 에드워드 아 일랜드 주에서는 지방정부가 소득안정계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안정계정 의 운영비는 중앙정부가 60%, 지방정부가 40% 분담함.

#### □ 가입 및 보상금 지급 현황

○ 최근 4년간 소득안정계정 가입신청 건수는 연평균 3만 건 내외이며 신청 건수의 10% 이상에 대해서 총 1억~4.3억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음.61)

<sup>61)</sup> 보상신청 및 보상금 지급 현황은 일부 지역의 자료만 집계된 결과이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표 3-19⟩ 소득안정계정 신청 및 보상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연도	가입 건수	보상금 지급 건수	보상액
2018	38,964 <sup>1)</sup>	5,117 <sup>1)</sup>	431.6
2019	37,543 <sup>1)</sup>	6,029 <sup>3)</sup>	365.7
2020	29,249 <sup>1)</sup>	3,332 <sup>4)</sup>	292.7
2021	14,766 <sup>2)</sup>	902 <sup>5)</sup>	100.3 <sup>6)</sup>

- 주 1) 브리티시 콜럼비아, 온타리오, 유칸,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의 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제외함.
  - 2) 브리티시 콜럼비아, 서스캐처원, 앨버타, 온타리오, 유칸,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제외.
  - 3) 브리티시 콜럼비아, 뉴파운드랜드, 온타리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제외.
  - 4) 브리티시 콜럼비아, 뉴파운드랜드, 온타리오, 유칸,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제외.
  - 5) 브리티시 콜럼비아, 뉴파운드랜드, 서스캐처원, 앨버타, 온타리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제외.
  - 6) 브리티시 콜럼비아, 서스캐처원, 앨버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제외.

자료: 브리티시콜럼비아주정부 홈페이지(https://www2.gov.bc.ca/gov/content/industry/agriculture -seafood/statistics/agriculture-and-seafood-statistics-publications). FAST STATS 2020. 검색일: 2023. 2. 1.; 서스캐처원주주정부 홈페이지(https://www.scic.ca/about-us/annual-reports). Annual Reports 2020. 검색일: 2023. 2. 1.; 온타리오주정부 홈페이지(https://data.ontario.ca/ dataset/direct-government-payments-to-farmers?\_gl=1\*1uyjzpo\*\_ga\*MTYxNTA0NjY4Ni 4xNjc1MjUxMjY0\*\_ga\_HLLEK4SB6V\*MTY3NTI1MTI4NS4xLjEuMTY3NTI1MTY4OS4wLj AuMA..+). Data Catalogue 2020. 검색일: 2023. 2. 1.; 퀘벡주정부 홈페이지(https://www.fadq. qc.ca/statistiques/agri-stabilite/). AgriStability. 검색일: 2023. 2. 1.;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https://agriculture.canada.ca/en/programs/agristability/resources/service-standardstatistics#a1). AgriStability. 검색일: 2023. 2. 1.;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정부 홈페이지(https:// www.princeedwardisland.ca/en/publications). Farm Cash Receipts Annual 2020. 검색일: 2023. 2. 1.

#### □ 평가62)

- 캐나다의 소득안정계정은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수혜 대상이 대규모 농가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됨.
  - 여성농업인 등 소규모 농가의 소득변동성이 대농가에 비해 더 큼에도 불구 하고 소득안정계정의 접근성이 낮은 상황임.
  - 소득안정계정에 가입하기 위하여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등 행정절 차가 복잡하여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계정 가입에 장애요인이 됨.63)

<sup>62)</sup>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https://agriculture.canada.ca/en/department/transparency/audits -evaluations/evaluation-agristability). Evaluation of AgriStability. 검색일: 2023. 1. 27.

- 또한 경영체별로 행정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도 소득안정계정의 단점으로 지적됨.
- 한편 긴급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중간 인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중간인 출제를 활용하는 농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음(1% 미만).

# 3.2. 캐나다의 농업투자계정(Agrilnvest)

# □ 사업 목적

○ 농가의 경영안정 및 소규모 소득감소 보전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저축투자예 금 프로그램임.

# □ 사업대상

○ 캐나다에서 농업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또는 농업경영체.

# □ 참여요건

O 캐나다 국세청에 농업 손실액과 수입을 포함한 소득세를 신고한 농가 또는 농업경영체.

# □ 대상수입 및 수입 파악 방법

O 농업수입 및 손실액을 포함한 소득세 신고

<sup>63)</sup> 마진을 계산할 때 농가 내 재고를 반영해야 하므로 재고평가에 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함.

#### □ 운영방식

- O 가입자는 경영체별 인정 순매출액(Allowable Net Sales: ANS)의 100%까지 예치할 수 있음.
  - 인정 순매출액은 총농산물 매출액에서 생산비용을 차감한 금액임.
  - 인정 순매출액은 최소 25,000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100만 달러를 넘지 못함.
  - 잔액은 최근 3년 평균 인정 순매출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는 인정 순매출액의 1%를 매칭하여 계좌에 예치함.
- O 농업인이 예치한 적립금은 Fund 1. 정부의 적립금과 이자는 Fund 2로 구분함.
  - 가입자는 필요할 때 적립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 시에는 Fund 2 에서 먼저 인출하고, 그다음 Fund 1에서 인출함.
  -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제한은 없음.

# □ 운영 주체

- 농업투자계정은 BRM 프로그램 부서와 농가소득 프로그램 부서가 업무를 분 담하여 운영하고 있음(퀘벡 제외).
  - BRM 프로그램 부서는 프로그램 분석과 개발, 성과보고, 지방정부 및 농업 단체와의 소통을 담당하며 농가소득 프로그램 부서는 지방 단위에서의 농업투자계정 운영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 관련 문의 대응, BRM 프로그램 관리 등을 담당함.
- 농업투자계정의 운영비는 중앙정부가 60%, 지방정부가 40% 분담함.

## □ 운용현황

- 농업투자계정의 신청 건수는 최근 4년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대략 9만 건을 상회하고 있음〈표 3-20〉.64〉
- 농업투자계정 참여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최근 최소 가입 기준 상향 조정 (ANS 7,500달러 → 25,000달러), 정부의 매칭 비율 축소(1.5% → 1%), 참여 한도 축소(ANS 150만 달러 → 100만 달러) 등의 가입요건 강화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
- 전체 신청 건수 중에서 실제로 정부의 자금이 매칭된 것은 약 85% 정도로서 평균 81,081건의 신청에 대해 정부가 매칭하여 적립하였음.
- 농업투자계정에 적립된 총액은 2018~2021년간 평균 약 2억 5,000달러에 이름.

#### ⟨표 3-20⟩ 농업투자계정 신청 및 적립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연도	신청 건수 <sup>1)</sup>	정부 적립금 매칭 건수	적립금 잔액
2018	98,476 <sup>2)</sup>	87,164 <sup>2)</sup>	257.3
2019	96,173 <sup>2)</sup>	83,572 <sup>2)</sup>	250.3
2020	95,086 <sup>2)</sup>	81,191 <sup>2)</sup>	254.1
2021	91,250 <sup>2)</sup>	72,395 <sup>2)</sup>	229.9
평균	95,246	81,081	247.9

주 1) ANS 25,000달러 이상 농가만 포함됨.

<sup>2)</sup> 유칸 제외

자료: 퀘벡주정부 홈페이지(https://www.fadq.qc.ca/statistiques/agri-investissement/). AgriInvestment. 검색일: 2023. 2. 1.;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https://agriculture.canada.ca/en/programs/agriin vest/resources/service-standard-statistics#a1). AgriInvestment. 검색일: 2023. 2. 1.

<sup>64)</sup> 캐나다의 전체 농장(farm) 수가 2021년 기준 189,874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농장 중 약 절반 정도의 농장이 농업투자계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판단됨(캐나다 정부 홈페이지(https://www150.statcan.gc.ca/t1/tbl1/en/tv.action?pid=3210016601). Census of Agriculture historical data. 검색일: 2023. 2. 7.).

#### □ 평가<sup>65)</sup>

- 농업투자계정은 경미한 소득 손실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됨.
  - 농업투자계정은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적립금을 최대치로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연간 순 매출이 10만 달러 미만인 소규모 농가의 소득변동성은 매우 크기 때문에 소득안정제도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음.
  - 이에 소규모 농가는 연간 매출에 비해 많은 금액을 적립하고 있어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에 농업투자계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여성농업인, 장애인, 캐나다 원주민 등 소수자들의 경우 투자계정에 적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과 적립금 인출 후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 으므로 해당 제도의 효과를 완전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농업투자 계정의 단점임.

# 4. 시사점

# □ 다양한 정책 조합의 필요성

- 외국에서는 다른 특징을 가진 경영안정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며 농업인이 정책 조합을 통해 각 정책을 보완할 수 있음.
  - 손실규모, 운영방식, 보장 범위 등을 다양화함으로써 농업인이 경영체의 상황에 맞게 경영안정정책을 선택할 수 있음.

<sup>65)</sup>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https://agriculture.canada.ca/en/department/transparency/audits -evaluations/evaluation-agriinvest). Evaluation of Agrilnvest. 검색일: 2023. 1. 30.

- 미국, 일본, 캐나다에서는 대규모 손실뿐만 아니라 경미한 손실(예: 자기부담 금 내의 손실)에 대응한 정책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SCO66, STAX67), ARC는 경미한 손실에 대응하기 위한 사례로서 예를 들면, 농업인이 YP 또는 RP에 가입하고 PLC에도 가입한 경우에는 SCO도 동시에 가입하여 대규모 손실은 YP, RP, PLC 등으로 대응하는 한 편 SCO로서 경미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보험방식으로 대규모 손실에 대응하고 보험과 연계한 적립방식으로 경미한 손실에 대응함.
  - 캐나다에서는 소득안정계정으로 30% 이상의 손실에 대응하고 농업투자계 정을 통해 경미한 손실에 대응함.
- 손실 규모에 대한 보상 수준에 따라 경영안정정책의 운영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 미국과 일본에서는 농업보험을 경영위험 완화장치로서 중손실 대응정책으로 운영함.<sup>(8)</sup>
  - 경미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방식 외에 적립방식이나 직불방식으로 대응함.
- 외국의 사례는 국내에서도 가격위험, 수입 감소 위험 등 다양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과 보험방식과 비보험방식을 적절히 조합할 필요가

<sup>66)</sup> SCO는 지역을 단위로 하는 작물보험으로, 만약 농가가 수량보장형 작물보험을 가입했을 때에는 실제 생산량 감소가 지역의 생산량 정보를 이용한 기준 생산량의 14%(즉, 지역 생산량의 86% 이하)이상인 경우에 손실 보상이 발동됨.

<sup>67)</sup> STAX는 면화에 대한 국한된 수입보장보험으로서 지역단위 평균수입의 10~30%에 해당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임. PLC/ARC의 손실 보상 대상 품목에서 면화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신설됨. PLC/ARC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면화를 기본 면적에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STAX를 구매할 수 있음.

<sup>68)</sup> 캐나다에서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회사가 해장 상품의 판매에 관여하고 있음.

있다는 것을 시사함.

- 운영방식(보험방식/비보험방식), 손실 규모 보상 범위, 운영 주체, 정부지원의 규모 등 경영안정정책의 모수를 달리하였을 때의 장단점이 존재하고, 하나의 경영안정정책으로 모든 위험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각각의 모수와 관련된 선택지를 조합하여 다양한 경영안정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 행정비용 최소화

- 제도 설계 시, 가입 절차와 운영방식 등을 단순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함.
- 행정비용의 최소화는 사업의 수용성과 참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미국의 WFRP는 타 보험에 비해 매우 판매실적이 저조한데 이는 복잡한 운영방식으로 인해 보험 판매자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임.
  - 캐나다 소득안정계정의 경우, 재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회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점은 소농가의 소득안정계정 가입 유인을 낮 추고 있음.
- 운영방식의 단순화는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함.
  - 소득안정계정과 같이 개별 경영체 단위로 보상 판정과 보상금 지급이 이루 어지는 경우, 보상이 지연될 수 있음.
  - 실제로 소득안정계정 가입자가 프로그램 연도 종료 후 8개월 이내에 보상 금을 지급받는 비율은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69)

<sup>&</sup>lt;sup>69)</sup>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https://agriculture.canada.ca/en/department/transparency/audits -evaluations/evaluation-agristability). Evaluation of AgriStability. 검색일: 2023. 1. 27.

- 반면 농업투자계정은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인이 필요할 때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시에 자금조달이 가능함.
- 캐나다의 사례는 보상금 지급의 신속성과 개별 경영체 맞춤형 지원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제4장

# 경영안정제도 도입 관련 쟁점



# 경영안정제도 도입 관련 쟁점

# 1. 수입 및 소득정보 파악 가능성

# 1.1. 국세청 소득신고자료 활용

# 1.1.1. 종합소득세 신고

- 현재는 작물재배업 소득이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나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 으로 소득파악 및 신고가 이루어짐.
- 작물재배업 소득이 만약 과세 대상이라면 농업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 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종합소득의 일부가 됨(소득세법 2022: 제19조).

#### 가. 농업소득의 계산

-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 총수입(매출액)에서 소요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임(기획재정부, 2021, p.58).
- O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수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매출액,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의 환입금,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받은 보험차익,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추가액과 부채 감소액,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 등이 있음.
- O 다음의 것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음.
  -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을 위한 충당액, 이전 과세기간으로 이월된 소득금액, 수확된 농산물, 포획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임(국세청, 2016, pp.105-106).
-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포장비 및 제품 보관료, 원료매입비, 운반비 등임.
  -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가사 관련 경비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 나. 농업소득 신고

-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
  - 다만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

부에 기록할 수 있으며70) 장부를 갖추지 않은 사업자는 추계결정을 통해 소득세를 산정·납부할 수 있음.71)

〈표 4-1〉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신고유형		내용
	복식부기	자기 조정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장부	의부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가 조정 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신고	성실신	고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간편경	당부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추계	기준경	비율	기준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신고	단순경	비율	단순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비사업자	·	사업자가 아닌 경우

자료: 국세청(2015),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 O 추계방식은 일정 규모 이하의 수입을 가진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대 신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 액을 추산하는 방식임(국세청, 2016).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 정된 금액과 주요경비, 두 항목을 수입금액에서 제함.
  -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 정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하여 계상함.

<sup>70)</sup> 간편장부는 중·소규모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면서 소득금액의 계산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장부임(임소영 외, 2016, p.13).

<sup>71)</sup> 추계결정은 정부가 그 조세의 과세표준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는 자에 대해 독자적으로 징수액 을 추계·결정하는 것을 말함(소득세법 2022: 제80조).

⟨표 4-2⟩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 산출 방법

계산 유형	산식
기준경비율 적용	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주요 경비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②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 배율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시기준경비율을 1/2을 적용, 2020년 귀속배 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단순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 7664). 검색일: 2022. 1. 15.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함.
  - 매입비용에는 재화 매입비, 외주가공비 및 운반비, 사업 관련 건축물, 기계 장치 등 고정자산 임차료, 피고용인의 인건비 및 실지급 퇴직금을 포함함.
  - 적용 대상자는 매입비용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비치·보관하고 필요 시 제출 해야 함.
  - 기타 경비는 정부에서 규정한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출함.

⟨표 4-3⟩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범위 및 증명서류

구분	주요경비의 범위	증명서류의 종류
매입비용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 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 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포함)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1 신이제금계신시다 할민정구등을 무취한 담 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 에 제출하거나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

자료: 국세청(2016).

- O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 제출서류의 양과 종류가 달라짐.
- 복식부기 신고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손익을 나타내는 서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서류, 영수증 수취 증빙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함.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함.
- 간편장부 신고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외에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서 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만 제출함.
  -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 기장가산세로 부담함(단,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소규 모 사업자 등 제외).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을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출서류가 거의 없음.
  - 단순경비율 신고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외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음.
  - 기준경비율 신고자만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
  -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의 신고서와 달리 매출 혹은 경비를 직접적으로 증 빙하는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등을 직접적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지는 않음.
  - 다만, 소득세를 신고하면 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소득신고자는 장부 및 각 종 증빙 서류를 최소 5년간은 보관해야 함.72)
  - 세무감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빙자료가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됨.

<sup>72) &#</sup>x27;국세기본법'(2022. 1. 1. 시행) 제26조의 2에 따르면.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통상 5년임. 다만. 소 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면 제척기간은 7년으로 증가하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0년 으로 증가함.

#### ⟨표 4-4⟩ 신고유형별 제출서류

신고유형	제출서류
복식부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표준합계잔액시산표, 영수증수취명세서, 조정계산서, 기타 신 청서 또는 명세서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서, 기 타 신청서 또는 명세서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등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자료: 임소영 외(2016, p.18).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짐.
  - 농업인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3 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임.73)
  - 전년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의 농업인은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으나 자기선택에 의해 추계신고도 할 수 있음.
- 장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는 추계방식으로 계산됨.
  - 추계방식에 따르면, 농업인 수입금액이 6,0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고, 6,0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됨.
- 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실제소득에 근거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적자를 반 영할 수 있고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음.

<sup>73)</sup>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작물재배업(식량작물 제외)에는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에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이 13억 원이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고, 그 이하는 간편장부 의무자임. 그리고 기순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적용은 수입금액 10억 6,000만 원을 기준으로 결정됨(소득세법 시행령 2022: 제9조의 4).

- 간편장부 작성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아 소득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음.

⟨표 4-5⟩ 신고유형별 사업자 수입기준

	신고유형		수입기준
	복식부기	자기조정	3억 원 이상
장부	<u> 숙</u> 석구기	외부조정	6억 원 이상
방식	간편징	부	3억 원 미만
	성실신고	확인	15억 원 이상
추계	기준경박	비율	(기존사업자) 6,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자) 3억 원 이상
방식	단순경박	비율	6,000만 원 미만

자료: 국세청(2021, pp.11-14).

O 소득세 신고는 전자 또는 서면으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소득세를 전자 납부 또는 은행 등을 통한 방문 납부할 수 있음.

#### 다. 종합소득세 신고상 농업소득 확인

- O 농업인의 농산물 판매액은 다음의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농가의 경우, 수입은 경영체의 대표인 경영주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식의 총수입금액을 농산물 판매액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미신고 농가의 경우에는 경영체별로 수확량에 기준가격을 곱하여 산출하 는 방식으로 농산물 판매액을 파악할 수 있음.74)
- 재고액은 사업자가 제출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이용하여 파악 할 수 있음⟨그림 **4-1**⟩.

<sup>74)</sup> 기준가격은 전국 도매가격 등 기존 정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격을 준용하여 정함.

- 다만 추계신고 시에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서식에도 재고액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계신고자는 국 세청 신고자료를 근거로 한 경영안정정책에 참여할 수 없음.
- O 농업인의 생산비는 신고유형에 따라 다음의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장부 신고자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상 필요경비 합계액으로 파악함.
  - 추계신고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식에서 필요경비를 파악할 수 있음.
  - 미신고자의 생산비는 공식 서류에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전국 평균 자료를 활용하여 추계하는 방법으로 실제 비용을 대체할 수 있음.

# 〈그림 4-1〉 장부신고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서식

						(앞
		총수입금	액 및 필요경	경비명세시	너( 귀속	·)
①주소:	지				②전화번호	
3)성	명				④생년월일	
		⑤ 소 재 지				
		⑥ 업 종				
		① 주 업 종 코 드				
사업	장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과 세 기 간	부터	부터	부터	부터
		9 파 제 기 간	까지	까지	까지	까지
		⑩ 소 득 종 류	(30, 40)	(30, 40)	(30, 40)	(30, 40)
		11) 매 출 액				
장부 수입:		12 기 타				
十百日	34	③ 수입금액 합계(⑪+⑫)				
	nu.	⑭ 기초재고액				
	매 출	⑤ 당기 상품매입액				
	원	또는 제조비용(24) 16 기 말 재 고 액				
	가	① 매출원가(⑭+⑮-⑯)				
		18 기초 재고액				
		재 19 당기 매입액				
	제	료 ② 기말 재고액				
	조	의 당기 재료비				
	비용	(18+19-20) 22 노 무 비				
		33 경 비				
필		② 당기제조비용(②)+②+②	)			
		②5 급 료				
요		26 제 세 공 과 금				
		② 임 차 료				
74		28 지 급 이 자				
경		29 접 대 비				
		③ 기 부 금				
비	일 반	③ 감 가 상 각 비				
	관	፡፡② 차 량 유 지 비				
	리	③3 지 급 수 수 료				
	비드	③ 소 모 품 비				
	등	③ 복 리 후 생 비				
		③6 운 반 비				
		③ 광고선전비 ③ 정보고 통법				
		③ 여 비 교 통 비				
		③ 기 타 ④ 일반관리비등계				
		(25~39의 합계)				
	41)	필요경비 합계 (①+40)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 64). 검색일: 2023. 1. 15.

# ⟨그림 4-2⟩ 추계신고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5 주: 8 신	로사항 소지 전호	① 성 명 ③ 주 소 가번호 ⑫추계 — 단순율 덴비사업자	:	사업장 : 의무 [	전화번호 2)간편장두 3)비사업지		⑩ 신고	② 주민등 ④ 전자우 ⑦ 휴대전	편주소 화번호	수정신고, ④	· 이기한후신고
<u> </u>	<u> </u>		<u> </u>	ELMO	(중	략)		<i>)</i> 세작근포			
				6	사업소득	·명세				<b>⑥</b> 원천(납	세조합) 장수세의
③일련 번호	66상호 (성명)	사업장 ⑥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5숙 작성	⑩업종 코드	⑪총수입 금액	⑦단순 경비 일반율	율(%) 자가율	②필요경비 (=⑩×⑪)	⑦소득 금액 (=⑩-⑫)	⑩원천장수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
					(중	략)					
세년	무서장	귀하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 64). 검색일: 2023. 1. 15.

# 1.1.2.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 가. 사업장 현황 신고 운영 현황

○ 미가공 식료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됨에 따라 해당 재화를 생산하는 농업인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매출을 신고할 수 있음(소득세법 2022: 제78조).75)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황 (인적사항, 수입금액, 시설현황 등)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 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함.
- O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에 서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위에 열거된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sup>75)</sup>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 cntntsId=7699). 검색일: 2022. 10. 24.

- O (신고의무 면제)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 준을 신고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예정신고·확정신고한 경우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각 사업장별로 신고
- (첨부서류)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
  - 수입금액검토(부)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사업장현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2022: 별지 제19호서식)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됨.
  - (과세기간) 과세기간 시작일·종료일
  - (사업자 인적사항)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등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보건업), 종목(안과), 업종코드, 수입금액, 수 입금액 제외
  - (수입금액(매출액) 구성명세) 계산서발행금액, 계산서발행금액 이외 매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
  - (적격증빙(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수취금액) 전자계산서, 전자계산 서 외 매입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외, 신용카드·현금영 수증 매입금액

- (조사·확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장 현황 신고서 내용 중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 부분이 미비하거 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 매출·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나. 사업장 현황 신고자료 상 수입·비용 확인
- O 사업자의 수입 증빙은 1) (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 전표, 3) 현금영수증, 4) 기타 현금 매출임(면세 여부와 무관).
- O 비용 증빙은 1) (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 전표, 3) 현금영수증, 4) 국세청 신 고된 인건비 및 임차료 등으로 이루어짐.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좌사용내역이 있는 인건비 미신고분이나 간이 영수 증 등으로 지출을 증빙할 수 있으면서 사업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비용 또한 인정됨.
- O 사업자의 수입증빙 자료 중 1)~3)은 국세청에 공식 기록으로 남으므로 해당 유형의 판매기록은 신뢰할만하지만 4) 기타 현금 매출의 경우, 신고자가 자의 로 작성하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높음.

# **〈그림 4-3〉** 사업장 현황 신고 양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	하시기 바라며, [		<b>장 현 황 신</b> =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관리번호					처리기	기간 즉시
과세기간 년	월 일	일 ~	년 월 일	!		
상호 사이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사업 []여[]부
사업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	P편주소 -	
①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단위: 원)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합 계	수입금	금액 수입금액 제외
(1)						
(3)						
(4)						
(5) 합 겨	1					
② 수입금액(매출액)	그서 머네		·	•		(-181 BI)
( 구입금액(매울액)	T경 경제			계산서발행금	OH OLOL III	(단위: 원)
합 계	계산시	计발행금액	신용카드 매출			물 기타 매출
③ 적격증명(계산서·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 수취금액			(단위: 원)
		• <b>신용카드</b> 입 계산서	) 수취금액	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③ <b>적격증명(계산서・</b> 합 계				매입 세금계산서		
	매 ( 전자계산서	일 계산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합 계	매우 전자계산서 폐업연	입 계산서 전자계( 면월일	산서 외 전자세금;	폐업사유	계산서 외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입금액
함 계 ④ 폐 업 신 고 첨부서류(해당 내용표2	매일 전자계산서 폐업인	입 계산서 전자계( 면월일 은 「소득세	산서 외 전자세금: : : : : : : : : : : : : : : : : : : :	계산서 전자세금: 폐업사유 같은 법 시행령	계산서 외 제141조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입금액 미급액
함 계  ④ 폐 업 신 고  첨부서류(해당 내용표2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 (전자계산서 폐업인 비 신고인원 내용을	입 계산서 전자계( 면월일 은 「소득세 충분히 검	산서 외 전자세금:  법」 제78조 및 : 토하였고 신고인	계산서 전자세금: 폐업사유 같은 법 시행령	계산서 외 제141조0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입금액
합 계  ④ <b>폐 업 신 고</b> 참부서류(해당 내용 표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매 (전자계산서 폐업인 비 신고인원 내용을	입 계산서 전자계( 면월일 은 「소득세	산서 외 전자세금:  법」 제78조 및 : 토하였고 신고인	계산서 전자세금: 폐업사유 같은 법 시행령	계산서 외 제141조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입금액 미급액
함 계  ④ 폐 업 신 고  첨부서류(해당 내용표2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 (전자계산서 폐업인 비 신고인원 내용을	입 계산서 전자계( 면월일 은 「소득세 충분히 검	산서 외 전자세금:  법」 제78조 및 : 토하였고 신고인	계산서 전자세금: 폐업사유 같은 법 시행령	계산서 외 제141조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입금액 미급액
함 계  4 폐업신고  첨부서류(해당 내용표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전자신고 □ 전산매체  서면 □ 해당 없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 (전자계산서 폐업인 비 신고인원 내용을	입 계산서 전자계( 면월일 은 「소득세 충분히 검	산서 외 전자세금; 법」 제78조 및 토하였고 신고인 합니다.	계산서 전자세금: 폐업사유 같은 법 시행령	계산서 외 제141조0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입금액 세 따라 신고하며, 위 배로를 정확하게 작
합 계  ④ 폐 업 신 고  첨부서류(해당 내용표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 없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매 (전자계산서 폐업인 비 신고인원 내용을	입 계산서 전자계( 면월일 은 「소득세 충분히 검	산서 외 전자세금; 법」 제78조 및 토하였고 신고인 합니다.	폐선서 전자세금 폐업시유 같은 법 시행령 이 알고 있는	계산서 외 제141조0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입금액  게 따라 신고하며, 위 내로를 정확하게 작
함 계  4 폐업신고  첨부서류(해당 내용표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전자신고 □ 전산매체  서면 □ 해당 없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워 전자계산서 폐업인 ) 신고인된 내용을 성하였	일 계산서 전자계( 면월일 은 「소득세 충분히 검	산서 외 전자세금: 법」 제78조 및 : 토하였고 신고인 합니다.	폐산서 전자세금 폐업사유 같은 법 시행령 이 알고 있는 신고인:	제141조0 사실 그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입금액  게 따라 신고하며, 위 내로를 정확하게 작
함 계  4 폐업신고  참부서류(해당 내용표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전자신고 □ 전산매체  서면 □ 해당 없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전자신고 □ 전산매체  전자신고 □ 전산매체	매워 전자계산서 폐업인 ) 신고인된 내용을 성하였	일 계산서 전자계( 면월일 은 「소득세 충분히 검	산서 외 전자세금: 법」 제78조 및 : 토하였고 신고인 합니다.	폐산서 전자세금 폐업사유 같은 법 시행령 이 알고 있는 신고인:	제141조0 사실 그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입금액 비 따라 신고하며, 위
함 계  4 폐업신고  첨부서류(해당 내용표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전자신고 □ 전산매체  너면 □ 해당 없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전자신고 □ 전산매체  너면 □ 해당 없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3	대한 전자계산서 폐업인 나용을 성하였.	일 계산서 전자계( 면월일 은 「소득세 충분히 검	산서 외 전자세금: 법」 제78조 및 : 토하였고 신고인 합니다.	폐산서 전자세금 폐업사유 같은 법 시행령 이 알고 있는 신고인:	제141조0 사실 그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입금액 비 따라 신고하며, 위
합 계  4 폐업신고  참부서류(해당 내용표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전자신고 □ 전산매체  서면 □ 해당 없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전자신고 □ 전산매체  서면 □ 해당 없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3  전자신고 □ 전산매체  서면 □ 해당 없음	대한 전자계산서 폐업인 나용을 성하였.	일 계산서 전자계( 면월일 은 「소득세 충분히 검	산서 외 전자세금: 법」 제78조 및 : 토하였고 신고인 합니다.	폐산서 전자세금 폐업사유 같은 법 시행령 이 알고 있는 신고인:	제141조0 사실 그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입금액 비 따라 신고하며, 위
함 계  4 폐업신고  참부서류(해당 내용표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전자신고 □ 전산매체  서면 □ 해당 없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전자신고 □ 전산매체  데면 □ 해당 없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3	대한 전자계산서 폐업인 나용을 성하였.	일 계산서 전자계( 면월일 은 「소득세 충분히 검	반서 외 전자세금: 법」 제78조 및 토하였고 신고인 합니다.	폐선서 전자세금 폐업사유 같은 법 시행령 이 알고 있는 신고인:	제141조0 사실 그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입금액  게 따라 신고하며, 위  내로를 정확하게 작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게 작성하였음을 확인

자료: 소득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952호, 2022. 12. 31., 일부개정) 별지 제19호서식. 검색일: 2023. 1. 6.

- O 따라서 농업인이 제출한 사업장 현황 신고 자료의 수입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현금 매출분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짐.
  - 단. 현금 매출부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 시 누락 가능성은 제3자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지 않는 모든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문제로 농업인들에게 만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음.

#### O 사업장 현황 신고 자료의 활용

- 사업장 현황 신고서에 기입된 수입금액은 추후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됨(소득세 과세대상인 면세사업자 한정).
- 국세청은 사업장별로 확정된 '매출액'을 명시하여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서 를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 포함)에게 고지함.
-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의 확정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신고한 '매출액' 총액과 일치.

# 1.2. 국세청 소득신고자료의 한계와 대안

- O 농업인의 작물재배 관련 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나 사업장 현황 신고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O 그러나 농업인은 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 현황 신고를 미이행하거나 신고내용이 부실하다고 하여 이를 검증하 거나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 농업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므로 국세청에서 농업인의 사업장 현황 신고서 상 수입금액을 철저하게 검증할 유인이 없음.76)

- 사업장 현황 신고서상 수입금액 자료는 별도의 검증 절차가 없는 한 공신력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경영안정정책에 바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O 따라서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영체가 제출한 소득신고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지역 평균 가격 및 수확량 등을 이용하여 지수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
  - 경영체의 수입(또는 소득)자료도 국세청 소득신고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상 합리적이지만 농업경영체의 소득신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 할 때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의 대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역 평균치를 사용하여 수입이나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은 농가경제조사나 표준소득자료 등 표본조사결과를 이용하는 것임.
- 이 방식은 경영체별 소득확인에 따르는 행정비용이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표본조사의 특성상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 국세청이 아닌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체별 매출액을 등록하는 방안도 대안 으로 검토할 수 있음.
- 이는 소득신고자가 소수에 불과하고 신고 경험이 거의 없는 환경적 요인을 보 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농업경영체등록 시 매출증빙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경험을 축적하여
     향후 소득신고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음.

<sup>76)</sup> 소득DB 구축을 위해 사업장현황신고서 자료를 분석한 통계청에 따르면, 과세기간 시작일, 종료일, 업종코드, 업태, 종목 등에 정보가 없거나 해당사항 없는 정보가 기입된 사례가 있고, 수입금액 등에 음수가 기입된 사례도 있다고 함(홍익대 박명호 교수. 2022. 12. 16. 서면 인터뷰.).

- 세부담에서 자유롭고 국세청에 비해 품관원의 지역 사무소가 많아 접근성 이 높음.
- 반면 농업경영체등록을 이용한 매출 확인은 신뢰성 측면이나 행정비용 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음.
  - 제출 및 등록된 자료의 검증 과정이 없다면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경영체등록상 정보의 유효기간이 3년인데 반해 매출 자료는 1년 단위로 재 등록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가 예상됨.
  - 농업경영체등록정보가 실제로는 국세청과 공유되지 않지만 농업인 사이에 서는 과세자료로 활용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도 있음.
  - 농업경영체등록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초자료의 수집과 보관 등에 따르는 농업인의 업무 부담은 여전히 존재함.

# 2. 운영방식 관련 검토사항

○ 농업인의 국세청 소득신고가 이루어지고 소득자료가 확보된다는 것을 전제 로 소득 및 경영안정제도를 도입할 때 결정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함.

# 2.1. 보장 대상: 가격, 수입, 소득

- O 농업인의 경영위험은 소득을 결정하는 3요소의 변동에 의해 발생함.
  - 농산물 가격 하락, 수확량 하락, 생산비 상승이 그 사례임.

- 국내에서는 수확량 감소, 가격 하락, 생산비 상승에 대응한 정책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영비 상승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의한 소득 하락에 대응한 정책은 없는 실정임.
  - 수확량 하락에 대응한 경영안정정책으로서 농작물재해보험 등이 운영됨.
  -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품목에 따라 가격안정제, 수매비축, 산지폐기 사업, 쌀 시장격리제,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음(김태후 외, 2022, p. 46).
  - 가격과 수확량 변동을 모두 고려한 정책에는 수입보장보험이 있음.

#### **〈표 4-6〉** 위험요소별 대응 정책 예

변동 요소	요소별 변동 대응 정책	
 가격	가격안정제, 수매비축, 산지폐기 사업, 쌀 시장격리제,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FTA 피해보전직불	
생산량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생산비	-	
가격, 생산량(수입)	수입보장보험	
가격, 생산량, 생산비(소득)		

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농업용 기자재 관련 조세 감면, 면세유, 농기계 임대, 친환경농자재지원 등이 있으나 시장 변동에 대응하기보다는 상시적인 지원정책에 해당되므로 변동을 완화하는 기능은 없음. 자료: 저자 작성.

- 신규 경영안정정책이 가격 하락에 의해 발동되도록 하는 것은 사업구조를 단순화하여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그러나 가격 하락을 발동 기준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품목이 특정되어야 하며 해당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품목 단위의 경영안정정책만 운 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음.
- 또한 수량과 가격은 역(逆)관계에 있어 가격과 수량 변화에 별도로 대응하기보다 는 수입 또는 소득 변동에 대응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유리할 것임.

- 농업수입을 보장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책 운용의 용이성, 필요 정보의 간소 화 측면에서 유리함.
  - 수입 파악을 위해서는 수확량과 가격 정보만 필요하므로 소득에 비해 적은 정보로 정책 운용이 가능하고 가입요건과 발동절차가 간소화됨.
- 그러나 농업수입은 경영비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영비 변동 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소득 하락에는 효과가 없음.
- O 농업소득을 보장 대상으로 하는 것은 농가 수용성 측면이나 농업경영안정이 라는 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면에서 농업수입에 비해 장점이 있음.
  - 가격과 수확량뿐만 아니라 경영비 변동까지 고려함으로써 궁극적인 소득 안정을 이룰 수 있음.
- 실제로 변동성은 농업총수입보다 농업소득에서 더 많이 나타남.
  - 농업총수입과 농업소득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변이계수를 비교해 보면, 농 업소득의 변이계수가 농업총수입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농업소득 의 변동성이 농업총수입의 그것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함.

⟨표 4-7⟩ 농업총수입 및 농업소득 변이계수

구분	농업총수입	농업소득
2003년 패널(2003~2007년)	0.49	1.51
2008년 패널(2008~2012년)	0.45	2.59
2013년 패널(2013~2017년)	0.39	5.48
2018년 패널(2018~2021년)	0.43	2.31

주 1) Balanced panel만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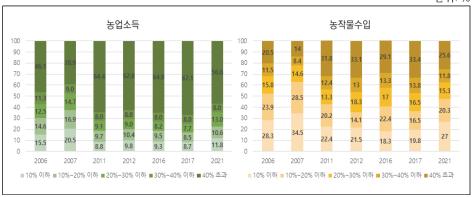
<sup>2)</sup> 음의 소득은 제거하지 않고 변이계수에 절댓값을 취하였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수입 또는 소득의 하락 측면에서도 농업총수입에 비해 농업소득의 하락 폭이 매우 크므로 수입보다는 소득 안정성에 대한 필요가 더 크게 체감될 수 있음.
  -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직전 3개년 대비 소득/수입 하락 농가 중 하락 규모별 분포를 계산한 결과, 수입보다는 소득에서 대규모 하락을 경험하는 농가가 더 많았음〈그림 4-4〉.
  - 농업총수입의 경우 직전 3개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감소한 농가 중 40% 이상 크게 감소한 농가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4%에서 33.0% 수준임.
  - 이에 반해 농업소득의 경우, 직전 3개년도 대비 40% 이상 하락한 농가가 약 40%에서 67%에 이름.

#### 〈그림 4-4〉 수입 및 소득 하락 규모별 농가 분포





주: 2003년 패널, 2008년 패널, 2013년 패널 2018년 패널을 각각 이용하여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하락 농가 의 비율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그러나 소득은 가격, 수확량, 경영비까지 파악되어야 하므로 필요한 정보가 많아 실제 제도 운영에는 어려움이 존재함.
  - 인건비나 기타 현금 지출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증빙을 남기기 어려워 소득 신고를 한 농업인이라도 경영비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음.

- 일본의 농업경영수입보험은 가장 엄격한 수준의 기장을 요구하는 청색신 고자만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아닌 수입을 경영안정의 대상 으로 정한 것은 수입이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됨.

⟨표 4-8⟩ 보전 대상별 장단점 비교

보장 대상	장점	단점
가격 하락 보전	사업구조 단순, 행정비용 낮음	농가 단위로 적용 불가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불리
수입 하락 보전	운용 용이 소득에 비해 필요 정보가 적음	경영비 변동에 대응 불가
소득 하락 보전	농업경영안정의 궁극적 목표에 부합 더 높은 변동성에 대응	필요 정보의 범위가 넓음 운영방식이 복잡함

자료: 저자 작성.

#### 2.2. 보전방식: 보험 vs. 보험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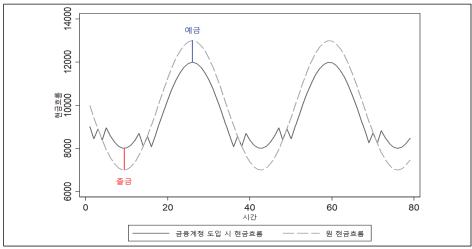
- O 소득 및 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에는 정책보험방식과 비보험방식이 있음.
  - 정책보험은 현재 운영 중인 농작물재해보험과 수입보장보험이 대표적 사 례이며 미국에서는 RP. WFRP. MP 등이, 일본에서는 농업경영수입보험 이 운영되고 있음.
  - 비보험방식은 미국의 ARC/PLC와 같은 직불방식과 캐나다의 농업투자계 정. 일본의 농업경영수입보험의 적립금과 같은 적립방식으로 나뉨.
  - 보상방식은 손실 보상 규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외국에서는 주로 30% 이상의 대규모 손실을 보상하는 데는 보험방식, 30% 미만의 경미한 손실을 보상하는 데에는 비보험방식이 활용됨.

- O 보험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님.
  - 정책 대상을 지원하되 민간 부문의 장점을 활용하고 위험관리의 자기 책임 성이 부여됨.
  -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만큼 재정부담이 줄어듦.77)
  - 30% 이상 대규모 손실에 대응하는 제도라면 WTO 허용보조로 분류될 수 있어 감축 위험에서 자유로움.
- 그러나 정책보험은 민간보험사가 사업 운영을 맡으므로 보험사의 이익이 보 장되어야 하고 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보 힘이 성립된다는 제약이 있음.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손해평가 절차를 거치므로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함.
  - 보험업계에서 특정상품이 보험으로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여섯 가지 조건임. 동질적 위험이 다수 존재해야 하고 가입시점에서 손실 예측이 불가능해야 하며(우연성), 손실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해야 함. 또한 위험의 분산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비재난적 손해)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이 요구됨(김태후 외, 2022, p.90; 보험경영연구회(재인용), 2019).
- 직불방식은 소득(또는 수입이나 가격)이 하락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민간 기업의 개입이 없으므로 정책사업의 추진체계가 비교적 간 소화되고 사업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행정비용 측면에서 장점 이 있음.

<sup>77)</sup> 다만 보험료 보조와 재보험 운영 여부에 따라 재정부담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음.

- O 그러나 직불방식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음.
  - 정부가 지원대상에 보전금을 지급하므로 보험에 비해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위험관리 비용을 정책대상자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자기책임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음.
  - 직불금은 대상 품목의 생산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시장을 왜곡할 소지가 있 음(WTO의 감축대상보조에 해당).
- O 적립방식은 농업인이 자기부담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금의 일정 비율을 매칭하여 적립하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임〈그림 4-5〉.
  - 적립방식은 품목 단위로도 적용 가능한 직불방식과 달리 경영체 단위로 적 용된다는 특징이 있음.

#### 〈그림 4-5〉 적립 방식 경영안정정책 적용 예시



주: 현금흐름은 예·출금 이후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함. 자료: 김태후 외(2022, p.93).

- O 적립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 정부가 매칭하여 지원하지만 농업인이 위험 대비 자금을 직접 적립하므로 자기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또한 정부의 매칭자금 정도만 소요되므로 재정부담 면에서 직불방식보다 유리함.
- O 그러나 적립방식의 단점 또한 존재함.
  - 적립방식은 경제상황이 좋을 때 적립하고 농업인의 수입 또는 소득이 하락하면 적립금을 인출하는 방식인데 이때 인출요건을 가입자 임의로 정하게되면 일반 금융상품(예: 농어가목돈저축)과의 차별성이 없음.78)
  - 반대로 인출요건으로서 소득이 하락해야 한다면 농업경영체의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하는데 소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국내 여건상 실행에 옮기기 어려움.
  - 적립금의 규모가 농가소득의 범위를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에는 대응하기 어려움.
  - 품목을 특정하지는 않지만 직불방식과 마찬가지로 농업생산을 지지하는 효과가 있어 감축대상보조에 해당됨.79)

# 2.3. 가입 단위: 품목 vs. 경영체

○ 농작물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등의 경영안정정책은 품목을 가입 단위로 하고

<sup>78)</sup> 캐나다 농업투자계정의 경우, 농업인이 원하는 때에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음.

<sup>&</sup>lt;sup>79)</sup> 캐나다 농업투자계정은 2016년 기준 WTO에 품목불특정 AMS로 통보됨(WTO,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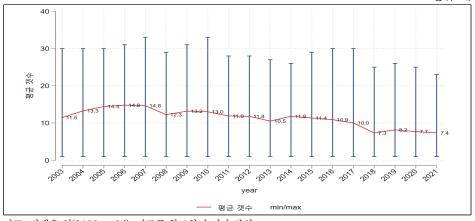
있는데 그에 따른 하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단위의 경영안정정책 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농업수입보장보험은 품목 단위로 수입을 보장하고 있으며 대상 품 목은 총 7개 품목에 불과하여 다품목 재배 농가의 수입안정에 한계가 있음.
- 다품목 농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영체 단위의 가 입방식이 사업 수요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함.
  - 전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국내 농가의 평균 재배품목 수는 2021년 현재 7.4 개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그림 4-6).
  - 그러나 여전히 국내 농가 중 4개 이상의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약 81.7% 로. 대다수를 차지함(표 4-9).
- 그러나 경영체 단위의 경영안정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이 필요하므 로 실제 참여농가의 범위가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과 행정비용이 단점으로 작용함.
  -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경영안정정책을 추진한다고 할 때 수집 단위는 경영체가 되며 보장 대상은 해당 경영체의 농업 관련 수입 또는 소 득 전체가 됨.
  - 품목 단위로 경영안정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과 연관된 수입 (또는 소득) 정보만 필요하지만 경영체 단위로 경영안정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영체 전체의 수입(소득) 정보가 필요함.
  - 이는 단순 판매액뿐만 아니라 재고액까지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여 규모가 영세한 경영체가 그 러한 부담을 지기 어려움.

○ 따라서 경영체 단위의 경영안정정책을 운영하는 데 따르는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임.

#### ⟨그림 4-6⟩ 농가 연도별 재배품목 수

단위: 개



자료: 김태후 외(2022, p.36).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표 4-9⟩ 재배 품목수별 농가 분포

단위: %

재배품목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1개	0.04	0.04	0.04	0.04	0.03
2~3개	16.3	14.5	15.0	15.6	18.0
4~6개	24.1	19.0	21.0	22.9	23.9
7~10개	23.4	22.6	22.9	22.0	24.0
11~14개	20.5	24.1	22.4	22.6	19.8
15개 이상	8.3	12.9	10.7	8.9	7.0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2.4. 보장 대상의 범위와 정의

○ 경영안정제도에서 보장 대상이 되는 수입에는 농업경영체의 농산물 판매액

과 재고증감액, 농업 관련 잡수입 등 세 가지 요소가 있음.

- O 그러나 해당 제도의 적용 단위나 성격에 따라서 각 요소의 포함 여부는 달라 질 수 있음.
  - 외국의 수입안정정책과 국내 사례, 농가경제조사에서 다루고 있는 수입의 범위를 검토한 결과, 품목 단위의 수입안정정책에서는 보장 수입을 판매액 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농가 단위의 수입(소득)안정정책에서는 농산물 판매 액과 재고증감액을 모두 보장 대상으로 함(경우에 따라 잡수입 포함).
  - 대상 수입에 재고증감액을 포함하는 것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로 판매를 줄이는 사례를 방지하고 분할 출하를 고려하기 위함임.

**〈표 4-10〉** 타 정책 및 제도의 수입 정의

유사 제도 및 정책		및 정책	대상 수입	
	ARC-CO ARC-IC		해당 품목의 지역 평균 판매 수입	
품목			해당 농가에서 재배하는 모든 품목의 실제 수입의 합계	
단위	RP		해당 품목의 실제 수입	
	수입보장보험		농산물 판매액	
. 71	W	'FRP	보험연도 판매수입 – 기초재고 + 기말재고	
농가 단위	의본 포인경영수인모연		농산물 판매금액 + 사업소비금액 - 기초재고 + 기말재고 + 잡수입	
LITI	농가경	경제조사	매출액(현금수입+현물수입+외상수입) + 농축산물재고증감 + 잡수입	

자료: 저자 작성.

- 따라서 국내에 신규 경영안정정책을 도입하고자 할 때 품목 단위 경영안정정 책의 보장 대상은 농산물 판매액으로 하고 경영체 단위 경영안정정책의 보장 대상은 농산물 판매액과 재고증감액의 합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경영체 단위 경영안정정책의 보장 대상에서 농산물 판매와 관련 없는 잡수입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제외함.
- O 이에 보장 대상 수입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품목 단위) 농산물 판매액
- (경영체 단위) 보장 대상 수입 = 농산물 판매액-기초재고액+기말재고액
- O 보장 대상 수입을 산정하는 품목의 범위는 또 하나의 쟁점이 됨.
  - 예컨대 경영체 단위의 경영안정정책 도입 시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을 계산할 것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WFRP나 캐나다의 소득안정계정은 대체로 1차 생산물은 품목에 관계없이 모두 수입의 계산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일부 원시 상태의 가공품 판매액도 보장 대상 수입에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원료물을 구입하여 재판매하여 얻은 수입이나 1차 생산과 연관성 이 낮은 수입은 보장 대상 수입에 포함하지 않음.
- 국내 신규 경영안정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보장 대상 품목에 곡물,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 등 경종작물과 축산물을 포함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축 산물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축산소득은 경종과 달리 과세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부업 규모 이상의 축산 농가는 소득신고를 해야 함.
  - 따라서 소득 관련 정보의 확보 면에서는 축산 분야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 이라고 할 수 있음.
  - 경영안정제도의 적용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손실 발생의 우연성이 있어야 하며 과잉 보상이 되지 않아야 함.
  - 한돈, 육계, 낙농과 같이 계열화되어 있는 축종의 경우, 계약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수확량 변동에 따른 손실 보전이 가축재해보험, 살처분 보상 등 타 정책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한우와 산란계의 경우,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으나 타 축종과 같은 보상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어 농가 단위 경영안정제도와의 중복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다작목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 제도를 우선 도입하되 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추후 확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O 보전의 요건 즉, 피해의 범위 또한 검토할 사항임.

- 일본의 농업경영수입보험은 재해나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하락 등을 보 상할 뿐만 아니라 수확 후 피해, 환율 변동, 기계 고장 및 질병·부상으로 인 한 손실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함.
- 반면 미국과 캐나다의 경영안정제도는 주로 재해나 시장 상황에 따른 손실 만을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일본과 같이 보상발동의 요건이 광범위한 경우, 경영체의 입장에서 보상의 기회가 많아지므로 수용도가 높을 수 있으나 발동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 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행정사무로 인한 비용 증가가 예상되고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또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
- 반대로 발동요건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는 것은 농업인의 수용도 측면에서 다소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음.

# 2.5. 지원 대상

○ 농업경영안정제도의 도입은 경영체의 소득신고가 전제되지만 실제로 소득신 고를 하여 소득안정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농업인은 일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농업인의 고령화 추세와 영세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농업인이 소득신고 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면,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 자로 분류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지지 않는데 이러한 규모에 해당하 는 농업인이 전체의 약 85.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80)
- 만약 작물재배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종전 10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추게 된다면 약 97.8%의 농가가 비과세 범위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됨.

⟨표 4-11⟩ 농업총수입금액별 가구 분포

농업총수입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가구 비율	14.5%	8.3%	6.2%	2.2%

주: 농업잡수입은 제외함.

자료: 통계청(2019~2021). 농가경제조사.

- 소득신고 여부에 따라서 농업인의 유형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뉨.
  - 소득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소수의 농업인은 전문경영인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을 영위하며 농업경영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매우 큰 손 실의 위험을 경험할 수 있음.
  - 반면 소득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규모 농가는 겸업농이거나 고 령으로서 은퇴의 과정에 있는 농가들이 많은데 이들은 생계농으로서 대농 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에 따른 손실 규모가 적음.
  - 〈표 4-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판매금액이 큰 농가일수록 경지규모가 크고 전업 비율이 높으며 연령이 낮을 가능성이 높음.

<sup>&</sup>lt;sup>80)</sup> 다만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함.

 특히 5.000만 워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70세 이상 고령농의 비율이 41.8% 로서 여타 금액 구간에 비해 고령화 비율이 매우 높음.

#### ⟨표 4-12⟩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특성

단위: %

특성	5,000만 원 미만	5,000만 원~1억 원	1억~2억 원	2억 원 이상
경지규모 2ha 이상 비율	8.1	52.2	57.1	46.1
전업농 비율	58.5	75.1	76.1	78.0
경영주 연령 70세 이상 비율	41.8	17.4	10.6	8.3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is.kr). 농림어업총조사. 검색일: 2022. 12. 20.

- 소득신고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경영안정정책이 달라지므로 정책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경영안정정책 도입의 쟁점임.
  - 소득신고를 하는 농업인만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게 되는 경우, 정책 소외계 층이 다수 발생할 수 있으나 경영체 단위의 경영안정제도가 본래의 목적대 로 유영되기 위해서는 소득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득신고자만을 대상 으로 정책을 운영하여야 하는 딜레마가 존재함.
  - 유영방식에 따라 필요한 소득정보의 범위와 요구되는 엄밀도가 다르기 때 문에 소득신고 여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다름.

# 2.6. 발동 요건과 보장수준

- 신규 경영안정제도의 발동 요건과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수입 또는 소득을 보 장할 것인가도 검토사항임.
  - 발동요건과 보장수준은 보상 발동의 빈도와 그에 따른 행정비용, 사업자의 수익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보험은 수입의 경우 최대 85%까지 보상하고, 손 실마진의 경우 최대 70%를 보상함.
  - 미국의 농가 단위 수입보장보험은 기준수입의 50%에서부터 85%까지 보 장하고 일본의 농업경영수입보험은 기준수입의 9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발동되며 기준수입의 50~80%를 보장함.
  - 캐나다의 소득안정계정은 농업 마진의 손실이 기준 마진의 3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손실마진의 70%를 보상하고 있음.
- 기존 수입보장보험은 기준수입의 60~80%까지 보장함.
  - 수입보장보험의 보장범위는 2018년까지 60~90%였으나 가입자의 도덕 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보장수준을 80%로 하향 조정함.

⟨표 4-13⟩ 해외 경영안정제도 보상범위 예

제도 보상범위		기타
일본 농업경영수입보험	기준수입의 80%, 70%, 60%, 50%	적립금으로 추가 보상 가능
미국 WFRP	농가승인수입의 50~85%	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가능
캐나다 소득안정계정	손실마진의 70%	농업투자계정으로 추가 보완 가능
수입보장보험	기준수입의 80%, 70%, 60%	

자료: 저자 작성.

- 수입의 변동 폭보다 소득의 변동 폭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의 보장수 준은 수입의 그것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소득에는 생산비가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수입이 하락할 때 소득의 하락분 은 수입 하락분보다 커짂.
  - 예컨대, 수입이 10% 하락할 때 소득은 10%를 초과하여 하락함.
  - 미국과 일본, 캐나다의 사례를 보더라도 소득 보장수준은 수입에 비해 낮 게 설정되어 있음.

- 보험방식에 비해 비보험방식의 발동요건은 느슨한 편인데 이는 비보험방식을 통해 경미한 손실에 대응하기 위함임.
  - 일본의 농업경영수입보험은 보험방식과 적립방식을 혼합하고 있는데 기준 수입의 90% 미만으로 수입 하락 시 적립금이 지급됨.
  - 캐나다의 농업투자계정은 농업인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음.
  - ARC-CO의 발동 기준은 기준수입의 86% 미만으로 수입이 하락하는 경우 이며 ARC-IC의 발동 기준은 농장 수입이 기준수입보다 작은 경우임.
- 국내 농가의 경미한 손실 발생 가능성도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 상규모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작물 수입 감소 시 과거 3년 평균 수입 대비 20% 이하의 손실을 경험하는 농가의 비율이 전체 손실 농가의 35.6~63.0%를 차지함.81)
- 발동요건 검토 시에는 WTO 국내보조 규정과의 합치 여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감축대상보조로 분류되면 향후 강제적으로 사업을 축소해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허용보조로 분류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영안정제도가 허용보조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과거 기준소득의 30%를 초과하는 수준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분의 70% 미만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82)

<sup>81)</sup>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is.kr). 농가경제조사. 검색일: 2022. 12. 20.

<sup>82)</sup> WTO 홈페이지(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14-ag\_02\_e.htm#an).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문 부속서2 국내보조-감축의무제외 기준. 검색일: 2023. 2. 21.

#### 2.7. 타 제도 중복 가입 허용 여부

- 신규로 도입하는 경영안정제도 가입자에게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과의 중복 가입을 허용할 것인지가 쟁점 중 하나임.
  - 예컨대 경영체 단위 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중복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는 재정효율화나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함.
  - 경영체 단위 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재해지원을 적용할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되어야 함.
- 채소가격안정제도는 대상이 일부 채소 품목에 한정되어 있고 가격하락에만 대응한다는 차이점이 있으나 큰 틀에서 경영위험정책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는 면에서 중복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8. 운영 주체와 체계

- 신규 경영안정제도 도입 시 운영체계와 관련된 쟁점은 '민간 부문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임.
- 그런데 민간 부문의 역할을 포함한 운영체계는 경영안정정책의 작동 원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기존의 정책보험은 민간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등 주요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정부는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재보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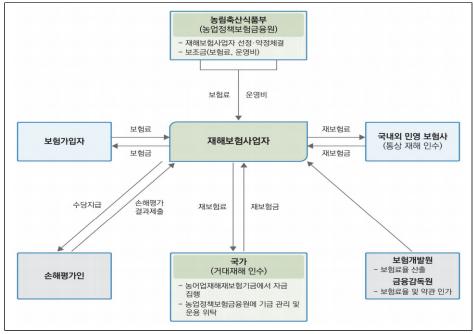
운영하는 데 역할이 그침(그림 4-7).

- 즉, 보험방식의 민간 활용도는 상당히 높은 편임.
- O 보험방식이 아닌 경우, 보상금 적립과 운용, 보상금 지급 판정 및 실지급 등 제반 행정업무는 정부(또는 정부대행기관)가 직접 운영하거나 실질적인 의사 결정을 담당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민간 부문의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음.
  - 직불방식은 지자체가 실무를 담당하고, 적립방식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실 무를 담당할 수 있음.

# 3. 소결

- 앞 절에서는 신규 경영안정제도의 설계와 관련된 쟁점을 나누어 살펴보았으 나 실제로는 각 쟁점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
- O 보장 대상에 대해서는 가격과 수입,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농 업경영체의 소득신고 여부나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예를 들면, 가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상 품목이 특정되어야 하므 로 경영체 단위로는 경영안정정책을 운영할 수 없음.

#### ⟨그림 4-7⟩ 농작물재해보험 추진 체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 농업재해보험연감; 서상택 외(재인용). (2022).

- 소득을 결정하는 데에는 비용이라는 요소가 추가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므로 농업인이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매출밖에 없다면 소득 보장 정책을 시행하기는 어려움.
- O 사업방식은 수입 및 소득정보의 구득 여부, 보상수준과 연계되어 있음.
  - 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책정해야 하는데, 보험료 계산에는 과 거의 수입 기록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수입 및 소득정보가 파악 되지 않는다면 보험방식을 도입하기 어려움.
  - 적립방식에서도 적립금 규모, 인출요건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소 득정보의 필요 정도가 달라질 것이며 직불방식은 직불금 지급요건을 결정 하는 데 소득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외국에서 보험방식은 주로 중·대규모 손실(예: 20% 이상) 보상에 활용되는 반면, 비보험방식은 주로 경미한 손실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면 에서 보장 수준과 사업방식은 밀접하게 연관됨.
- 국제규범과의 합치 여부나 재정 투입규모도 사업방식에 따라 달라짐.
- 따라서 신규 제도에 대해서는 보장 대상, 가용 정보의 범위, 정책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안을 도출하여야 함.
  - 어떤 기준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따라 나머지 쟁점들이 자연스럽게 결 정될 것임.
- O 농업인의 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선 가용한 정보의 범위, 소득신고를 하는 농업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적용해 보고 추후 사업 운영방식을 고도화해나가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판단됨.

# 제5장

신규 경영안정제도 도입 방안



# 신규 경영안정제도 도입 방안

# 1. 기존 경영안정정책 제안 평가83)

○ 농업경영안정을 위한 대안으로서 기존 연구에서는 수입, 가격, 마진(소득) 하 락에 대응한 경영안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각 제안에 대한 장단 점을 검토하여 국내 경영안정제도의 도입 방안을 도출함.

# 1.1. 농업소득안정계정

- 농업소득안정계정은 농가와 정부가 분담하여 손실에 대응하는 제도임.
  - 농가별로 소득안정계정을 만들어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일정 비율 이 상 하락할 경우 농업인이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함.

<sup>83)</sup> 오내원(2022)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수정하였음.

- 캐나다의 순소득안정계정(NISA)를 참고하여 1996년 처음 제안되었으며(서 종혁 외, 1996), 2004년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 도입 검토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실행되지 않음(오내원, 2022).
  - 순소득안정계정은 현재 농업투자계정(AgriInvest)과 농업소득안정계정 (AgriStability)으로 계승되어 운영되고 있음.
- 농업소득안정계정은 품목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농가가 재원을 분담하고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큰 폭의 소득감소에는 대응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음.
  - 농가가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소득보다 높을 수 없고 보상금액이 피해발생 액에 비례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대규모 손실의 보전에는 한계가 있음.

#### 1.2. 농가 단위 소득안정직불제

- 농가 단위 소득안정직불제는 농가별 소득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품목 별로 전국 또는 지역 평균 가격과 단수 변동 현황을 파악하여 조수입 감소의 일정 부분을 직불금으로 보전하는 제도임.
- 일본의 수입감소영향완화 대책(나라시 대책), 미국의 카운티 단위 농업위험 보상(ARC-CO)과 유사한 형태임.
- 오내원 외(2008)는 농가 단위의 조수입을 보전대상으로 하는 직불제를 제안 하였으며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과수와 축산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한정 함.84)

- 농가 단위 소득안정직불제는 농가별 수입 또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또는 지역) 평균치를 적용하여 수입 하락 여부를 판단한다는 측면에서 소득안정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후속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 았음.
- 농가 단위 소득안정직불제는 비교적 집행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입 하 락 시 보전금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위험관리의 자기 책임성에 위배된다는 면에서 단점이 있음.

#### 1.3. 가격 변동 대응 직불

- O 이정화(2017)은 품목별 가격 변동에 대응하여 기준가격과의 차액의 일정 부 분을 지급하는 방식의 가격 변동 대응 직불을 제안하였음.
- O 해당 제도는 가격 하락을 보상하되 생산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년 식부면 적이 아닌 기준연도의 면적을 지급기준으로 함.
  - 미국의 CCP와 PLC, 과거 쌀 변동직불제와 유사
- O 해당 제도는 가격 변동의 위험을 상쇄한다는 면에서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WTO 규정상 허용보조에 포함되지 않아 확대에 제약이 있음.

<sup>84)</sup> 쌀은 변동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는 점, 채소류와 특작물은 수확기와 작형이 다양하여 기준 생산량과 가격의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제외하였음.

#### 1.4. 마진보험

- 마진보험은 김태후 외(2022)가 제안한 정책으로서 농축산물의 지역 평균 수입과 평균 경영비 간의 차이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임.
- 마진보험은 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소득안정효과가 높고 민 간 자원의 활용, WTO 규정상 허용보조에 해당한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음(단, 소득이 30% 이상 하락할 경우에 발동된다는 것을 전제로 함).
- 김태후 외(2022)가 제안한 마진보험은 농축산물의 지역 평균 마진(지역 평균 기준가격-지역 평균 경영비)의 하락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수보험 인데 지역 평균치를 사용함으로써 개별 농가의 실제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음.
- 또한 마진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통계청이나 농촌진흥청에서 생산한 표본조사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데 대표성 면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려움.

〈표 5-1〉 소득·경영안정정책 대안 비교

명칭	가입 단위	보장 대상	유형
농가 단위 소득안정직불제	품목/농가	수입	직불
가격 변동 대응 직불	품목	수입	직불
농업소득안정계정	농가	소득	적립
마진보험	품목/농가	소득	보험

자료: 저자 작성.

# 2. 신규 경영안정제도 도입 방안

#### 2.1. 신규 경영안정제도 도입의 기본 방향

-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소득 기반 경영안정제도 도입 방안, 경영안정제도 도입 의 원칙과 각 쟁점별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기 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O 기존의 수량 보험 중심의 경영안정제도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신 규 경영안정제도는 수입 또는 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기존 품목 단위 보험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농가 단위의 경영안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품목 단위 경영안정제도는 해당 품목의 생산을 왜곡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다품목 재배 농가가 여전히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제도는 농가 단위의 경영안정제도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O 농업정책의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농업소득의 안정이며 소득의 변동성이 수 입의 변동성에 비해 크다는 점에서 가급적이면 농업소득을 보장 대상으로 정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시에 행정비용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제반 환경이 조성되 었을 때를 염두에 두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장해 나가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의 소득자료 확보 여건, 소득 수준, 경영규모, 손실 유형 등을 근거로 복수의 경영안정제도를 보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소득자료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전문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운영방식이 달라야 함.
  - 국내 농가의 수입 및 소득 하락규모를 살펴보면, 수입의 경우 하락 규모별로 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경미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대규모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영위험 대응책이 될 수 있음.
  - 예컨대 보험방식으로 대규모 손실에 대응하고 보험 외 방식으로 미세손실 에 대응할 수 있음.
  - 여러 방식의 경영안정제도를 다수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 그에 비해수량 보험으로 경영안정수단이 제한된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더욱 다양한형태의 경영안정제도가 다수 존재할 필요가 있음.

# 2.2. 신규 경영안정제도 운영방안

- 신규 경영안정제도 도입 시, 다음과 같은 정책조합을 고려할 수 있음.
  - 1안(수입보장보험+소득안정계정): 수입보장보험은 <u>농업수입</u>이 하락할 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며 소득신고를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영, 소득 안정계정은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u>수입</u>이 하락할 경우 적립금 을 인출하는 제도
  - 2안(수입보장보험+소득안정직불): 수입보장보험은 <u>농업수입</u>이 하락할 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며 소득신고를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영, 소득

안정직불은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입이 하락할 경우 손실분의 일부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 수입보장보험의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음.
  - 수입보장보험은 농가가 생산하는 모든 작물(축산물 제외)의 판매와 관련된 수입이 하락했을 때 보상금이 지급됨.
  - 농업수익보험과 마찬가지로 소득신고를 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소득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수입과 당해 연도 수입을 계산함.
  - 수입보장보험의 보장률은 기준수입의 60~80%로 정함.
- O 수입보장보험의 대상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장부를 기장한 농 업인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기장신고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보험을 적용하도록 함.
  - 이는 간편장부를 포함하는데 복식부기는 물론 간편장부 작성 시에는 재고 증감액이 소득신고자료에 포함되므로 경영체 단위의 수입 또는 소득 계산 시 활용 가능함.
  - 반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료에 재고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계신고를 한 농업인은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없음.
- O 보험 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신고기간은 5년으로 정하되, 5년을 채우지 못 한 농업인에게는 보장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표 5-2〉.
  - 보장수준을 낮춤으로써 장기간의 소득신고를 유도함.
  - 다만 신규 진입농은 농업 관련 소득신고가 영농 시작 전에 이루어지기 어려

운 점을 고려하여 보장수준의 차등화에서 우대할 필요가 있음.

⟨표 5-2⟩ 소득신고 기간별 보장수준 예

4 E 11 7 717 L	보장범위		
소득신고 기간	일반 농업인	신규 진입농	
- 5년	A%	A%	
- 4년	(A-5)%	(A-3)%	
 3년	(A-10)%	(A-6)%	
 2년	(A-15)%	(A-9)%	
 1년	(A-20)%	(A-12)%	

자료: 저자 작성.

- O 농업인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필수) 과거 세무신고 자료(장부 포함)
  - (선택) 작목, 면적, 생산량 및 기대 시장 가격, 기대수입을 포함한 농장운영 계획서
- 적립 방식의 경영안정정책(가칭 소득안정계정)의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경영주 중 매출자료를 제출한 모든 농업인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해당 제도에는 국세청 소득신고자와 미신고자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데 소득신 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 여부에 따라 정부의 적립률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
  - 국세청 소득신고자에게는 더 높은 적립률을 적용하여 소득신고자를 우대함.
- 적립된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 수익은 가입 농업인이 필요할 때 부분 인출하 도록 하며 농업인이 은퇴할 때에 전액 인출 및 계좌 폐쇄를 하도록 함.

- O 구체적인 적립금 인출 조건은 농업인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는 방법과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음.
  - 농업인의 판단하에 필요 시 적립금을 인출하는 것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 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농업소득안정계정이 사실 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일반 금융상품과의 차별성이 없어진다는 문 제가 있음.
  - 반면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인출하도록 한다면 제도의 취 지를 잘 반영하고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발동 기 준을 마련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행정절차가 추가되므로 행 정비용이 발생함.
- O 소득안정직불은 경영체의 작물 관련 수입이 하락하는 경우에 하락분의 일부 를 보전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할 수 있음.
- 동시에 행정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 단위의 수입을 경영체의 수입 및 소득 정보를 대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지역 평균치를 활용하는 경우, 가입 경영체의 매출자료 제출 및 소득 신고를 장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선순위를 낮게 두어야 함.

⟨표 5-3⟩ 신규 경영안정제도 도입안 요약

항목	수입보장보험	소득안정계정	소득안정직불
가입 대상	사업자 등록 및 소득신고 경영체	AgriX 등록 기준 경영체 중 매출액 증빙 제출자	AgriX 등록 기준 경영체 중 매출액 증빙 제출자
보장률	기준수입의 60~80%	-	-
보상 발동 기준	수입 하락	농업인 필요 시 또는 수입 하락	수입 하락
보장 대상	경종 작물 관련 수입 및 소득(축산 제외)	농가소득	농업소득
수입 계산 근거	경영체 단위	경영체 단위	경영체 단위

자료: 저자 작성.

# 3. 향후 검토과제

- 농업분야의 경영안전망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농업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의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신규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음.
- 그러나 신규로 도입될 경영체 단위 경영안정제도는 경영체의 소득 파악이 필 요하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 자체뿐만 아니라 제반 여건 형성을 동시에 추진하 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음.
  - 경영안정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서 경영체 단위의 소득신고자료가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과세 논의는 경영안정정책 도입의 필수 전제요건은 아니며 과세가 가져올 파장을고려하면 동시에 추진하기 쉽지 않은 과제임.
- 소득파악을 위한 제도적 환경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소득 신고자만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정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라고 판단됨.
  - 초기 단계에서는 자발적인 소득신고자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정책을 운영하면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이후 발견된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세제 개편을 비롯한 소득신고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소득정보 기반 경영안정정책을 확대함.
  - 소득신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안정정책의 성과에 따라 소득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수도 있으며 이는 다시 소득 기반 경영안정정책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새로운 경영안정정책이 경영체 단위로 도입되는 데 따르는 부작용도 함께 검 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한 농가에서 공동으로 경영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국세청 신고 시에는 하나의 사업체로 등록 가능함.
  - 경영 단위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 요가 있음.
- O 장기적으로는 신뢰성 있는 농업소득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세제 개편으로 통 한 소득신고 의무 부과를 추진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과세 전화을 통해 농업인이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 고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공신력 있는 소득자료 확 보에 중요한 전제요건임.
  - 다만 소득세 과세 범위 확대 시 세부담 증가. 소득신고 절차 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과세를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한 보완대책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록 1

# 미국 경영안정제도의 보전금 지급 예시

#### 1. PLC85)

#### 가. 보상방식

- O PLC는 해당 작물의 유효 가격(effective price)이 해당 품목의 유효 참조 가격(effective reference price)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함.
  - PLC 지급액 = 해당 작물 기본 면적의 85% × 지급단가(유효 참조 가격 -유효 가격) × 해당 작물의 단수
  - 기본 면적은 PLC/ARC 프로그램에서 보장하는 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면적(식부 면적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음)
  - 유효 참조 가격 = Min{참조 가격의 115%, Max(참조 가격<sup>86)</sup>, 이전 5개년 도 올림픽 시장 평균 가격의 85%)}임.
  - 유효 가격이란 해당 품목의 거래연도 시장 평균 가격(national market year average price, MYA)과 해당 품목에 대한 융자 단가(national loan rate) 중 더 높은 가격을 말함.
  - 단수(PLC Yield)는 PLC 지급액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수확량으로, 해당 농가에서 과거에 수확한 양을 바탕으로 설정됨.

<sup>85)</sup> 미국 농림부 농가지원청(2015)의 "2014 Farm Bill FACT SHEET"의 PLC 예시를 기본으로 작성하였으며, 2018년 농업법에서 변경된 부분은 수정·추가하였음.

<sup>86)</sup> 참조가격(reference price)은 PLC/ARC 대상품목에 대해 설정된 금액으로 미국 농림부 농가지원 청(FSA)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나. PLC 지급 예시

□ 단계 1: 농가의 기본 정보 확인

작물	기본 면적 <sup>87)</sup> (Base Acres) (A)	식재 면적 <sup>88)</sup> (Planted Acres)	PLC 생산량 <sup>89)</sup> (B)
밀	100	0	30
옥수수	100	110	80
알팔파(Alfalfa) <sup>90)</sup>	0	165	N/A
계	200	275	-

#### □ 단계 2: PLC 지급단가(payment rate, \$로 표시) 결정

○ 단계 2-1. 유효 참조 가격(effective reference price) 도출

		비교 가격 (F) 설정			유효
작물	참조 가격 의 115% (C)	참조 가격 (reference price) (D)	이전 5개년도 시장 평균 가격 의 85% (E)	(max(D, E)=F)	자보 참조 가격 (min(C, F)=G)
밀	6.3	5.5	5.1	5.5	5.5
옥수수	4.3	3.7	4.7	4.7	4.3

<sup>87)</sup> 기본 면적(Base Acres)은 PLC/ARC 프로그램에서 보장하는 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면적을 말함. PLC/ARC가 처음 도입되는 해인 2014년에 해당 프로그램들을 위한 기본 면적을 설정할 때 해당 농가에게 ① Farm Service Agency에 등록되어 있는 2013년 기본 면적 정보를 유지하거나, ② 등록되어 있는 2013년 기본 면적을 한 번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sup>88)</sup> 식재 면적(Planted Acres)은 해당 연도에 실제 경작한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기본 면적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음.

<sup>89)</sup> PLC 수확량은 PLC 지급액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생산량으로, 해당 농가에서 과거에 생산한 양을 바탕으로 설정됨. 2014년~2018년 PLC 프로그램 등록 시, 해당 농가에게 2013년 PLC 수확량을 계속 사용하거나 PLC 수확량을 수정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였음. 2018년 농업법에서는 프로그램 선택과 관계없이 2020년에 2020년~2013년 동안에 적용할 PLC 수확량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갱신된 수확량은 2013~2017년 동안의 작물의 에이커당 평균 수확량의 90%에 해당하며, 2008~2012년 전국 평균 수확량을 2013~2017년 전국 평균 수확량으로 나눈 비율에 따라 결정됨. 연도별 보고된 수확량이 2013~2017년 카운티 평균 수확량의 75% 미만이면, 연도별 수확량은 지역 평균 수확량의 75%로 대체됨.

<sup>90)</sup> 알팔파(Alfalfa)는 PLC/ARC에 의해 보장되는 품목이 아님.

#### ○ 단계 2-2. 유효 가격(effective price) 도출

작물	거래 연도 시장 평균 가격 <sup>91)</sup> (H)	해당 품목 융자단가 <sup>92)</sup> (I)	유효 가격 (max(H, I)=J)
밀	5.0	3.38	5.0
옥수수	4.5	2.20	4.5

#### ○ 단계 2-3. 작물별 지급단가(\$) 도출

작물	유효 참조 가격 (G)	유효 가격 (J)	PLC 지급단가(\$) (max(E-H, 0)=K)
밀	5.5	5.0	0.5
옥수수	4.3	4.5	0

#### □ 단계 3: PLC 지급액 계산

작물	기본 면적 (A)	PLC 지급 보증률 (%)	PLC 지급단가 (\$) (K)	PLC 생산량 (작물별 면적 단위당)	PLC 지급액 <sup>93)</sup> (\$)
밀	100	85	0.5	30	1,275
옥수수	100	85	0	80	0

<sup>91)</sup> 거래 연도 시장 평균 가격(national market year average price, 이하 MAY 가격)은 농가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여기서는 예시를 위해서 밀과 옥수수에 대해서 각 5\$와 4.5\$라는 임의 가격을 부여함.

<sup>92)</sup> 해당 품목 융자단가(national loan rate)는 농가지원청에서 2018~2023년 프로그램을 위해 설정한 실제 수치를 사용하였음.

<sup>93)</sup> PLC 지급액 = 기본 면적(acre)× PLC 지급 보증률(%) × PLC 지급단가(\$/bushel) × 단수 (bushel/acre).

## 2. 미국 ARC-CO 지급 예시<sup>94</sup>)

#### 가. 보상방식

- O ARC-CO는 해당 작물에 대한 실제 지역 수입이 ARC-CO가 보장하는 일정 수준의 수입보다 작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함.
  - 최종 ARC-CO 지급액 = 기본 면적(acre) × ARC-CO 지급 보증률(85%) × ARC-CO 면적당 지급단가(\$)
  - ARC-CO의 발동 기준은 기준(벤치마크) 수입의 86% 미만으로 수입이 하 락하는 것임.
  - ARC-CO는 기본 면적의 100%가 아닌 85%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함
  - ARC-CO 면적당 지급단가(\$)은 ARC-CO 보장액과 실제 수입의 차이를 의미함.

#### 나. ARC-CO 지급 예시

□ 단계 1: 농가 기본 정보 확인

작물	기본 면적 (A)	식재 면적
밀	100	0
옥수수	100	110
계	200	275

<sup>94)</sup> 미국 농림부 농가지원청(2015)의 "2014 Farm Bill FACT SHEET"의 ARC-CO 예시를 사용하였 음. 2019~2023년 ARC-CO 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운영되나, 2018년 농업법하에서 는 1) 벤치마크가 되는 지역 생산량을 결정할 T-yield의 70%가 아니라 T-yield의 80%를 이용하 고, 2) 벤치마크가 되는 해당 작물 지역 가격을 결정할 때 참조 가격이 아니고 유효 참조 가격을 사용 해야 함.

## □ 단계 2: 밀의 ARC-CO 지급단가(Payment rate) 결정

## ○ 단계 2-1. 밀의 벤치마크 수입 도출

작물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벤치마크 생산량 및 가격 <sup>95)</sup>
지역 생산량 (B)	44	51	65	31	46	_
T-Yield <sup>96)</sup> ♀ 70%(C)	32	32	32	32	32	_
max(B, C) (D)	44	51	65	32	46	47 (E)
MYA 가격 (F)	4.87	5.7	7.24	7.7	6.5	-
참조 가격 (G)	5.5	5.5	5.5	5.5	5.5	_
max(F, G) (H)	5.5	5.7	7.24	7.7	6.5	6.48 (I)

벤치마크 수입 도출	벤치마크 생산량	벤치마크	벤치마크 수입
	(E)	가격 (I)	(E*l=J)
	47	6.48	304.56

## ○ 단계 2-2. 밀의 실제 수입 도출

	2014년 적용 밀 가격	2014년 지역		
2014년 MAY 가격 (K)	2014년 융자단가(L)	2014년 적용 가격 (max(K, L)=M)	2014년 시작 생산량 (N)	실제 지역 수입 (M*N=O)
6.5	2.94	6.5	29	188.5

## ○ 단계 2-3. 밀의 ARC-CO 지급단가(\$) 도출

ARC-CO 보장액 <sup>97)</sup> (J*0.86=P)	실제 수입 (O)	수입 차액 (max(P-O, 0)=Q)	ARC-CO 지급단가 상한 <sup>98)</sup> (J*0.1=R)	최종 ARC-CO 지 급단가 (min(Q, R)=S)
261.92	188.5	73.42	30.46	30.46

<sup>95)</sup> 벤치마크 생산량(E)과 가격(I)은 과거 5개년도 자료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제한 3개년도 수치의 산술 평균임(five-year Olympic average).

<sup>96)</sup> T-Yield(Transitional Yield)는 미국 농림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설정한 수확 량으로 한국의 표준수확량 개념과 유사한 개념임.

<sup>97)</sup> ARC-CO 보장액은 벤치마크 수입액(J)의 86%에 해당하는 금액임.

<sup>98)</sup> 면적 단위당 지급단가 상한액은 벤치마크 수입액(J)의 10%를 넘지 못함.

## ☐ 단계 2: 옥수수의 ARC-CO 지급단가(Payment rate) 결정

## ○ 단계 2-1. 옥수수의 벤치마크 수입 도출

작물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벤치마크 생산량 및 가격
지역 생산량 (B)	125	100	165	110	95	-
T-Yield의 70% (C)	84	84	84	84	84	-
max(B, C) (D)	125	100	165	110	95	112 (E)
MYA 가격 (F)	3.55	5.18	6.22	6.89	4.50	-
참조 가격 (G)	3.70	3.70	3.70	3.70	3.70	-
max(F, G) (H)	3.70	5.18	6.22	6.89	4.50	5.30 (I)

벤치마크 수입 도출	벤치마크 생산량 (E)	벤치마크 가격 (I)	벤치마크 수입 (E*l=J)
	112	5.30	593.60

# ○ 단계 2-2. 옥수수의 실제 수입 도출

2	014년 적용 옥수수 7	2014년 지역		
2014년 MAY 가격 (K)	2014년 융자단가(L)	2014년 적용 가격 (max(K, L)=M)	2014년 시작 생산량 (N)	실제 지역 수입 (M*N=O)
5.25	1.95	5.29	140	735

## ○ 단계 2-3. 옥수수의 ARC-CO 지급단가(\$) 도출

ARC-CO 보장액 (J*0.86=P)	실제 수입 (O)	수입 차액 (max(P-O, 0)=Q)	ARC-CO 지급단가 상한 (J*0.1=R)	최종 ARC-CO 지급단가 (min(Q, R)=S)
510.50	735	0	59.36	0

#### □ 단계 3: ARC-CO 지급액 계산

작물	기본 면적 (A)	ARC-CO 지급 보증률 (%)	ARC-CO 지급단가 (\$)	ARC-CO 지급액 <sup>99)</sup> (\$)
밀	100	85	30.46	2,589.10
옥수수	100	85	0	0

## 3. 미국 ARC-IC 지급 예시<sup>100)</sup>

#### 가. 보상방식

- O ARC-IC는 대상 작물에 대한 실제 농장 수입이 ARC-IC가 보장하는 일정 수 준의 수입보다 작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함.
  - 최종 ARC-IC 지급액 = 농장의 총 기본 면적(acre) × ARC-IC 지급 보증 률(65%) × 면적당 지급단가(\$/acre)

## 나. ARC-IC 지급 예시

#### □ 단계 1: 농가 기본 정보 확인

작물	기본 면적 (A)	2014년 식재 면적	2014년 작물별 식재 면적 비율(%) <sup>101)</sup> (B)	2014년 생산량 (C)
옥수수	100	110	36.67	11,550
대두	100	25	8.33	1,000
수수	0	165	55.00	9,900
계	200	300	100	ı

<sup>99)</sup> ARC-CO 지급액 = 기본 면적(acre) × ARC-CO 지급 보증률(%) × ARC-CO 지급단가(\$/acre).

<sup>100)</sup> 농가지원청에서 제공하는 '2014 Farm Bill FACT SHEET'에서 제공하는 ARC-IC 예시를 사용하였음. 2009~2023년 ARC-IC 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운영되나, 2018년 농업법하에서는 1) 벤치마크가 되는 지역 생산량을 결정할 T-Yield의 70%가 아니라 T-Yield의 80%를 이용하고, 2) 벤치마크가 되는 해당 작물 지역 가격을 결정할 때 참조 가격이 아니고 유효 참조 가격을 사용해야 함.

## □ 단계 2: ARC-IC를 위한 벤치마크 수입 도출

## ○ 단계 2-1. 작물별 벤치마크 수입 계산

	작물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도별 수입 평균 <sup>102)</sup> (D)		
5가	5개년도 올림픽 평균방식을 이용한 옥수수 벤치마크 수입 도출								
	생산량	125	100	165	110	95	-		
	T-Yield의 70%	85	85	85	85	85	_		
	MYA 가격	3.55	5.18	6.22	6.89	4.50	-		
	참조 가격	3.70	3.70	3.70	3.70	3.70	-		
	연도별 수입103)	462.50	518.00	1,026.30	757.90	427.50	579.47		
5가	  년도 올림픽 평균방식	나을 이용한 C	배두 벤치마크	. 수입 도출					
	생산량	38	41	29	48	33	-		
	T-Yield의 70%	27	27	27	27	27	_		
	MYA 가격	9.59	11.30	12.50	14.40	12.95	_		
	참조 가격	8.40	8.40	8.40	8.40	8.40	-		
	연도별 수입	364.42	463.30	362.50	691.20	427.35	418.36		
5가	년도 올림픽 평균방식	식을 이용한 수	누수 벤치마크	. 수입 도출					
	생산량	90	40	75	80	99	_		
	T-Yield의 70%	65	65	65	65	65	_		
	MYA 가격	3.22	5.02	5.99	6.33	4.25			
	참조 가격	3.95	3.95	3.95	3.95	3.95	_		
	연도별 수입	355.50	326.30	449.25	506.40	420.75	408.50		

## ○ 단계 2-2. 농장 단위 벤치마크 수입 도출

작물	벤치마크 수입 (D)	2014년 작물별 식재 면적 비율(%) (B)	식재 면적을 반영한 수입 (D*B)
옥수수	579.47	36.67	212.49
대두	418.36	8.33	34.85
수수	408.50	55.00	224.68
2014년 ARC-IC 지급을 위한 벤치마크 수입 (E)			472.02

<sup>101)</sup> 작물별 식재 비율은 전체 식재 면적 중 해당 작물을 경작한 면적의 비율을 말함.

<sup>102)</sup> 올림픽 평균방식을 이용한 연도별 수입 평균 (D)는 과거 5개년도 자료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제한 3개년도 수치의 산술 평균임(five-year Olympic average).

<sup>103)</sup> 작물별로 연도별 수입 계산할 때 사용하는 생산량은 개별 생산량과 T-Yield의 70% 중 큰 값을 사용하고, 가격은 MYA 가격과 참조 가격 중 큰 값을 사용함.

## □ 단계 3: 농장의 실제 수입 도출

작물	2014년 생산량 (C)	MYA 가격 (F)	융자단가 (G)	2014년 적용 가격 (max(F, G)=H)	작물별 수입 (C*H)
옥수수	11,550	5.25	1.95	5.25	60,637.50
대두	1,000	8.50	5.00	8.50	8,500.00
수수	9,900	4.98	1.95	4.98	49,302.00
	118,439.50				
2014년 ARC-IC 지급을 위한 농장의 실제 수입 <sup>104)</sup> (I / 총식재면적) (J)					394.80

## □ 단계 4: ARC-IC 지급액 계산

## ○ 단계 4-1. ARC-IC 지급단가 도출

ARC-IC 보장액 <sup>105)</sup> (E*0.86=K)	실제 수입 (L)	수입 차액 (max(K-L, 0)=M)	ARC-IC 지급단가 상한 (E*0.1=N)	최종 ARC-IC 지급단가 (min(M, N)=O)
405.94	394.80	11.14	47.02	11.14

#### ○ 단계 4-2. ARC-IC 지급액 결정

농장의	ARC-IC 지급 보증률	ARC-IC 지급단가 (\$)	ARC-IC 지급액 <sup>106)</sup>
총 기본 면적	(%)		(\$)
200	65	11.14	1,448.20

<sup>104) 2014</sup>년 ARC-IC 지급을 위한 농장의 실제 수입(J)는 농장의 총수입(I)을 2014년 실제 식재 면적 (300 acres)으로 나눈 값임.

<sup>105)</sup> ARC-IC 보장액은 벤치마크 수입액의 86%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면적 단위당 지급단가 상한액은 벤치마크 수입액의 10%를 넘지 못함.

<sup>106)</sup> ARC-IC 지급액 = 농장의 총 기본 면적(acre) × ARC-IC 지급 보증률(%) × ARC-IC 지급단가 (\$/acre)

## 4. 미국 RP 보험 단위 및 지급 예시

#### 가. RP 가입 단위 예시

〈부도 1-1〉 미국 작물 보험 가입 단위 비교 예시

Township section 1	Farm B	Township section 2	
<u>Farm A</u> owned	50-50 crop share lease from Smith	Farm <u>D</u> cash rent lease from Jones	
owned.	Farm C cash rent lease from Jones	Farm E 50-50 crop share lease from Smith	
Township section 3			
<u>Farm E</u> Owned		Farm G 60-40 crop share lease from Black	

자료: Plastina, A. & W. Edwards(2017). Proven Yields and Insurance Units for Crop Insurance.

- 그림의 예시에서 만약 모든 구획에 옥수수만을 재배한다고 하면, 기본 단위로 서 3개의 보험 단위가 부여됨.
  - 보험 단위 1: 농장 A, C, D, F(소유지 혹은 현금 임차지)
  - 보험 단위 2: 농장 B, E(Smith와의 작물지분 공유지)
  - 보험 단위 3: 농장 G(Black과의 작물지분 공유지)
- 그림의 예시에서 만약 모든 구획에 옥수수만을 재배한다고 하면, 선택 단위로 서 6개의 보험 단위가 부여됨.
  - 보험 단위 1: 농장 A, C(section 1의 소유지 혹은 현금 임차지)

- 보험 단위 2: 농장 B(section 1의 Smith와의 작물지분 공유지)
- 보험 단위 3: 농장 D(section 2의 소유지 혹은 현금 임차지)
- 보험 단위 4: 농장 E(section 2의 Smith와의 작물지분 공유지)
- 보험 단위 5: 농장 F(section 3의 소유지 혹은 현금 임차지)
- 보험 단위 6: 농장 G(section 4의 Black과의 작물지분 공유지)

## 나. 보상방식

- O RP 가입 시, 보험금(payments) 지급은 농가의 실제 수입이 보험에서 보장하는 수입보다 낮을 때 이뤄지며, 보험금의 크기는 그 차이(즉, 보장 수입 실제수입)임.
- O 실제 수입(actual revenue)의 산식은 다음과 같음.
  - 실제 수입 = 실제 수확량 × 수확기 시장 가격(harvest price)
  - 수확기 시장 가격은 선물거래 가격 정보를 이용하여 도출하는데, 이용하는 가격 정보의 기간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옥수수의 수확기 시장 가격은 12월 선물거래를 위해서 10월 중에 거래되고 있는 선물가격의 평균이며, 대두의 수확기 시장 가격은 11월 선물거래를 위해서 10월 중에 거래되고 있는 선물가격의 평균임.
- O 보장 수입(revenue guarantee)의 산식은 다음과 같음.
  - 보장 수입 = APH 승인 수량 × 보장 수준 × 보장 가격
  - APH(Actual Production History)는 농가가 실제 생산한 양의 과거 평균 값임.

- 보장수준은 농가가 보장받고자 하는 비율로서 APH의 50~75%(일부지역 에서는 85%) 수준으로 선택할 수 있음.
- 보장 가격은 예상 가격(projected price)과 수확기 시장 가격 중 큰 금액을 사용함. 다만, 수확기 시장 가격이 예상 가격의 2배 이상인 경우, 보장 가격은 예상 가격의 2배로 설정됨. 즉, 보장 가격 = Min{Max(예상 가격, 수확기 시장 가격), 예상 가격의 2배}임.
- 예상 가격 또한 수확기 시장 가격과 마찬가지로 선물거래 가격 정보를 이용하여 산정함.
- 예를 들어, 옥수수의 예상 가격은 12월 선물거래를 위해서 2월 중에 거래되고 있는 선물가격의 평균이며, 대두의 수확기 시장 가격은 11월 선물거래를 위해서 2월 중에 거래되고 있는 선물가격의 평균임.
- 농가는 보장 가격으로 예상 가격만을 이용하여 보장 수입을 계산하는 수확기 가격제외 수입보장보험(Revenue Protection with Harvest Price Exclusion, RP-HPE)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음.
  - RP-HPE 상품 구조하에서는 보장 수입이 전적으로 2월 선물가격(즉, 예상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됨.
  - 따라서 수확기 근처의 선물가격(즉, 수확기 시장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보 장 수입은 증가하지 않음.
  -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보장 수준을 선택한다고 할 때, RP-HPE 보험료는 RP 보험료보다 낮음.

## 다. RP 및 RP-HPE 보험금 지급 예시

**〈부표 1-1〉** RP와 RP-HPE 보험금 지급 예시(옥수수)

구분	RP	RP-HPE	
2월 선물가격(예상 가격)	\$4.00		
10월 선물가격(수확기 시장 가격)	\$5.00		
실제 수확량	130	bu.	
APH 승인 수량	175 bu.		
선택한 보장 수준	80%		
실제 수입	\$650.00 (= \$5.00 × 130)		
보장 수입	\$700.00 (=Max(\$4, \$5) × 175 × 80%)	\$560.00 (= \$4.00 × 175 × 80%)	
보험금	\$50.00 (\$700 - \$650)	\$0.00	

자료: Plastina et al.(2021). Revenue Protection Crop Insurance.

## 5. 미국 MP 보험 지급 예시

## 가. 보상방식

- O 수확기 실제 마진보다 보상 발동 기준 마진(trigger margin)이 작으면 MP 보험금이 지급됨.
  - 보상 발동 기준 마진은 예상 마진에서 자기부담금(보상수준에 따라 달라 짐)을 제한 금액임.
  - 예상 마진은 예상 수입(예상 지역 수확량 x 예상 가격)에서 예상 투입 비용을 제한 금액임.
- 수확기 실제 마진은 실제 지역 수확량에 해당 작물의 수확기 가격을 곱한 수확기 실제 수입에서 수확기에 확정된 투입비용을 제함으로써 구해짐.

- 보상 발동 기준 마진보다 수확기 실제 마진이 적은 경우, 그 차액에 보험 계수 (80~120%)를 곱하여 최종 보험금을 산출함.
  - 만약, 산출된 보험금이 최대 지급 가능한 보험금(indemnity cap)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대 지급 가능한 보험금이 지급됨.
  - 최대 지급 가능한 보험금 = MP 예상 지역 수입 × 보장률 × 보험계수 × 농장운영 지분.

〈부표 1-2〉 MP 보험금 산정에 이용되는 가격 산정방식

작물	해당 선물	예상 가격 설정 기간	수확기 가격 설정 기간
옥수수	12월 선물	해당 작물 연도 직전 연도의 8월 15일 ~ 9월 14일 동안의 12월 선물거래 가격	해당 작물 연도의 10월 1일 ~ 10월 31일 동안의 12월 선물거래 가격
대두	11월 선물	해당 작물 연도 직전 연도의 8월 15일 ~ 9월 14일 동안의 12월 선물거래 가격	해당 작물 연도의 10월 1일 ~ 10월 31일 동안의 12월 선물거래 가격
쌀	9월 선물	해당 작물 연도 직전 연도의 12월 15일부터 해당 작물 연도의 1월 14일 동안의 9월 선물거래 가격	해당 작물 연도의 8월 1일 ~ 8월 31일 동안의 9월 선물거래 가격
밀	9월 선물	해당 작물 연도 직전 연도의 8월 15일 ~ 9월 14일 동안의 9월 선물거래 가격	해당 작물 연도의 8월 1일 ~ 8월 31일 동안의 9월 선물거래 가격

자료: 미국 농림부 위험관리청(https://www.rma.usda.gov/policies/mp). Margin Price Provisions. 검색일: 2023. 1. 6.

## 나. MP 지급 예시

## **〈부표 1-3〉** MP 지급 예시(옥수수)

4년에, 나나 바로 기조 미지 근호					
1단계: 보상 발동 기준 마진 도출					
а	위험관리청 예상 지역 수확량(단위면적당) 200				
b	예상 가격(옥수수 단위당) \$5.50				
c=a*b	예상 지역 수입(단위면적당)	\$1,100			
d	예상 투입 비용(단위면적당)	\$500			
e=c-d	위험관리청 예상 마진(단위면적당)	\$600			
f	보장 수준(70~95%)	95%			
g=c*(1-f)	자기부담금(단위면적당)	\$55			
h=e-g	보상 발동 기준 마진(단위면적당) \$				
2단계: 수확기 실제 [	2단계: 수확기 실제 마진 도출				
i	위험관리청 확정 최종 지역 수확량(단위면적당)	200			
j	수홬기 가격(단위면적당)	\$5.00			
k=i-j	최종 지역 수입(단위면적당)	\$1,000			
1	수확기 투입 비용(단위면적당)	\$570			
m=k-l	수확기 실제 마진(단위면적당) \$430				
3단계: 보험금 계산					
n=h-m	최종 보상 발동 마진(\$545-\$430) \$115				
0	보호 계수(protection factor, 80-120%) 120%				
p=n*o	보험금(단위면적당)				

자료: Plastina, A. & S. D. Johnson(2022). Margin Protection (MP) Crop Insurance.

# 부록 2

# 적극적 농업 참여(Actively Engaged in Farming: AEF) 요건<sup>107)</sup>

- 1. '상당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에 대한 정의
- O 토지와 자본 혹은 설비에 관한 기준
  - 토지의 경우, 투자액은 토지 임대 가치의 50% 이상이어야 함.
  - 자본금 혹은 설비의 경우, 투자액은 농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 가치 또는 설비 임대 가치의 50% 이상이어야 함.
  - 토지와 자본금 및 설비의 조합인 경우, 투자액은 농장 운영과 관련된 가치 총액 기준으로 30% 이상이어야 함.
- O 적극적인 개인의 농업 활동(active personal labor)에 관한 기준
  - 적극적으로 농업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은 다음 두 조건 중 적은 것 하나를 충족하면 됨: 1) 해당 연도 기준으로 1,000시간의 농업 활동 혹은 2) 농장 운영에 필요한 총 시간의 50%에 대한 농업 활동.
  - 농장 운영에 필요한 총 시간은 농장 운영의 개인 지분에 상응하여 계산됨.
- O 적극적인 농장 경영 관리 활동(active personal management)에 관한 기준

<sup>107)</sup>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U.S. Farm Programs: Eligibility and Payment Limits. 를 참고하여 작성함.

- 적극적으로 농장 경영 관리에 참여했다는 것은 다음 조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 1) 매년 농장 운영에 필요한 총 경영 관리 시간의 25% 이상을 경영 관리에 사용하거나 2) 농장 운영을 위해 연간 최소 500시간의 경영 관리에 참여해야 함.
- O 적극적인 농업 활동(active personal labor)과 적극적인 농장 경영 관리 활동(active personal management)에 관한 기준의 결합
  - 투여한 농업 활동과 경영 관리 활동이 반드시 1) 농장 수익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2) 농업 활동과 경영 활동에 대한 노동을 정기적, 지속 적, 실질적으로 투여해야 하며, 3) 다음의 표에 나와 있는 필수 시간표를 준 수해야 함.

**〈부표 2-1〉** AEF의 시간적 기준

최소 결합 시간	경영 활동 투자 시간	농업 활동 투자 시간
550	475	75
550	450	100
650	425	225
650	400	250
750	375	375
750	350	400
750	325	425
850	300	550
850	275	575
850	250	600
850	225	625
850	200	650
850	175	675
950	150	800
950	125	825
950	100	850
950	75	875
950	50	900
950	25	925

자료: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0). U.S. Farm Programs: Eligibility and Payment Limits: 코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재인용)(https://www.law.cornell.edu/cfr/text/7/1400.601). 검색일: 2023. 1. 30.

## 2. 개인의 AEF 기준

- O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첫째, 독립적·개별적으로 1) 토지, 자본 또는 설비 투자와 2) 농업 활동에 대한 노동 및 경영 관리 활동에 대한 노동을 통해 농장 운영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함.
  - 둘째, 농장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에 대한 개인의 지분이 농장 운영에 대한 기여도에 상응해서 산출되어야 함.
  - 셋째, 농장 운영 시 손실의 위험에 대해 개인이 농장 운영에 주장할 수 있는 지분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함.

## 3. 파트너십의 AEF 기준

-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에 대해서 AEF 기준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함.
- 파트너십의 구성원은 상기의 '개인의 AEF' 기준을 모두 충족함과 동시에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농장 운영과 관련된 농업 활동 및 경영 활동이 1)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하며, 2) 이러한 활동은 문서화되어 식별가능해야하며, 3) 다른 구성원이 제공한 기여분과 분리되어 식별 가능해야함.
  - AEF를 충족하지 못한 파트너십 구성원은 농장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음.

## 4. 법인의 AEF 기준

- 파트너십하에서의 각 구성원과는 달리, 공동 소유주의 연합인 법인은 AEF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개인으로 간주됨.
  - 따라서 1인당 지급 상한 규정이 있는 품목별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법인은 구성원 수와 관계없이 1인으로 간주됨.
- '개인의 AEF' 기준에 추가하여, 법인의 소유권 지분을 가진 각 구성원은 문서 화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다른 구성원과의 기여가 식별되는 농장 운영과 관련 된 농업 활동 및 경영 활동을 수행했음을 증명해야 함.
- 더불어, 반드시 법인 구성원의 공동 기여도가 상당해야 하며, 이는 농장 운영 에 대한 기여도에 상응해야 함.
- 법인 구성원이 농업 활동 및 경영 관리 활동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참여한 프로그램의 혜택이 해당 구성원의 소유권 지분만큼 감소함.
  - 다만, 1) 적극적으로 농업 활동 및 경영 관리 활동에 참여한 구성원의 지분이 50% 이상이고, 2) 법인 구성원이 공동으로 받는 연간 총 농장 운영 관련 지불금이 최대 지불금 한도(2018년 농업법 기준 125,000달러, 땅콩은 별도로 125,000달러)와 같거나 그 미만인 경우에는 혜택이 감소하지 않음.

# 참고문헌

- 강혜정. (2008). OECD 농업분야 최적위험관리 논의동향 분석. 전남대학교.
- 국세청. (2015).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 국세청. (2016).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 국세청. (2021).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 기획재정부. (2021). 조세개요 2021.
- 김경필, 남경수, 이현근, 명수환, 김지연. (2021). 2020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관수, 안동환, 민선형. (2014). 직불제 성과평가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문정. (2020). 과세자료 활용을 통한 특고종사자 소득파악 방안. 한국조세재정연 구워.
- 김미복, 김수석. (2011). 농업부문 조세체계와 개선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미복, 김태후, 정우석, 김정승, 채홍기. (2022). 해외농업보험 연구시리즈: 미국 농작물 재해 위험관리 제도(CAT·NAP).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미복, 김태후, 하인혜, 최경환. (2019). 일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수입보험.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 김상현, 임정빈. (2018). "2018년 미국의 농업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 KREI 농정포커 스. 제17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승래. (2008). "부가가치세제 면세범위 조정의 경제적 효과." 조세연구. 제8권 제1호.
- 김유찬. (1995).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설정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한국조세재 정연구원.
- 김유찬, 이혜진. (2012).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이대로 좋은가?" 조세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조세연구포럼.
- 김재진. (2004). 소득파악 인프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김태후, 조승연, 채홍기, 이형용, 윤병삼. (2022). 농축산물 가격 변동에 대응한 효율적인 위험관리 수단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21). 농업재해보험연감.
-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시행지침.
- 문한필, 이현근, 채상현, 명수환, 최미라. (2020).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운용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미국 농림부. (각 연도). USDA Budget Explanatory Notes-Farm Service Agency.

- 미국 농림부. (2022). 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Risk Management Agency's Financial Statements for Fiscal Years 2022 and 2021.
- 미국 농림부 농가지원청. (2015). 2014 Farm Bill FACT SHEET.
- 미국 농림부 농가지원청. (2019a). "Agriculture Risk Coverage (ARC) & Price Loss Coverage (PLC)."
- 미국 농림부 농가지원청. (2019b). APPENDIX TO CCC-862.
- 미국 농림부 농가지원청. (2019c). "2014 Farm Bill vs. 2018 Farm Bill Agricultural Risk Coverage & Price Loss Coverage." Fact Sheet.
- 미국 농림부 농가지원청. (2020). Marketing Assistance Loans and Loan Deficiency Payments.
- 미국 농림부 위험관리청. (2022). Whole Farm Revenue Protection.
- 박동규, 성명환, 김영훈, 박미성, 사공용, 이정환. (2010). 양정개혁(2004년) 평가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명호, 정재호. (2014).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변화 분석과 정책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박상원. (2011). 농림어업 소득 과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박성재, 오내원, 김태곤, 박준기, 정호근, 문한필, 조용원, 김석현. (2006). 농가단위 농업소득 안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준기, 김태곤, 유찬희, 김영준, 전지연. (2014). 농가경영안정지원제도 운영 실태와 정책과제(1/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준기, 오내원, 지성태, 이현근, 정호연. (2015). 농가경영안정지원제도 운영 실태와 정책과제(2/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상택, 김수진, 정윤희. (2020).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 서상택, 김수진, 정윤희, 김믿음. (2022). 수입보장보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용역 보고서.
- 서진교, 김동환, 김명환, 김창길, 남재작, 박성재, 임정빈. (2022). "2022년 한국 농업·농 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제298호. GS&J Institute.
- 서종혁, 김명환, 오내원, 이규천, 박진도, 황연수, 김학종, 김기주. (1996). 미국·카나다의 직접지불제도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원규, 이수미, 최민영. (2019).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 경영안정 방안 마련 연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신영임, 강민지. (2014).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국회예산정책처.

- 안병일, 정원호, 임정빈. (2015). 주요 농가경영안정지원제도 성과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방작물보험공사. (2022). Whole-Farm Revenue Protection Pilot Policy.
- 오내원, 채광석, 이명헌. (2008). 농업구조조정과 직접지불제 개편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내원. (2022). "농업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2022년 FTA 교역 포 럼 제 I 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워.
- 오연천. (1987).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 논총. 제25권 제2호. pp.131-145.
- 유찬희, 박준기, 김종인, 박지연. (2016).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한욱. (2008). 재정안정화를 위한 소득파악체계 정비방안 -소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워.
- 이문호, 김관수. (2020).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연계효과 실증분석." 농촌경제. 제 43권 제1호. pp.1-20.
- 이용기. (2006). "쌀 산업 직접지불제의 생산 및 소득효과." 농업경제연구. 제47권 제2호. pp.51-67. 한국농업경제학회.
- 이정환. (2017). "농업의 가격조건 악화 대책: 가격변동대응 직불." 시선집중 GSnJ. 제 233호. GS&I Institute.
- 이정환, 김명환, 김한호, 류상모, 송원규, 위태석, 하석건, 이수미. (2020). 농산물 가격 및 농가경영안정 정책 방향과 대안. GS&I Institute.
- 일본 농림수산성 경영국 보험과. (2022). 収入保険データ集 (令和4年6月末時点).
- 임소영, 김윤진, 강수진. (2018). 농업분야 부가가치세 제도 발전 방향과 과제. 한국농촌 경제연구워.
- 임소영, 김윤진, 이실, 안창남. (2016). 농업 관련 소득세제의 경제적 함의와 개선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소영, 김정승, 김영준, 박미선, 김태곤, 박명호. (2022). 농업분야 소득파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소영, 박지연. (2017). 농업부문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 임응순, 황진영, 박상수. (2013). 1차 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방안. 한국지방세연 구원.
- 임정빈. (2014a). "2014년 미국 농업법의 배경과 개요." 세계농업. 제168호. pp.3-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정빈. (2014b). "2014년 미국 농업법 작물보험과 긴급 재해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세계농업. 제170호. pp.3-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정빈, 한두봉, 안병일. (2011). "FTA 피해보전 직불제의 소득보전율과 생산연계성 분석." 농업경제연구. 제52권 제4호. pp.1-18.
- 정규언, 오윤택. (2005). "자영업자의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유인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 와회계저널. 제6권 제3호. pp.7-27.
- 정원호. (2012).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KREI 농정포커스. 제 3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원호, 최예준, 정호중. (2018). 농업수입보장보험 사업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 정유석. (2012). "국제비교를 통한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개선방안: 면세범위와 세율체계를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제46권. pp.101-126. 한국국제회계학회.
- 최경환. (2019). 주요국 농업인안전보험 사례 연구 및 일본의 농업경영수입보험 도입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위탁 원고.
- 최인혁, 정훈. (2021). 소득기반 사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전환.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2020).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2권.
- 홍성훈, 성명재. (2013). 부가가치세제 발전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2012). Evaluation of Income Stability Tools AgriStability and AgriInvest.
- Antón, J., S. Kimura, & R. Martini. (2011). "Risk management in agriculture in Canada."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 40. OECD Publishing.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U.S. Farm Programs: Eligibility and Payment Limits.
- Glauber, J., K. Baldwin, J. Anton & U. Ziebinska. (2021). "Design principles for agricultural risk management policies."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OECD Publishing.
- Kang, M. G. (2005). An introduction to market-based instruments for agriculture price risk management. FAO.
- OECD. (2009). Managing Risk in Agriculture A Holistic Approach. OECD Publishing.
- Plastina, A. & W. Edwards. (2017). Proven Yields and Insurance Units for Crop Insurance.

- Plastina, A. & S. D. Johnson. (2022). "Margin Protection (MP) Crop Insurance." (https://www.extension.iastate.edu/agdm/crops/html/a1-53.html). 검색일: 2023. 4. 6.
- Plastina, A., S. D. Johnson & W. Edwards. (2021). Revenue Protection Crop Insurance. Iowa State University.
- Shields, D. (2015). Federal Crop Insurance: Background.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Zulauf, C. & D. Orden. (2014). The US Agricultural Act of 2014.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 WTO. (2019). G/AG/N/CAN/131. World Trade Organization.
- 農林水産省. (2018. 6.). 收入保險制度の導入と農業共濟制度の見直し.
- 農林水産省. (2018. 8.). 收入保險がはじまります!
- 農林水産省. (2018. 10.). 收入保險に關するQ&A.

## 〈참고 인터넷 사이트〉

-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검색일: 2022. 1. 15.
-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 &cntntsId=7664). 검색일: 2022. 1. 15.
-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 &cntntsId=7699). 검색일: 2022. 10. 24.
- 국세청 홈페이지(https://tasis.nts.go.kr/). 국세통계. 검색일: 2022. 12. 21.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 검색일: 2022. 11. 17.
- 미국 농림부 농가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fsa.usda.gov/). 검색일: 2022. 11. 21.
- 미국 농림부 위험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rma.usda.gov/). 검색일: 2022. 11. 21.
- 미국 농림부 위험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rma.usda.gov/en/Fact-Sheets/National-Fact-Sheets/Margin-Protection-for-Federal-Crop-Insurance).
  Risk Management Agency Fact Sheet. 검색일: 2023. 1. 6.
- 미국 농림부 위험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rma.usda.gov/News-Room/Frequently -Asked-Questions/Double-Cropping-Initiative). 검색일: 2022. 11. 28.
- 미국 농림부 위험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rma.usda.gov/policies/mp). Marg in Price Provisions. 검색일: 2023. 1. 6.
- 미국 농림부 위험관리청 홈페이지(https://rma.usda.gov/en/Policy-and-Procedure /Insurance-Plans/Revenue-Protection). 검색일: 2022. 11. 17.

- 미국 농림부 위험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rma.usda.gov/SummaryOfBusiness). Summary of Business. 검색일: 2022. 12. 1.
- 브리티시컬럼비아주정부 홈페이지(https://www2.gov.bc.ca/gov/content/industry /agriculture-seafood/statistics/agriculture-and-seafood-statistics-publications). FAST STATS 2020. 검색일: 2023. 2. 1.
- 서스캐처원주주정부 홈페이지(https://www.scic.ca/about-us/annual-reports). Annual Reports 2020. 검색일: 2023. 2. 1.
- 온타리오주정부 홈페이지(https://data.ontario.ca/dataset/direct-government-payments-to-farmers?\_gl=1\*1uyjzpo\*\_ga\*MTYxNTA0NjY4Ni4xNjc1M jUxMjY0\*\_ga\_HLLEK4SB6V\*MTY3NTI1MTI4NS4xLjEuMTY3NTI1MTY 4OS4wLjAuMA..+). Data Catalogue 2020. 검색일: 2023. 2. 1.
-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s://www.maff.go.jp/j/keiei/nogyohoken/syunyu hoken/syousai.html). 검색일: 2022. 11. 15.
-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s://www.maff.go.jp/j/keiei/nogyohoken/yosan. html). 농업보험 관계 예산. 검색일: 2023. 2. 14.
- 전국지속가능농업연합 홈페이지(https://sustainableagriculture.net/blog/whole-farm-revenue-protection-analysis-a-few-bad-apples/). 검색일: 2022. 11. 17.
- 코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s://www.law.cornell.edu/cfr/text/7/14 00.601). 검색일: 2023. 1. 30.
- 코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s://www.law.cornell.edu/wex/subchapter \_s\_corporation). 7 C.F.R. §1400.601 Definitions. 검색일: 2023. 1. 30.
- 퀘벡주정부 홈페이지(https://www.fadq.qc.ca/statistiques/agri-stabilite/).
  AgriStability. 검색일: 2023. 2. 1.
- 퀘벡주정부 홈페이지(https://www.fadq.qc.ca/statistiques/agri-investissement/). Agri-Investment. 검색일: 2023. 2. 1.
- 캐나다 정부홈페이지(https://agriculture.canada.ca/en/department/transparency/audits-evaluations/evaluation-agriinvest). Evaluation of AgriInvest. 검색일: 2023. 1. 30.
-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https://agriculture.canada.ca/en/department/transparency/audits-evaluations/evaluation-agristability). Evaluation of AgriStability. 검색일: 2023. 1. 27.
-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https://agriculture.canada.ca/en/programs/agristability/resources/service-standard-statistics#a1). AgriStability. 검색일: 2023. 2. 1.

-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https://www150.statcan.gc.ca/t1/tbl1/en/tv.action?pid= 3210016601). Farms classified by farm type, Census of Agriculture hist orical data. 검색일: 2023. 2. 7.
-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https://agriculture.canada.ca/en/programs/agriinvest/r esources/service-standard-statistics#a1). AgriInvestment. 검색일: 2023. 2. 1.
-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is.kr). 농가경제조사. 검색일: 2022. 12. 20.
-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is.kr).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검색일: 2022. 12. 20.
-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is.kr). 농림어업총조사. 검색일: 2022. 12. 20.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정부 홈페이지(https://www.princeedwardisland.ca/en/publications). Farm Cash Receipts Annual 2020. 검색일: 2023. 2. 1.
- King Crop Insurance Inc(http://www.kingcrop.com/). 검색일: 2022. 11. 28.
- WTO 홈페이지(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14-ag\_02\_e.htm #an). 검색일: 2023. 2. 20.

#### 〈참고 법률〉

2008년 미국 농업법(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

2014년 미국 농업법(Agricultural Act of 2014).

2018년 미국 농업법(Agricultural Improvement Act of 2018).

- 국세기본법(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 26조의2(https://www.law. go.kr/법령/국세기본법/제26조의2). 검색일: 2023. 1. 6.
- 소득세법(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19조, 제78조, 제80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검색일: 2023. 1. 6.
- 소득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952호, 2022. 12. 31., 일부개정) 별지 제19호서식 사업장현황신고서(https://www.law.go.kr/소득세법시행규칙). 검색일: 2023. 1. 6.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931호, 2022. 10. 4., 타법개정) 제 9조의4(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검색일: 2023. 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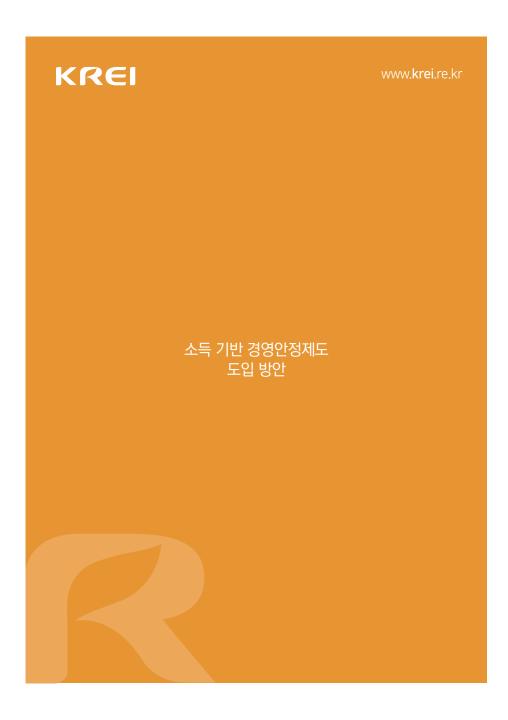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 2. 18.). "농식품부, 설 명절 전 쌀 변동직불금 조기 지급 완료."

# 〈인터뷰〉

홍익대학교 박명호 교수. (2022. 12. 16). 서면 인터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 1833-5500 F. 061) 820-2211

